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2020.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0. 7. 29~3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61조에 따라 감사원 결산검사를 마친 국가결산보고서를 지난 6월 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 심의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심의를 통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회는 제21대 국회의 첫 번째 결산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은 473.1조원, 총지출은 485.1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가경제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커지는 추세에서, 지난 재정운용 상황을 검토·분석하여 그 방향성과 효율성을 살펴볼 필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고자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8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소재·부품·장비 지원사업, 생활 SOC사업 등 주요 재정 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8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결산서를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성인지 결산서의 실효성과 제도개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중 후

외교 통일 위원 회

[외교부]

I. 결산 개요 / 3

1. 현 황 3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9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0

II. 주요 현안 분석 / 12

1.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의 문제점 12
 - 1-1.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예산집행 관리 부실 13
 - 1-2. 일반연구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16
 - 1-3. 동일 목적의 일반용역은 통합하여 계약할 필요 19
 - 1-4. 민간경상보조 집행관리 필요 23
2. 국제기구분담금 사업의 문제점 26
 - 2-1. 국제기구분담금 연체 부적정 28
 - 2-2.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체계 제도화 필요 31
3.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예산 집행 35

III. 개별 사업 분석 / 38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예산 집행 38
2.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한 정책연구비(260-02) 집행 40

CONTENTS

3.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비목에 맞게 편성·집행할 필요	42
4.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44
5. 예비비 집행 부진	46
6. 상용임금 과다편성으로 인한 연례적 집행 부진	48
7. 외국어 전임강사 상용임금 통합 필요	51
8. 승인 전용이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계약 자체 전용으로 체결	53
9.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비를 비목에 맞게 편성·집행할 필요	55
10.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기금 인건비 집행	58
※. 외교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60

【통일부】

I. 결산 개요 / 63

1. 현 황	63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69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70

II. 주요 현안 분석 / 72

1.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을 통한 신규 내역사업 추진의 문제	72
2. 사업추진 여건 검토 미흡 등 대북지원 사업 예산 운용의 비효율 문제	78
2-1.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이월의 문제 등	78
2-2. 사업추진 여건의 면밀한 검토 등 사업추진 체계 개선 필요	82



CONTENTS

2-3. 사업추진 여건의 변동으로 소요가 불명확해진 대북 지원물품 사후처리 문제	85
--	----

III. 개별 사업 분석 / 88

1.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88
2.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 체계적 추진 필요	93
3.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노력 필요	99
4. 국회의 사전 심의에 기반한 사업 추진 필요	103
5. 정책연구개발(R&D)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선정 필요	107
6.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비대상) 반복적인 초과 집행 개선 필요	109

※. 통일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112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I. 결산 개요 / 115

1. 현 황	115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19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20

II. 개별 사업 분석 / 121

1. 국내외 자문위원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률 제고 필요	121
2. 상품권 구입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필요	123



CONTENTS

국방위원회

[국방부]

I. 결산 개요 / 129

- 1. 현 황 129
-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36
-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37

II. 주요 현안 분석 / 138

- 1. 지속적인 군인연금기금 보전금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38
- 2. 군 무단점유 토지 배상금 불용 규모 최소화 노력 필요 등 146
- 3.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152
 - 3-1. 전용으로 마련한 재원을 활용한 보안통제시스템 신규 추진 부적정 152
 - 3-2. 사이버지식정보방 규모조정 계획 수립 필요 155

III. 개별 사업 분석 / 157

- 1. 민간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규모 확대 필요 157
- 2. 해강안 경계 과학화사업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노력 필요 160
- 3. 부서관 운용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 165
- 4. 어린이집의 조속한 확충을 통한 안정적 보육환경 마련 필요 169
- 5. EOD로봇 획득방식 변경 검토 필요 등 173
- 6. 전력자원체계 연구개발 사업 관리 미흡으로 인한 연례적 불용 문제 개선 필요 178



CONTENTS

7. 국방분야 공무원연금기금전출금 인사혁신처 이관 필요	181
8. 법적 근거 미비로 불용된 예산 전용 부적정	185
9. 일회성 장학금 지급 이외의 장학사업 수요 발굴 필요	188
10.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을 고려한 시설사업 추진 필요	191
11. 관서운영경비 지급 부적정 등	194
12. 군무원 운용률 제고 노력 필요	198
13. 전투식량 비축률 안정적 관리 필요	201

[방위사업청] / 203

[병무청]

I. 결산 개요 / 271

1. 현 황	271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75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76



CONTENTS

II. 주요 현안 분석 / 277

- 1.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의 문제점 277
 - 1-1.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관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278
 - 1-2. 법 개정을 전제로 한 목돈마련지원을 위한 보전금 예산 편성 후 불용 문제 283

III. 개별 사업 분석 / 286

- 1.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의 운영 일원화 필요 286
- 2.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지표 마련 필요 290
- 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강화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수요 확대 필요 294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667억 3,400만원이며, 2,930억 9,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6%인 2,920억 5,100만원을 수납하고 10억 4,8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9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66,734	266,734	266,734	293,099	292,051	1,048	0	99.6

자료: 외교부

2019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3,893억 7,100만원이며, 이 중 98.0%인 2조 3,424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65억 7,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3억 4,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355,607	2,355,607	2,389,371	2,342,455	6,572	40,344	98.0

자료: 외교부

나. 기금 결산

2019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2,634억 7,900만원이며, 2,371억 8,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2019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국제교류기금	176,272	177,607	177,607	150,348	150,348	0	0	100.0
국제질병퇴치기금	85,872	85,872	85,872	86,836	86,836	0	0	100.0
합계	262,144	263,479	263,479	237,184	237,184	0	0	100.0

자료: 외교부

2019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2,634억 7,900만원이며, 이 중 90.0%인 2,371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국제교류기금	176,272	177,607	177,607	150,348	0	276	84.7
국제질병퇴치기금	85,872	85,872	85,872	86,836	0	626	101.1
합계	262,144	263,479	263,479	237,184	0	902	90.0

자료: 외교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9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5,700만원(0.1%) 이 증가한 5,292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507억 5,100만원(8.8%) 이 감소하였다.

[2019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89,418	266,734	266,734	292,051	25,317	2,633
기금	290,568	262,144	262,144	237,184	△24,960	△53,384
합계	579,986	528,878	528,878	529,235	357	△50,751

자료: 외교부

2019회계연도 외교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381억 1,200만원(1.5%)이 감소한 2조 5,796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025억 8,100만원 (4.1%)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186,490	2,355,607	2,355,607	2,342,455	△13,152	155,965
기금	290,568	262,144	262,144	237,184	△24,960	△53,384
합계	2,477,058	2,617,751	2,617,751	2,579,639	△38,112	102,581

자료: 외교부

라.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외교부의 자산은 4조 7,848억 200만원, 부채는 703억 6,500만원으로 순자산은 4조 7,144억 3,7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895억 5,400만원, 투자자산 1,634억 800만원, 일반유형자산 4조 2,698억 4,300만원, 무형자산 543억 1,1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76억 8,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4,131억 9,300만원(9.5%) 증가하였다. 이는 일반회계 일반유형자산의 해외 자산 매입, 자산재평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02억 1,800만원, 장기차입부채 9억 5,600만원, 장기충당부채 558억 5,4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33억 3,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억 2,800만원(0.5%) 증가하였다. 이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외교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4,784,802	4,371,609	413,193	9.5
Ⅰ. 유동자산	289,554	267,544	22,010	8.2
Ⅱ. 투자자산	163,408	103,217	60,191	58.3
Ⅲ. 일반유형자산	4,269,843	3,947,072	322,771	8.2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54,311	47,520	6,791	14.3
Ⅵ. 기타비유동자산	7,686	6,255	1,431	22.9
부 채	70,365	70,037	328	0.5
Ⅰ. 유동부채	10,218	14,436	△4,218	△29.2
Ⅱ. 장기차입부채	956	6,879	△5,923	△86.1
Ⅲ. 장기충당부채	55,854	40,601	15,253	37.6
Ⅳ. 기타비유동부채	3,336	8,121	△4,785	△58.9
순 자 산	4,714,437	4,301,572	412,865	9.6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조 914억 1,8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2조 3,048억 7,200만원, 관리운영비 2,079억 3,800만원, 비배분비용 32억 4,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816억 1,600만원, 비배분수익 395억 7,100만원, 비교환수익 등 1,034억 4,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202억 4,100만원(5.8%) 증가한 2조 1,948억 6,300만원이며, 이는 국제기구 분담금, 재외공관운영, 국제개발협력, 지역외교 프로그램사업비 증가 등에 기인한다.

총 14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8,000억 9,100만원)과 재외공관운영프로그램(6,295억 7,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961억 400만원과 경비 1,118억 3,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3,300만원, 평가손실 30억 4,300만원, 자산처분손실 1억 5,800만원, 기타비용 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외교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	2,023,256	1,862,262	160,994	8.6
II. 관리운영비	207,938	197,770	10,168	5.1
III. 비배분비용	3,240	41,309	△38,069	△92.2
IV. 비배분수익	39,571	26,718	12,853	48.1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2,194,863	2,074,622	120,241	5.8
VI. 비교환수익 등	103,444	109,796	△6,352	△5.8
VII. 재정운영결과(V-VI)	2,091,418	1,964,827	126,591	6.4

자료: 외교부

외교부의 2019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4조 3,015억 7,2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4조 7,144억 3,700만원으로 기초 대비 4,128억 6,500만원(9.6%)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2조 914억 1,8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서 각각 2,472억 2,200만원, 2조 2,570억 6,100만원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2조 5,534억 6,8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2,964억 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34억 5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2,438억 1,7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외교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4,301,572	4,324,997	△23,425	△0.5
II. 재정운영결과	2,091,418	1,964,827	126,591	6.4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257,061	2,050,304	206,757	10.1
IV. 조정항목	247,222	△108,902	356,124	327.0
V. 기말순자산(I-II+III+IV)	4,714,437	4,301,572	412,865	9.6

자료: 외교부

마. 재정 구조

2019회계연도 외교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은 없다.

외교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ODA), ②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 ③ 재외동포재단 출연 등이 있다.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ODA) 사업은 해외봉사단 파견 규모 축소 및 시기 조정에 따라 46억원이 감액(1,602억 4,900만원→1,556억 4,900만원)되었고,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 사업은 국민소통 관련 기존 사업들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1억 5,500만원이 감액(6억 7,000만원→5억 1,500만원)되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 사업은 홍보사업 수행방식 변경을 반영하여 5,000만원 감액(629억 500만원→628억 5,500만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이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② 재외국민보호, ③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등이 있다.

이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한-아프리카재단의 운영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건비 확충을 위해 3억원이 증액(46억 6,700만원→49억 6,700만원)되었고, 재외국민보호 사업은 재외공관의 영사 보조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1억 3,000만원이 증액(117억 4,900만원→118억 7,900만원)되었다.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은 원활한 대사관 청사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억 6,600만원이 증액(154억 1,200만원→164억 7,800만원)되었다.

외교부는 ①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② 신남방 정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 지원, ③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 사건·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영사서비스 강화, ④ 재외공관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강화 및 국민외교 사업의 내실화, ⑤ 국익을 증진하는 개발협력 강화, ⑥ 원활한 외교활동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외교 인프라 확충 등을 2019년 예산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에서 정부 보조율 100%인 민간경상보조금을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다 늦게 교부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자체자금으로 선집행하고 있으므로 외교부는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기구분담금 중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기타 의무분담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중 일부를 연체함에 따라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국격 및 위상 손상을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산 전용을 통하여 수행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의 향후 추진 방안’ 연구용역은 예산배정 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획재정부 승인전용이 필요한 기본조사설계비(420-01)로 집행하여야 하는 외교센터 리모델링 교통영향평가 계약을 일반용역비(210-14)로 자체전용하여 체결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반회계인 협력사업지원(ODA) 사업 예산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을 형해화 시키는 것이므로 한국국제협력단은 향후 예산 집행 시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1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의 문제점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¹⁾은 공공외교²⁾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외교부는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156억 3,500만원 중 96.8%인 151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7,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공외교 역량강화	15,416	15,416	219	±250	15,635	15,129	96.8	29	477

자료: 외교부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731-403

2) 「공공외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1-1.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예산집행 관리 부실

가. 현 황

외교부는 「공공외교법」 제11조¹⁾에 규정하고 있는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²⁾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2018년 12월 4억 3,100만원에 조달계약을 체결한 후 선수금 3억 200만원을 집행한 후 조달수수료를 포함한 잔금 1억 3,300만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다. 외교부는 시스템 구축비로 이월된 1억 3,300만원 중 1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불용하였다. 그리고 외교부는 2019년 6월 구축이 완료된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탑재할 서버구입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고, 이 중 2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0	0	133	250	383	358	0	25
시스템 구축비	0	0	133	0	133	129	0	4
서버 구입	0	0	0	250	250	229	0	21

자료: 외교부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공공외교법」

제11조(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주요 구성은 공공외교 및 종합시행계획 관리 시스템, 공공외교 추진계획 및 실적 관리 시스템, 공공외교 실태조사 관리 시스템, 공공외교 사업 공모 시스템 등이다.

나. 분석의견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구축이 완료된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탑재할 서버 구입이 예산편성 없이 전용을 통해 이루어 졌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외교부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2019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서버 구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의 일반수용비에서 자산취득비로 2억 5,000만원을 전용하였다.

[2019년 외교부 이·전용 명세서 일부]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2019 예산현액	변경액	변경후 금액
전용	5.14.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서 버구입 필요	공공외교 역량강화 (1731-403)	15,416	△250 (일반수용비)	15,416
					250 (자산취득비)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 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18년 12월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착수 이후에 이를 탑재할 서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자산취득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2019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교부의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살펴보면,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개발용역비 4억 7,800만원과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 8,400만원이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외교부는 시스템 개발 이후 시스템을 탑재할 서버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향후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이 필요한 경우 국회 심사과정을 거쳐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18년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편성 내역]

구분	2018년 예산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개발용역비: 478백만원 - 소프트웨어 개발비 = 400백만원 - 운영 용역비 = 78백만원 ■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 84백만원 - 소프트웨어 구매 = 50백만원 - 하드웨어 구매 = 34백만원

자료: 외교부,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둘째, 일반수용비로 집행되어야 할 조달수수료를 관리용역비에 포함하여 이월함에 따라 이월예산 중 400만원이 불용되고, 2019년 일반수용비 예산이 집행되었으므로 회계담당자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외교부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개발한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관련 경비 1억 3,300만원 중 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다. 동 시스템 개발은 2018년 12월에 계약액이 확정된 것으로 불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예산 이월 당시 담당자 착오로 조달청 조달수수료를 관리용역비에 포함하여 이월함에 따라 불용처리 하였고, 2019년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조달수수료를 집행하였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집행관리 부실로 인해 이월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할 조달수수료가 2019년도 예산에서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회계 관련 규정에 대해 담당자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1-2. 일반연구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가. 현 황

외교부는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일반연구비의 2019년도 예산현액 7억 4,400만원 중 6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700만원을 불용하였다.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의 일반연구비(260-01)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연구비	608	608	86	50	744	698	29	17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외교부는 일반연구비 일부를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의 목적과 다른 과제 수행에 집행하고 있으므로 일반연구비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의 일반연구비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공공외교 추진전략 연구’ 등 21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연구용역 과제를 살펴보면, 동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우주분야 국제협력 주요 현안 및 주요국 입장과 우리 대응방안’, ‘해외 우리 국민 환자 국내 이송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북극 외교전략’ 등 11건의 연구용역이 수행되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정책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포함하고 있던 ‘글로벌 정책 및 인적기반 조성’ 사업이 2018년 예산부터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일반연구비 일부를 공공외교와 관련이 적은 연구용역으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으로 다른 사업이 이관되어 통합되었다면 이관된 사업의 내역은 공공외교 사업목적에 맞게 변경되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외교부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를 살펴보면, 연구용역비 내역은 공공 외교 목적에 맞게 기재되어 있다.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의 일반연구비 내역 현황]

(단위: 천원)

코드	금액	내역
260-01	608,000	1.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가. 정책 공공외교 전략 연구개발비 60,800,000원×10회=

자료: 외교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발췌

따라서 외교부는 일반연구비가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19년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의 연구용역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과제명	연구기간	집행액	이월액
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공공외교 추진 전략 연구	2019.4.~12.	20	0
2	중국 선전 전략 변화에 대한 국내외 반응과 한국 공공외교 정책에의 함의	2019.4.~12.	20	0
3	주요국 공공외교 추진현황 연구	2019.10.~12.	20	0
4	유네스코 가입 70년 회고와 전망 연구	2019.3.~12.	39	0
5	공공외교 성과평가 표준 매뉴얼 구축 및 평가 모델 개발	2019.7.~9.	27	0
6	한국 스포츠 공공외교 거버넌스 체계화 연구	2019.6.~11.	20	0
7	국제관계 변화 속 대미 정책공공외교 방향 및 개선 방안	2019.11.~12.	50	0
8	주요국 대미 디지털 공공외교	2019.11.~12.	42	0
9	대미 정책공공외교 그랜드 디자인	2019.11.~12.	99	0
10	상생번영을 위한 중남미 3국과의 실질협력 강화방안	2019.4.~11.	19	0
11	대미 정책공공외교 콘텐츠 개발을 위한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 연구	2019.5.~9.	38	0
12	해외 우리 국민 환자 국내 이송에 관한 정책 연구용역	2019.6.~11.	39	0

(단위: 백만원)

연번	과제명	연구기간	집행액	이월액
13	우주분야 국제협력 주요 현안 및 주요국 입장과 우리 대응방안	2019.8.~11.	18	0
14	북극 외교전략	2019.9.~12.	12	0
15	자율살상무기체계(LAWS)의 국제법적 검토 및 국제사회의 규제동향 연구	2019.7.~11.	20	0
16	주요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 국 진출 및 활동 전략 비교 연구	2019.7.~12.	40	0
17	변화하는 중동 정세와 우리의 신중동 외교 전략 연구	2019.10.~2020.1.	15	15
18	블록체인 기반 e-아포스티유 영사확인/ 인증서 관리 체계 확산 방안 연구	2019.11.~2020.1.	14	13
19	사이버 코스웨어 개발	2019.7.~12.	100	0
20	동아시아 외교전문과정(EADP)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2019.6.~10.	40	0
21	유엔 정보안보 정부전문가그룹(GGE) 및 개방형워킹그룹(OEWG)에서의 우리측 전략 모색 및 사이버규범 논의 전망	2019.5.~12.	20	0

자료: 외교부

1-3. 동일 목적의 일반용역은 통합하여 계약할 필요

가. 현 황

외교부는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일반용역비의 2019년도 예산현액 18억 300만원 중 17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불용하였다.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의 일반용역비(210-14)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용역비	964	964	0	839	1,803	1,799	0	4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의 일반용역비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동일한 목적의 ‘공공외교포털 및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웹사이트 위탁 운영’과 ‘공공외교포털 및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웹사이트 유지보수’ 용역을 분리하여 수의계약으로 수행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동일 목적의 업무를 외부에 대행하는 경우 통합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공공외교포털 및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웹사이트 위탁 운영’과 ‘공공외교포털 및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웹사이트 유지보수’ 명목으로 일반용역비 각각 2,100만원, 2,200만원, 총 4,300만원을 집행하였다.

상기 일반용역은 동일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운영과 유지보수를 분리하여 동일 업체와 기간을 다르게 하여 수의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부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외교포털 및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웹사이트 일반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수행자	계약기간	계약방식	집행액
공공외교포털 및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웹사이트 위탁 운영	(주)OOOO솔루션즈	2019.1.~12.	수의	21
공공외교포털 및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웹사이트 유지보수	(주)OOOO솔루션즈	2019.4.~12.	수의	22
합계				43

자료: 외교부

이에 대해 외교부는 ‘공공외교포털 및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웹사이트 위탁 운영’은 웹사이트 업로드 콘텐츠 제작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콘텐츠 중심이고, ‘공공외교포털 및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웹사이트 유지보수’는 서버관리 및 기술적 운영 등 플랫폼 중심으로 용역 사업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공공외교포털 및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웹사이트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동일하므로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상기 두 건의 용역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집행액이 4,300만원으로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일반경쟁으로 계약이 추진되었어야 하나 외교부는 두 건의 용역을 분리하여 수행하여 수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동일한 목적의 용역계약을 분리하여 수행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외교부는 2013년도에 동 업체에서 공공외교 포털 웹사이트를 최초 제작한 이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계속해서 같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공외교포털 및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웹사이트 관련 계약 현황]

연도	내용	계약상대
2013	공공외교 포털 웹사이트 신규 제작	(주)○○○○ 솔루션즈
2014	공공외교 포털 웹사이트 모니터링 및 운영	
	공공외교 포털 웹사이트 추가 제작	
2015	공공외교 포털 웹사이트 신규 제작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이전 구축 사업	
2016	공공외교 포털 및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웹사이트 유지보수	
	공공외교 포털 및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웹사이트 위탁운영	
2017	공공외교 포털 및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웹사이트 유지보수	
	공공외교 포털 및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웹사이트 위탁운영	
2018	공공외교 포털 및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웹사이트 유지보수	
	공공외교 포털 및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웹사이트 위탁운영	
2019	공공외교 포털 및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웹사이트 유지보수	
	공공외교 포털 및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웹사이트 위탁운영	

자료: 외교부

둘째, ‘공공외교포털 및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웹사이트 위탁 운영’ 용역 계약서의 사업범위에 웹사이트 운영과 관련 없는 외부행사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 계약의 여지가 있으므로 외교부는 이러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가 ‘공공외교포털 및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웹사이트 위탁 운영’ 용역을 위해 (주)○○○○솔루션즈와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위탁운영 및 모니터링 대상범위가 공공외교포털 및 민간외교단체커뮤니티 운영, 콘텐츠 업데이트 및 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외부행사 지원 등으로 되어 있다.

[공공외교포털 및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웹사이트 위탁 운영 계약서 일부]

내용
제5조(위탁운영 및 모니터링 대상범위) ‘을’은 ‘갑’의 ‘공공외교포털’ 및 ‘민간외교단체커뮤니티’ 웹사이트의 운영 및 콘텐츠 관리, 모니터링을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및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공외교포털 및 민간외교단체커뮤니티 운영 2. 콘텐츠 업데이트 및 관리 3. 시스템 모니터링 4. 외부행사 지원

자료: 외교부

그런데 외부행사 지원은 웹사이트 위탁 운영과 큰 관련성을 띠지 않아 동 계약은 불공정 계약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1-4. 민간경상보조 집행관리 필요

가. 현 황

외교부는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민간경상보조의 2019년도 예산액 9억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동 사업의 정부 보조율은 100%이다.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의 민간경상보조(320-01)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민간경상보조	900	900	0	0	900	900	0	0

자료: 외교부

민간경상보조 사업자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한일미래포럼과 한아랍소사이어티는 각각 1억원, 5억원을 교부받아 전액 집행하였고, 21세기 한중교류협회는 3억원을 교부받아 2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8,600만원을 불용하였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자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자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한일미래포럼	100	0	100	100	0	0
한아랍소사이어티	500	0	500	500	0	0
21세기 한중교류협회	300	0	300	214	0	86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정부 보조율 100%인 민간경상보조금을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다 늦게 교부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자체자금으로 선집행하고 있으므로 외교부는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외교부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2019년 한중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민간 공공외교 활동지원 사업을 공모기간 2019년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사업수행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공모한 후 2월 22일 보조사업자로 ‘21세기 한중교류협회’를 선정하였다.

[2019년 한중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민간 공공외교 활동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공모기간	사업수행기간	사업자 선정일	보조금 최초 신청일	교부결정 통지일	보조금 1차 교부일
2019.01.31.~2.19.	선정일~ 2019.12.31.	2.22.	3.13.	3.19.	4.2.

자료: 외교부

그런데 외교부의 보조금 교부일과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최초 사업 수행일자를 살펴보면, 외교부는 1차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4월 2일에 교부하였으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이전인 2019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19차 한중고위지도자포럼을 중국 북경에서 개최하면서 3,164만원을 집행하였다.

[제19차 한중고위지도자포럼 개요]

(단위: 만원)

기간	장소	주제	집행액
2019.03.18.~20.	중국 북경	-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 새로운 세계경제 형세에서 한중협력 방안	3,164

자료: 21세기한중교류협회, 「2019년도 한중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최종보고서」

이에 대해 외교부는 회계실무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조금 교부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¹⁾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일정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조사업자는 3월 13일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외교부는 4월 2일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외교부는 향후 보조금 교부관리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현 황

국제기구분담금 프로그램¹⁾은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납부를 통하여 해당 국제기구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분담금 납부를 통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외교부는 국제기구분담금 프로그램의 2019년도 예산액 4,545억 3,9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으로 2019년도 예산액 587억 3,9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고, 유엔 PKO²⁾ 예산분담금은 PKO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으로 2019년도 예산액 1,571억 3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다. 기타 의무분담금은 국제기구에 가입한 회원국의 의무이행 차원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으로 2019년도 예산액 600억 4,1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고,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은 UNDP³⁾ 등 유엔 산하기구 및 회의체, ASEAN 등 지역기구 등과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기여금으로 2019년도 예산액 1,786억 5,6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다.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300

2) Peace Keeping Operation(평화유지활동)

3)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유엔개발계획)

[2019회계연도 국제기구분담금 프로그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제기구분담금	454,539	454,539	0	0	454,539	454,539	0	0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납부	58,739	58,739	0	0	58,739	58,739	0	0
유엔 PKO 예산분담금 납부	157,103	157,103	0	0	157,103	157,103	0	0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	60,041	60,041	0	0	60,041	60,041	0	0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178,656	178,656	0	0	178,656	178,656	0	0

자료: 외교부

2-1. 국제기구분담금 연체 부적정

가. 현 황

외교부는 2019년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약 981만 달러, 기타 의무분담금 약 94만 5천 달러,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약 59만 달러 등 총 1,134만 5천 달러를 연체하였다.

[2019년도 국제기구분담금 연체 현황]

(단위: 만 US달러)

구분	국제기구	연체액	사유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UN	981	분담률 상승(2039% → 2267%) 및 유엔 정규예산 증액 확정
기타 의무분담금	국제해저기구	17.4	환율 상승
	헤이그국제사법회의	7.4	
	중양아시아국제학술연구소	0.7	2019년도 예산편성 시 분담금 상승률 미반영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69	
	소계	94.5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아세안협력기금	59	환율 상승
합계		1,134.5	-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재작성

나. 분석의견

국제기구분담금 중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기타 의무분담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중 일부를 연체함에 따라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국격 및 위상 손상을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및 기타 의무분담금 연체는 국제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불이행으로 투표권 등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고,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연체는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상호간 협정 불이행으로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의 경우 2019년도 유엔 정규예산이 당초 예상치인 27억 달러에서 31억 달러로 증액되어 2018년 12월말 확정되었고, 우리나라 정규예산 분담률도 예상치 보다 높은 2.267%로 결정되어 연체가 발생하였으며,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등 2건은 타 국가의 국제기구 탈퇴로 인한 우리 분담률 상승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미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기타 의무분담금인 국제해저기구 분담금 등 2건과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인 아세안협력기금은 하반기 환율 상승으로 인해 연체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부족분은 예비비 제도를 활용하였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22조 및 제51조¹⁾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필요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에 요청,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의 절차를 거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의무분담금 및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부족분은 예비비나 이용 제도를 활용하였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47조²⁾는 예산총칙³⁾에서 정한 환율

1)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이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2019년도 예산총칙」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국제기구분담금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과 관계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재정 당국은 해당소요 발생 시 이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체계 제도화 필요

가. 현 황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납부하는 국제기구분담금은 2016년 결산 기준 5,845억원에서 2020년 예산 기준 7,21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0년 예산 기준 의무분담금은 55.1%인 3,978억원, 재량분담금은 44.9%인 3,238억원 수준이다.

[2016~2020년 국제기구분담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무	금액	3,806	4,006	3,559	3,568	3,978
	비율	65.1	66.9	55.5	55.7	55.1
재량	금액	2,039	1,979	2,855	2,839	3,238
	비율	34.9	33.1	44.5	44.3	44.9
합계		5,845	5,985	6,414	6,407	7,216

주: 1. 2019년 12월 제4차 관계부처 회의 시 수집한 자료로 추정치임

2. 2016~2018년 수치는 결산 기준, 2019~2020년 수치는 예산 기준

자료: 외교부

국제기구분담금 기관별 현황을 보면, 2020년 예산 기준 국제기구분담금은 외교부에 70.3%인 5,07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기타 35개 기관에 29.7%인 2,142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2016~2020년 국제기구분담금 기관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외교부	4,406	4,416	4,599	4,545	5,075
	75.4	73.8	71.7	70.9	70.3
기타 기관(35개)	1,439	1,569	1,815	1,862	2,142
	24.6	26.2	28.3	29.1	29.7

주: 1. 2019년 12월 제4차 관계부처 회의 시 수집한 자료로 추정치임

2. 2016~2018년 수치는 결산 기준, 2019~2020년 수치는 예산 기준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정부의 국제기구분담금 통계기준이 연도별로 일치하지 않고,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통계에서 제외되는 등 관리가 부실하므로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체계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앞서 현황에서 살펴본 자료는 2019년 12월에 개최된 제4차 국제기구분담금 관계부처 회의 시 각 부처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연도별 통계기준이 일치하지 않고 국제금융기구에 납부하는 분담금은 제외되어 통계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부의 경우 2018년 통계치는 ODA 내역이 제외되어 있고,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경우 2016~2018년 통계 자료가 제외되어 있다.

[2016~2020년 국제기구분담금 기관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외교부	4,406	4,416	4,599	4,545	5,075
보건복지부	258	277	320	313	333
기획재정부	169	178	175	172	289
농림축산식품부	154	159	162	169	199
산림청	108	110	118	132	170
고용노동부	102	102	101	101	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6	135	112	118	115
환경부	56	56	113	109	118
교육부	128	146	57	88	103
해양수산부	71	76	81	91	100
여성가족부	미파악			52	56
산업통상자원부	34	30	52	51	49
행정안전부	미파악			26	27
국토교통부	9	10	23	21	23
법무부	미파악			4	24
문화체육관광부	미파악			23	19
기타(20여개 기관)	223	276	559	391	401
합계	5,845	5,985	6,415	6,407	7,217

주: 1. 2019년 12월 제4차 관계부처 회의 시 수집한 자료로 추정치임

2. 2016~2018년 수치는 결산 기준, 2019~2020년 수치는 예산 기준

자료: 외교부

그리고 OECD, WHO 등 주요 국제기구에 외교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담금을 2020년 예산 기준 1,393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국제기구별 전체 납부 금액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분담금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기구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 국제기구분담금 납부에 상응하는 영향력 행사를 위한 전략수립 등 차원에서 국제기구분담금 편성예산이 가장 큰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9~2020년 주요 복수부처 국제기구분담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국제기구	납부 기관	2019	2020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외교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국세청, 통계청, 농진청	16,551	18,654
UN ESCAP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외교부, 기재부, 과기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통계청, 기상청	1,084	1,024
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외교부, 기재부, 교육부, 문체부, 환경부, 문화재청	12,706	15,074
WHO (세계보건기구)	보건부, 환경부, 식약처, 통계청	21,397	23,939
FAO (유엔식량농업기구)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12,502	18,564
IAEA (국제원자력기구)	외교부, 과기부, 원안위	14,118	16,080
UNODC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외교부, 법무부, 통계청	1,015	3,106
UNFPA (유엔인구기금)	외교부, 보건부, 통계청	1,461	2,166
CBD (생물다양성협약)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2,126	1,947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1,477	1,360
UNCTAD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기재부, 행안부, 공정위	148	109

(단위: 백만원)

국제기구	납부 기관	2019	2020
UNDP (유엔개발계획)	외교부, 기재부	18,748	21,883
WCO (세계관세기구)	기재부, 관세청	2,872	4,025
IMO (국제해사기구)	외교부, 해수부	3,375	3,365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외교부, 국토부	2,199	2,390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문체부, 특허청	2,360	2,123
UNCCD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외교부, 산림청	1,694	1,701
UNEP (유엔환경계획)	환경부, 산업부	1,984	1,759
합계		117,817	139,269

주: 1. 2019년 12월 제4차 관계부처 회의 시 수집한 자료로 추정치임

2. 2016~2018년 수치는 결산 기준, 2019~2020년 수치는 예산 기준

자료: 외교부

가. 현 황

외교부는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서 관서운영경비 지급 최고금액인 500만원을 초과하여 17건을 집행하였다.

[관서운영경비 지급 최고금액(500만원) 초과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건명	사용처	금액
1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2019년 주요외교계기기념 사업 결과발표회 케이터링비	광화문설가 /아띠	5,685
2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ICAO 선거 관련 주한외교 단 초청 리셉션 개최	(주)칼호텔 네트워크	5,601
3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제3차 한-키르기스스탄 경제공동위 오찬	(주)롯데호텔	5,633
4	정상 및 총리외교	운영비 (임차료)	임차폰 비용	SK텔레콤	6,481
5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해외순방 선물 구입	공평아트	6,270
6			해외순방 선물 구입	공평아트	6,600
7			해외순방 선물 구입	공평아트	6,600
8			해외순방 선물 구입	공평아트	5,566
9			해외순방 선물 구입	공평아트	7,590
10			해외순방 선물 구입	공평아트	6,160
11			해외순방 선물 구입	공평아트	5,764
12			해외순방 선물 구입	공평아트	5,082
13			방한 인사 선물 구입	공평아트	5,720
14			해외순방 선물 구입	공평아트	5,775
15			해외순방 선물 구입	공평아트	6,413
16			해외순방 선물 구입	공평아트	6,336
17			해외순방 선물 구입	공평아트	6,215

자료: 외교부 제출 지급대장 발체

나. 분석의견

외교부는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 범위를 벗어난 운영비(임차료),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¹⁾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2조²⁾는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등을 제외하고는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을 건당 500만원으로 하고 있다.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 소관)에서는 “건당(500만원)”을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구분하기 쉽게 정리해 놓고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2)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3. 특수활동비 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 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예산과목	용 도
인건비(110)	현역병사 봉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운영비(21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 및 인쇄비용, 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시험연구비 중 연구용역비는 제외
여 비(220)	전체
특수활동비(23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수사·정보·경호활동 및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업무추진비(24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직무수행경비(250)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보전금(310)	군인사망보상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여비, 상근 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및 상금,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민간이전(320)	구호 및 교정비
유형자산(430)	취득단가 50만원(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미만인 물품의 취득경비
-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	제세공과금·법정납부금(각종부담금, 보험료, 기여금) 및 인건비 지급 시 공제되는 금액 중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직접 지출하기 곤란한 경비

자료: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별지 제1호

그런데 외교부는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서 관서운영경비 지급 최고금액인 500만원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벗어난 17건을 집행하였다. 이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외교부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관서운영경비가 아닌 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 공무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지출관은 동 지출원인행위가 지출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한 후 채권자 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예산 집행

가. 현 황

2019 한-아세안¹⁾ 특별정상회의 사업²⁾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아세안 회원국과 미래 지향적인 관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사업이다. 외교부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223억 3,300만원 중 186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34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1,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5,560	5,560	0	208	16,565	22,333	18,659	3,463	211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2020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2020년 준비기획단 사무실 임차료와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비를 2019년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 이월한 것은 「국가재정법」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³⁾을 위반한 것이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

2) 코드: 일반회계 1431-402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를 위하여 설치된 준비기획단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운영되었다. 외교부는 동 사업의 임차료 예산현액 29억 6,300만원 중 28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500만원을 불용하였다. 그리고 외교부는 준비기획단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비(시설장비유지비) 1,6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사업의 임차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예산액	세목조정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임차료	1,120	+53	1,790	2,963	2,861	47	55
시설장비유지비	0	+124	0	124	109	16	0

자료: 외교부

그런데 외교부가 이월한 임차료와 시설장비유지비는 각각 2020년 2월에 해산하는 1월~2월 준비기획단 사무실 임차료와 임차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비이다. 즉, 외교부는 2020년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할 예산을 2019년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 이월한 것이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사업의 임차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세목조정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비목(~에서)	금액	비목(~으로)	금액	사유
세목조정	일반용역비	△53	임차료	+53	기획단 사무실 2020년 임차료 부족분 충당
	일반용역비	△124	시설장비유지비	+124	기획단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비 충당

자료: 외교부

「국가재정법」 제3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동 규정을 준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가. 현 황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증진 사업¹⁾은 국제사회에서 여성·평화·안보 논의 점검을 위한 정례 플랫폼 마련, 분쟁하 성폭력 대응 ODA 성과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위안부 문제 대응 관련 우리 시민사회의 경험 공유 등을 통해 분쟁하 성폭력 대응시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 담론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외교부는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증진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액 4억 9,800만원 중 4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증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증진	498	498	0	±30	498	481	15	2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예산 전용을 통하여 수행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의 향후 추진 방안’ 연구용역은 예산배정 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2019년 7월 2일, 3일 양일간 개최된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후속조치로 비전 수립과 지속가능한 이행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예산 전용을 통하여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의 향후 추진 방안’ 연구용역을 추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531-410

진하였다. 외교부는 동 연구용역 예산현액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을 이월하였다.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의 향후 추진 방안 용역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기간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2019.11.01.~2020.01.31.	0	30	30	15	15

자료: 외교부

그런데 동 연구용역은 2019년 11월 1일 계약(지출원인행위)이 이루어진 후 2020년 1월 31일까지(3개월) 수행되었으나 예산 전용은 11월 28일에 이루어졌다. 즉, 외교부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다.

[2019년 외교부 이·전용 명세서 일부]

(단위: 천원)

구분	일자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2019 예산현액	변경액	변경후 금액
자체 전용	11.28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와 향후 추진 방안 연구용역 추진에 필요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증진 (1531-410)	527,000	△30,000	527,000
					30,000	

자료: 외교부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는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동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확보한 이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사업¹⁾은 독도를 비롯한 우리 영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여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국격을 제고하며, 해양 및 남극 활동, 한일 청구권 협정 대응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외교부는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액 63억 5,200만원 중 62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6,352	6,352	0	0	6,352	6,203	0	149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외교부는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집행되어야 할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일반수용비(210-01)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비목에 맞게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²⁾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532-401

2)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회계연도 결산에서 지적한 바 있으나 동일한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 : 외교통일위원회』, 2014.07.01., pp.294~295.)

외교부는 동 사업에서 독도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반수용비 1억 690만원을 집행하였다. 개편 내용은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 제공, 독도 영유권 근거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및 정보 접근성 개선, 신규 메뉴란 추가 및 기존 메뉴 변경 등이다.

[독도 홈페이지 개편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비목	수행자	집행액
2019년도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관리	일반수용비 (210-01)	(주)○○○○케이선	107

자료: 외교부

그런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은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데이터 입력,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을 전산용역으로 구분하면서 연구용역비(260목) 중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연구용역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비 편성과 일반수용비 집행 지침]

(단위: 원)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6. 연구용역비(260목)(209쪽) 1. 적용대상 ☐ 일반연구비(260-01) ☐ 전산용역: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1. 운영비(210목)(144쪽) 1-1. 일반수용비(210-01목) 바. 자산취득비, 공사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연구용역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료: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기 지침에 따르면 외교부에서 수행한 독도 홈페이지 개편 사업은 전산용역에 해당되므로 일반연구비로 편성·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교부는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예산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비목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재외국민 보호 사업¹⁾은 국민의 해외안전의식 제고 등을 통해 해외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해외에서 사건·사고 발생시 영사조력 등 대응을 통해 재외국민을 지원·보호하려는 사업이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159억 1,000만원 중 153억원을 집행하고, 1억 9,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1,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재외국민 보호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외국민 보호	11,879	11,879	4,399	△368	15,910	15,300	194	416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예산 전용을 통하여 수행한 ‘민원접수채널 다양화 및 지능형 민원상담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은 예산배정 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²⁾(2019.1.15.제정) 시행 시기에 (2021.1.16.) 맞추어 상담체계 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전용을 통해 ‘민원접수채널 다양화 및 지능형 민원상담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추진하였다.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831-401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동 ISP는 2019년 4월 29일 계약(지출원인행위)이 이루어진 후 6월 28일까지(2개월) 수행되었으나 예산 전용은 10월 7일에 이루어졌다. 즉, 외교부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다.

[민원접수채널 다양화 및 지능형 민원상담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개요]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사업기간	집행액
- 효율적인 민원 접수 채널 다양화 - 지능형 민원상담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정보화 전략 수립 -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시스템과 연계한 영사민원서비스 제공 방안 제시	2019.4.29.~6.28.	104

자료: 외교부

[2019년 외교부 이·전용 명세서 일부]

(단위: 천원)

구분	일자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2019 예산현액	변경액	변경후 금액
자체 전용	10.7	2021년 영사조력법 시행 관련 영사콜센터 정보화전략계획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재외국민보호 (1831-401)	11,879,000	△18,000	11,879,000
					△94,000	
					112,000	

자료: 외교부

이에 대해 외교부는 연구용역비 예산현액에서 동 사업 대금을 우선 집행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는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동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확보한 이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사업¹⁾은 국제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저탄소 경제 및 다자환경 이슈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외교부는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34억 4,500만원 중 32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1,200만원을 불용하였다. 외교부는 2020년 P4G²⁾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출범 지원 관련 예비비 2억 8,100만원을 배정받아 2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6,300만원을 불용하였다.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2020년 6월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2차 P4G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조직되었고,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11월 30일 까지 운영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회의가 202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현재 축소 운영 중이다.

[2019회계연도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외교강화	3,164	3,164	0	0	281	3,445	3,233	0	212
예비비	0	0	0	0	281	281	218	0	63

자료: 외교부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2131-401

2)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Agenda 2030)

나. 분석의견

예비비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외교부는 예비비 필요 시 소요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재정당국에 예비비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51조제2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정확한 소요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출범지원 관련 예비비 집행률은 78%로 집행이 부진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예비비 관련 검토 일정이 늦어졌고 이에 따라 예비비 배정이 지연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예비비 비목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국외여비와 사업추진비의 집행률은 각각 100%, 99%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예비비가 필요한 경우 보다 면밀한 소요예산 추계를 통하여 재정당국에 예비비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2020년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출범 지원 관련 예비비 비목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비목	배정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일반수용비(210-01)	74	49	25	67
임차료(210-07)	70	59	11	84
일반용역비(210-14)	50	24	26	47
국외여비(220-02)	81	81	0	100
사업추진비(240-01)	6	5	1	99
합계	281	218	63	78

자료: 외교부

가. 현 황

국내외 교육훈련 사업¹⁾은 외교부 직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외교부는 국내외 교육훈련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액 69억 2,700만원 중 65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5,7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내외 교육훈련 사업의 외국어 전임강사 상용임금은 2019년도 예산액 3억 9,500만원 중 2억 2,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국내외 교육훈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내외 교육훈련	6,927	6,927	0	0	6,927	6,570	0	357
외국어 전임강사 상용임금	395	395	0	0	395	222	0	173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제2외국어 전임강사를 4~5인 채용하고 있으나 8인에 대한 상용임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국내외 교육훈련 사업의 상용임금 예산으로 제2외국어 전임강사 4~5인을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2231-402

[제2외국어 전임강사 현황]

(단위: 명)

언어	인원	재직 기간
스페인어	1	6년 8개월
일본어	1	6년 8개월
중국어	2	6년 10개월, 4개월
프랑스어	1	6년 1개월

주: 2019년 4월 기준임

자료: 외교부

최근 3년간(2017~2019년) 제2외국어 전임강사 상용임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집행액은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용임금 예산 집행률은 매년 낮아져 2019년에는 56.2%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제2외국어 전임강사 인건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비목	연도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불용액
제2외국어 전임강사 상용임금 (110-03)	2017	360	0	360	276	76.7	84
	2018	373	0	373	219	58.7	157
	2019	395	0	395	222	56.2	173

자료: 외교부

그런데 각 년도 세입세출 각목명세서를 살펴보면, 외교부는 제2외국어 전임강사를 4~5인 채용하고 있으나 8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1인당 상용임금이 2017년 월 352만원에서 2019년 월 411만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편성인원과 채용인원의 차이로 인하여 불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예산 편성 시 제2외국어 전임강사 적정인원에 대한 상용임금을 반영하여 예산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교육훈련 사업의 상용임금(110-03)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편성 내역	예산액
2017	1. 외교관후보생 외국어 교육 강사료 가. 제2외국어 강사 8인: 3,518,438 원×12개월×8인 나. 강사 고용부담금: 22,600,000원	360
2018	1. 외교관후보생 외국어 교육 강사료 가. 제2외국어 강사 8인: 3,883,850 원×12개월×8인	373
2019	1. 외교관후보생 외국어 교육 강사료 가. 제2외국어 강사 8인: 4,114,590 원×12개월×8인	395

자료: 외교부, 각 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발췌

가. 현 황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외무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사업¹⁾은 기존 외무고시를 대체하여 2013년 12월 출범한 외교관후보자를 포함한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과정의 기획과 운영을 위한 사업이다. 외교부는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외무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액 17억 8,800만원 중 14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다.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외무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사업의 영어 전임강사 등 상용임금은 2019년도 예산액 3억 6,400만원 중 2억 7,700만원이 집행되고, 8,7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외무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외무 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1,788	1,788	0	0	1,788	1,443	0	345
영어 전임강사 등 인건비	364	364	0	0	364	277	0	87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외국어 전임강사는 외교관후보자 교육뿐만 아니라 외교부 직원 영어 교육 등 다양한 강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에서 편성·집행되고 있는 영어 전임강사 등 상용임금은 국내외 교육훈련 사업의 상용임금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2231-405

외교부는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외무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사업의 상용임금 예산으로 영어 전임강사 4인을, 국내외 교육훈련 사업의 상용임금 예산으로 제2외국어 전임강사 5인²⁾을 채용하고 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세부사업 예산으로 채용한 외국어 전임강사들은 외교관후보자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외무영사직 외국어 교육 등 외교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외국어 강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전임강사들의 상용임금을 다른 세부사업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사업의 성과관리에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양 사업에 각각 편성된 상용임금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외무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사업은 신규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외교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교육훈련 사업으로 상용임금을 이관하여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적에 따라 2018년부터 상용임금 근로자 운영 예산 통합을 위한 과목구조개편(안)을 재정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외국어 전임강사 강의 과정]

사업명	인원	강의 과정
국내외 교육훈련	5인	- 외교관후보자 제2외국어 과정 - 외무영사직 제2외국어 과정 - 직원 제2외국어 교육 과정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4인	- 외교관후보자 영어집중과정 및 영어 정규 과정 - 외무영사직 영어집중 과정 - 대학생 워크숍 영어 과정 - 글로벌 리더십 영어 과정 - 직원 영어 교육 과정

자료: 외교부

2) 중국어 2인, 일본어 1인, 스페인어 1인, 프랑스어 1인

가. 현 황

국립외교원 기본경비 사업¹⁾은 국립외교원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지원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외교부는 국립외교원 기본경비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액 36억 3,600만원 중 34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립외교원 기본경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립외교원 기본경비	3,636	3,636	0	0	3,636	3,427	35	174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기획재정부 승인전용이 필요한 기본조사설계비(420-01)로 집행하여야 하는 외교센터 리모델링 교통영향평가 계약을 일반용역비(210-14)로 자체전용하여 체결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국립외교원은 외교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2019.9.6.~2019.12.24.) 중 구내도로 차선확보 등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게 되자 일반연구비를 일반용역비로 3,500만원 자체전용하여 교통영향평가 계약(2019.12.16.~2020.03.16.)을 체결하고 동 예산을 이월하였다.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7018-251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본조사설계비 비목에 편성되어 집행되는 예산으로 부처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산이다.

그런데 외교부는 기획재정부 승인전용이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경비를 자체전용이 가능한 일반용역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이러한 예산집행은 부처에 위임된 예산전용 권한을 벗어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46조²⁾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가. 현 황

외교홍보역량강화 사업¹⁾은 외교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외교부는 외교홍보역량강화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액 14억 9,900만원 중 14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5,600만원을 불용하였다.

온라인 홍보 강화 내역사업은 SNS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통하여 외교부와 국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현액 6억 8,900만원 중 6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외교홍보역량강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외교홍보역량강화	1,499	1,499	0	0	1,499	1,443	0	56
온라인 홍보 강화	693	693	0	△4	689	660	0	29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외교부는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되어야 할 SNS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비를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비목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온라인 홍보 강화 내역사업에서 주요 외교활동 등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실시간 방송 Live MOFA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 3,676만원(총 12건)을 집행하였다.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7034-401

[외교홍보역량강화 사업의 영상자료 제작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일자	과제명	수행자	집행액
1	2019.02.13.	Live MOFA “장관 내신기자단 브리핑” 편 소셜생방송	○○○○코리아	2,980
2	2019.03.14.	Live MOFA “3.1 운동 및 임정 수립 100 주년 기념 토크쇼” 편 방송	○○○○코리아	4,320
3	2019.03.21.	SNS 콘텐츠 제작 (외교관 탐구생활 제작편)	○○○○미디어	2,860
4	2019.03.27.	SNS 콘텐츠 제작 및 영상 촬영 (외교부 Office Curator at MOFA)	○○○○코리아	2,530
5	2019.05.02.	SNS콘텐츠 제작(외교부 인트로 제작)	○○○○코리아	990
6	2019.07.25.	SNS 콘텐츠 제작 및 영상 촬영	○○○○컴퍼니	990
7	2019.07.30.	SNS콘텐츠 제작 및 영상 촬영	○○○○컴퍼니	3,850
8	2019.07.31.	SNS콘텐츠 제작 및 영상 촬영	○○○○컴퍼니	1,397
9	2019.08.09.	SNS 콘텐츠 제작 및 영상(영사콜센터) 촬영	○○스튜디오	4,950
10	2019.09.09.	SNS 콘텐츠 제작 및 영상 촬영(꽃중년들의 외교전)	○○○○컴퍼니	4,895
11	2019.09.19.	SNS 콘텐츠 제작 및 영상(외교부는 처음 이라서) 촬영	○○스카이	4,500
12	2019.12.19.	SNS 콘텐츠 제작(유튜브로 본 외교부 주요활동)	○○플레이스	2,500
합계				36,762

자료: 외교부

그런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은 속기 등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이나 전문가 자문료 등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용역, 채용, 구매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해서는 안 되고, 영상자료 제작은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 편성 및 집행 지침]

(단위: 원)

비목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일반수용비 (210-01)	소규모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 (속기, 원고측량 등의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수수료, 사용료 및 전문가 자문료 등)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소송 및 법률자문 비용, 위원회 참석비, 업무용택시 이용요금 등 규정 - 다른 비목 성격 경비 집행 금지
일반용역비 (210-14)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 성이 필요한 행사운용,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용,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자료: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기 지침에 따르면 Live MOFA, SNS 콘텐츠 제작은 영상자료 제작에 해당되므로 일반용역비로 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교부는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예산을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비목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협력사업지원(ODA) 사업¹⁾은 한국국제협력단이 ODA 전담기관으로서 홍보·평가·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외교부는 협력사업지원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액 417억 3,300만원 전액을 한국국제협력단에 출연하였고, 한국국제협력단은 출연받은 예산 중 413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9,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협력사업지원(ODA)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협력사업지원(ODA)	41,733	41,733	0	0	41,733	41,733	0	0
한국국제협력단	41,733	41,733	0	0	41,733	41,341	0	392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금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을 형해화 시키는 것이므로 한국국제협력단은 향후 예산 집행 시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출연받은 예산 중 4,694만원을 외교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 중인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인건비 명목으로 집행하였다.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636-401

[협력사업지원(ODA) 사업의 기금 인건비 집행 현황]

(단위: 만원)

일자	건명	집행액
2019.03.22.	3월 기금실 정규직(5인)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지급	2,347
2019.06.21.	6월 기금실 정규직(5인)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지급	2,347
합계		4,694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국가재정법」은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 또한 「국가재정법」은 제2장 예산에 예산안 편성과 집행 등을 규정하고, 제4장 기금에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금결산 등을 규정하여 예산과 기금을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국제협력단은 일반회계인 협력사업지원(ODA) 사업 예산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인건비를 집행하였다. 이러한 집행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은 일반회계 예산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인건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상기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금 인건비를 집행함에 따라 2019년도에 국제질병퇴치기금에 계획된 인건비³⁾ 2억 2,700만원을 초과하여 동 집행지침도 위반하고 있다.

2)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3) 한국국제협력단은 2019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 인건비로 편성된 2억 2,7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

외교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 지원 지역의 다양성 제고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
2	재외동포재단 차세대해외입양동포지원 사업의 취지에 따른 차별화된 운영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12

통일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8억 1,100만원이며, 22억 4,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8.2%인 19억 8,1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6,5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9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811	2,811	2,811	2,246	1,981	265	0	88.2

자료: 통일부

2019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259억 6,300만원이며, 이 중 96.9%인 3,157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9억 1,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19,875	319,875	325,963	315,727	323	9,913	96.9

자료: 통일부

나. 기금 결산

2019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조 4,902억 9,800만원이며, 4,462억 1,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9.8%인 4,007억 8,900만원을 수납하고 454억 2,7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없었다.

[2019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남북협력기금	1,490,298	1,490,298	1,490,298	446,217	400,789	45,427	0	89.8

자료: 통일부

2019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조 4,999억 8,300만원이며, 이 중 26.7%인 4,007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363억 5,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조 451억 4,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남북협력기금	1,490,298	1,490,298	1,499,983	400,789	36,355	1,045,143	26.7

자료: 통일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9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852억 7500만원 (84.9%)이 감소한 152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 66억 3,000만원(30.4%)이 감소하였다.

[2019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763	2,811	2,811	1,981	△830	218
기금	20,069	97,666	97,666	13,221	△84,445	△6,848
합계	21,832	100,477	100,477	15,202	△85,275	△6,630

자료: 통일부

2019회계연도 통일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331억 100만원(77.9%)이 감소한 2,930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290억 6,600만원(30.6%)이 감소하였다.

[2019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07,669	219,875	219,875	215,727	△4,148	8,058
기금	214,493	1,106,322	1,106,322	77,369	△1,028,953	△137,124
합계	422,162	1,326,197	1,326,197	293,096	△1,033,101	△129,066

자료: 통일부

라.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통일부의 자산은 3조 3,531억 7,300만원, 부채는 2조 3,136억 2,300만원으로 순자산은 1조 395억 5,0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784억 1,300만원, 투자자산 2조 5,594억 8,900만원, 일반유형자산 4,325억 6,0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84억 1,500만원(0.9%) 증가하였다. 이는 토지 재평가 차익 발생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181억 8,0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5,622억원, 장기차입부채 1조 7,509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2억 700만원(0.1%) 감소하였다. 이는 유동부채 3,444억 3,800만원 증가, 장기차입부채 3,456억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통일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3,353,173	3,324,758	28,415	0.9
Ⅰ. 유동자산	278,413	270,287	8,126	3.0
Ⅱ. 투자자산	2,559,489	2,558,440	1,049	0.1
Ⅲ. 일반유형자산	432,560	414,380	18,180	4.4
Ⅳ. 무형자산	4,685	6,349	△1,664	△26.2
Ⅴ. 기타비유동자산	78,026	75,302	2,724	3.6
부 채	2,313,623	2,314,830	△1,207	△0.1
Ⅰ. 유동부채	562,200	217,762	344,438	158.2
Ⅱ. 장기차입부채	1,750,900	2,096,500	△345,600	△16.5
Ⅲ. 장기충당부채	-	4	△4	순감
Ⅳ. 기타비유동부채	523	564	△41	△7.3
순 자 산	1,039,550	1,009,928	29,622	2.9
Ⅰ. 기본순자산	246,751	246,751	0	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712,531	691,512	21,019	3.0
Ⅲ. 순자산 조정	80,268	71,665	8,603	12.0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045억 9,3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2,387억 5,700만원, 관리운영비 705억 3,200만원, 비배분비용 571억 3,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577억 5,100만원, 비배분수익 40억 7,6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460억 3,600만원(32.4%) 감소한 3,045억 9,3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 총원가가 전년도 대비 1,582억 5,900만원(39.9%)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9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1,001억 9,300만원)과 인도적문제해결 프로그램(494억 8,9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441억 4,500만원과 경비 263억 8,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570억 9,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통일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81,006	378,814	△197,808	△52.2
가. 프로그램 총원가	238,757	397,016	△158,259	△39.9
나. 프로그램 수익	57,751	18,202	39,549	217.3
II. 관리운영비	70,532	63,948	6,584	10.3
III. 비배분비용	57,131	63,546	△6,415	△10.1
IV. 비배분수익	4,076	55,679	△51,603	△92.7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304,593	450,629	△146,036	△32.4
VI. 비교환수익 등	-	△70	△70	순감
VII. 재정운영결과(V - VI)	304,593	450,699	△146,106	△32.4

자료: 통일부

통일부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1조 99억 2,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조 395억 5,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96억 2,200만원(2.9%) 증가하였는데, 이는 토지 재평가 차이 발생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181억 8,0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3,294억 7,3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38억 6,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82억 8,800만원, 투자증권평가손익 3억 1,6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통일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1,009,928	1,186,938	△177,010	△14.9
II. 재정운영결과	304,593	450,699	△146,106	△32.4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25,611	279,265	46,346	16.6
IV. 조정항목	8,604	△5,576	14,180	순증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039,550	1,009,928	29,622	2.9

자료: 통일부

마. 재정 구조

2019회계연도 통일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1,000억원 전출되었다.

[2019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통일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 ② 통일정책추진(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 ③ 국제통일기반조성(한반도 국제포럼) 사업 등이 있다.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은 1,059억원이 감액(1,347억원→288억원)되었고, 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 확립 차원에서 2억 4,000만원이 감액(9억 8,600만원→7억 4,600만원)되었다. 한반도 국제포럼 사업은 대북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 등이 있어 1억 5,000만원이 감액(7억 8,400만원→6억 3,400만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이산가족교류지원(화상상봉예산) 사업, ②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등이 있다.

화상상봉 사업은 대면상봉이 어려운 고령 이산가족을 위하여 59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은 정착기본금이 2013년 이후 인상이 없었던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12억원이 증액(399억 3,600만원→411억 3,600만원)되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경협기반(무상·용자) 사업이 있다. 경협기반(무상·용자) 사업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비공개되고 있는 ‘경협기반(무상·용자) 사업’ 중 남북 철도·도로협력 사업의 현지실태조사 결과는 2019년 1/4분기 중에, 이후 남북 간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통일부는 ‘평화변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일관된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고 남북대화 추진과 남북 공동체 추진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①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대화 촉진, ② 정부·민간·지자체 간 긴밀한 정책소통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재개 및 활성화 도모, ③ 이산가족, 남북자 문제 등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④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통합 노력 병행 등을 2019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 및 판문점견학 통합 운영 사업은 우리측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므로 향후 통일부는 사업추진 방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호지원 사업의 대북 쌀지원 사업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이월의 문제가 있었고, 이산가족교류 지원 사업은 사업추진 여건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고 북한측과의 사전협의를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지원물품을 구매하여 전달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으며, 남북공동 유해발굴 사업을 통하여 구매한 대북 지원물품의 소요가 불명확해진 상황에서 그 사후처리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통일부는 향후 대북지원 사업 추진 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은 거점 대학에서 개발된 통일교육모델의 주변 대학으로의 보급·확산이라는 사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은 사회적 대화의 긴밀한 상호연계성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체계를 개선하여 사업의 결과물인 사회적 합의(안)의 정당성과 예산 집행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을 통한 신규 내역사업 추진의 문제

가. 현 황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사업¹⁾을 추진하고 있다.²⁾ 2019년도에 통일부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내역사업에 편성된 계획액을 일부 조정하여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과 판문점견학 통합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다.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은 계획현액 31억 9,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으며, 판문점견학 통합 운영 사업은 계획현액 11억 4,200만원 중 5,2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6,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DMZ 평화의 길 조성 및 판문점견학 통합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10,990	10,990	90	11,080	3,571	1,046	6,463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10,640	9,498	0	9,498	3,190	0	6,308
DMZ 평화의 길 조성	0	3,190	0	3,190	3,190	0	0
판문점견학 통합 운영	0	1,142	0	1,142	52	969	121

자료: 통일부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남북협력기금 3040-405

2) 2020년부터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사업은 DMZ 평화적 이용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기능별 편제도 개편되었다.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은 정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내역사업 공사비 30억 9,000만원(전액)과 건설보상비 20억원 중 1억원 등 31억 9,000만원을 조정하여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고성군에 16억 400만원, 철원군에 4억 3,000만원, 파주시에 11억 5,6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통일부는 동 사업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문점견학 통합 운영 사업은 정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신규 내역 사업으로 신설되었는데,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편성된 계획액 11억 4,200만원을 조정하여 추진되었다.

통일부는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과 관문점견학 통합 운영 사업의 추진 배경을 ‘관문점선언’(2018.4.27.)에서 관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에 합의하였고, ‘관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2018.9.19.)에서 지뢰제거, GP 철수 등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실질조치, 공동경비구역 자유관광 허용 등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 분석의견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 및 관문점견학 통합 운영 사업은 우리측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므로 향후 통일부는 사업추진 방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의 2019년도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과 관문점견학 통합 운영 사업은 집행연도 들어 사업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성이나 재원 분담 등에 관한 협의를 이루어지거나 사업추진 방침이 정해지는 과정을 거쳐 정부의 기금운용 계획 변경을 통하여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다만, 이와 같이 우리측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의 취지와 사업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내역 및 소요 재원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 그에 대한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통일부는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은 DMZ 세계평화공

원 조성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사업추진 방침이 결정되어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신규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신규 사업인 ‘DMZ 통일을 여는 길 조성’ 사업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리아둘레길’ 사업에 기반한 도보여행길 조성, 노선조사 및 브랜드 구축 등 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DMZ 내 테마노선 구간의 조성 재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추진되었다.³⁾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DMZ 평화의 길 조성		
주요내용	- DMZ 인근 도보여행길(인천 강화~강원 고성 접경지역 10개 시·군 경유) 조성 ※ 폐교, 마을회관 등 리모델링으로 거점센터 조성, 안전시설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해설안내 및 차량임차 등		
사업기간	- 2019~2022년 ※ 통일부 사업은 2019년으로 종료되고, 추후 예정 없음		
추진경과	- 2016.6월, 문화체육관광부, 코리아둘레길 구축계획 발표, 2017년부터 노선조사 - 2018.12월, 행정안전부, DMZ 통일을 여는 길(가칭) 조성 추진계획 발표 - 2019.1~4월, 관계부처 협의 - 2019.4.24., 사업명칭(DMZ 평화의 길) 확정 및 5개 부처 MOU 체결 ※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재원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관광진흥개발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DMZ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접경권 발전지원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코리아둘레길)
사업내용	- DMZ 내 테마노선 조성(철원, 고성, 파주)	- 접경권 지역 도보 여행길(약 500km)	- 테마노선 노선조사 및 브랜드 구축

3) 행정안전부의 ‘DMZ 통일을 여는 길 조성’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리아둘레길’ 사업은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국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파악된다.

(단위: 백만원)

구분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 3개 지자체 보조 (보조율 100%)	정비 및 거점센터 신설 - 10개 지자체 보조 (보조율 70%)	(철원, 고성, 파주) - 3개 지자체 보조 (보조율 50%) - 한국관광공사 보조 (보조율 100%)
2019년도 예산액	3,190	2,000	2,870

주: 통일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외에 환경부는 생태·환경조사 업무, 국방부는 DMZ 내 안전관리 업무 분장

자료: 통일부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판문점견학 통합 운영 사업도 집행연도 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신규 내역사업으로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추진 경위가 유사하다.

[판문점견학 통합 운영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판문점 견학 운영을 통일부로 통합
사업기간	- 2019~2020년(견학통합운영 인프라 구축)
추진경과	- 2019.5.1., 판문점 견학 재개 - 2019.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방안 확정 후 관련 부처 후속조치 논의
2019년 집행실적	- 견학지원센터 리모델링, 홈페이지 구축, 견학버스 임차 등 11억 4,200만원 조정 편성 ※ 5,200만원 집행, 9억 6,900만원 이월, 1억 2,100만원 불용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판문점견학 통합 운영 사업은 하반기인 10월에 방침이 결정되고 연도말인 12월에야 사업이 착수되어 계획액 대부분이 이월되었는 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불명확하다.⁴⁾

아울러, 정부의 DMZ 관련 사업이 생태·평화·안보를 테마로 하는 관광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우리측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의 범위⁵⁾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용도⁶⁾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확정된 범위 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DMZ 통일을 여는 길’ 조성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리아들레길’ 사업은 관광 자원 개발·활용을 통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 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된 배경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고, 판문점견학 통합운영 사업은 우리 국민과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판문점견학 프로그램 운영체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회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된다.

4) 통일부는 판문점 일대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사업추진 방침이 확정되고 유엔사령부 등 관계기관 협조가 가능한 시기에 맞추어 관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 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6)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4.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5.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填)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7.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종합계획을 기수립한 상태이나 북한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2018년도까지 사업 구상 구체화를 연구용역 외 집행실적이 없는 가운데 매년 남북 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 명목으로 재원이 편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DMZ 관련 사업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예비적인 예산 편성과 정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규 내역사업 추진이 반복될 개연성이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획 현액	집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구상구체화	1,208	533	263	60	200	0	200	0	100	0
공원기반 조성	61,700	0	29,800	0	9,800	0	9,800	0	9,498	3,190
계	62,908	533	30,063	60	10,000	0	10,000	0	9,598	3,19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통일부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의 추진 방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1.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이월의 문제 등

가. 현 황

구호지원 사업¹⁾은 북한지역의 자연재해 및 전염병, 식량난 등 인도적 위기상황 발생 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하여 북한주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기본적 생존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사업이다.

2019년도 계획현액은 815억 3,900만원으로, 137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272억 6,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04억 9,700만원은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구호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구호지원	81,539	81,539	0	81,539	13,782	27,260	40,497
민간경상보조	81,539	67,049	0	67,049	0	27,260	39,789
해외경상이전	0	14,490	0	14,490	13,782	0	708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19년도에 북한 식량난에 대한 국제기구의 조사보고서와 식량 공여 요청을 계기로²⁾ 북한 120개 시·군 취약계층 총 212만명 지원을 목표로 WFP(World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남북협력기금 2141-401

2) FAO/WFP의 북한식량 긴급조사 결과 발표(2019.5.3.): 2018/2019 양곡년도 곡물 생산량은 4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하여 2008/09 양곡년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강수량 부족으로 오는 6월 수확기 춘곡 생산 전망도 부정적인 바, 상업적 수입량 20만 톤, 외부 원조량(예정 포함) 2.1만 톤 고려 시 136만 톤 식량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북한 식량 불안정 상황이 심각하며, 춘곡기 악화가 예상되는바 식량 부족 완화를 위한 인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Food Programme, 유엔세계식량계획)³⁾를 통한 5만톤의 대북 쌀지원 사업⁴⁾을 추진하였으나, 북한측의 수용 거부로 중단되었다.

나. 분석의견

대북 쌀지원 사업(구호지원)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이월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2019년 대북 쌀지원 사업의 확정적 종료 시 WFP와의 사업관리비 회수를 위한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대북 쌀지원 사업(구호지원)에 책정된 남북협력기금은 쌀 구매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670억 4,900만원과 WFP의 사업관리비 지원을 위한 해외경상이전비 144억 9,000만원⁵⁾ 등 총 815억 3,900만원이다.

동 사업은 우리측이 대북 지원을 위한 쌀을 구매하고 WFP가 선박을 이용하여 북한으로 쌀을 운송하여 현지에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2019회계연도 대북 쌀지원 사업(구호지원)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집행현황			
		계획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민간경상보조	쌀 구매, 국내 운송 등	67,049	0	27,260	39,789
해외경상이전	WFP의 북한으로의 쌀 운송(선박), 북한 현지에서의 배분 등에 소요 되는 제반 경비 지원	14,490	13,782	0	708
합 계		81,539	13,782	27,260	40,497

주: 계획액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기준

자료: 통일부

3) WFP는 1960년 설립된 UN(국제연합) 산하 식량원조기구이다.

4) 임신·수유 중 여성, 영유아 등 기존 WFP 영양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을 확대(60개 시·군 → 120개 시·군)하고, 영양강화식품과 함께 우리 정부가 공여한 쌀을 지원하는 한편, 대가족·여성세대주·장애인 포함 가족 등 취약계층과 취로사업 참여 북한 주민에게 우리 정부가 공여한 쌀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부터 조정하여 편성하였다.

2019. 7.12. WFP의 사업관리비 지원을 위한 해외경상이전비 137억 8,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추진과정에서 북한의 수령거부 입장이 확인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교부되지 못하였다. 2019년말 통일부는 쌀 구매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을 사고이월하기로 결정하였다.

[대북 쌀지원 사업(구호지원) 추진 경과]

일자	주요내용
2019. 5. 3.	북한 식량난에 대한 FAO/WFP 조사 결과에 따라 WFP가 국제사회에 식량 공여 요청
2019. 6.19.	통일부장관 국제기구(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 추진계획 발표
2019. 6.28.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북 식량지원 기금지원안 의결 ※ 통일부-WFP 업무협약 체결 등 후속조치 진행
2019.7월	북한-WFP 실무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쌀 지원 수령거부 입장 인지 ※ 쌀 구매, 선박 확보 등 예산이 수반되는 준비 절차 중단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러나, 쌀 지원에 대한 북한의 수령거부 입장이 2019.7월 확인된 이후 연도말까지 이같은 입장이 계속 견지되고 특별한 변동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사업 추진에 중대한 장애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2019년도 대북 쌀지원 사업은 종료를 전제로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WFP에 기지급한 사업관리비의 회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판단된다.

예산의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해당연도에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 지출원인행위 등 일정한 요건 하에 다음 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나, 사업의 집행가능성 등 사업추진 여건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2019년도 대북 쌀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연도로의 예산 이월이 불가피한 지출원인행위 등 구속력 있는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⁶⁾

6) 통일부의 설명과 같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동 사업의 지출원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계약 체결과 같은 구속력을 수반하는 행위가 아니고, 사업추진의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이월의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통일부가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구호지원 사업의 대북 쌀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10만톤 608억 3,900만원 대비 2배에 해당하는 20만톤 1,236억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제출하고 국회에서 확정되어 필요시 이를 활용한 대북 식량지원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상황에서 북한측의 수용 거부로 중단된 쌀 지원 사업 예산의 이월을 통한 재원 확보의 필요성도 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통일부는 향후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취지를 고려하여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향후 동 사업이 확정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WFP에 기지급한 사업관리비를 회수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통일부는 WFP가 사업관리비 대부분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로 사업의 확정적 종료 시 기지급한 사업관리비를 회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WFP와 맺은 업무협약에 사업관리비 회수의 조건, 범위 및 기준 등에 사항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관리비 회수 협의를 위한 대응방안 강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 사업추진 여건의 면밀한 검토 등 사업추진 체계 개선 필요

가. 현 황

이산가족교류 지원 사업¹⁾은 당국 및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 사업을 추진·지원하여 이산의 고통을 해소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려는 사업이다.

통일부는 2019년도에 동 사업을 통하여 이산가족 화상상봉시스템 및 화상상봉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19년도 계획현액 48억원 중 27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이산가족 화상상봉시스템 및 화상상봉장 설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이산가족교류지원	39,510	39,510	0	39,510	4,443	260	34,807
이산가족 화상상봉 시스템 및 화상상봉장 설치	4,800	4,800	0	4,800	2,779	260	1,761

자료: 통일부

「평양공동선언」(2018.9.19.)에 따라 이산가족면회소 복구 및 개소,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에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는 2019년도 계획액을 전년도 119억 8,500만원에서 336억 4,300만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화상상봉 사업 관련 재원으로 58억 6,700만원 증액을 의결한 바 있다.

나. 분석의견

통일부는 향후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추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북한측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구체화된 사업 소요와 시행 방안에 따라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남북협력기금 2140-403

2019년도 이산가족 화상상봉시스템 구축 및 화상상봉장 설치 사업은 우리측의 화상상봉 중앙운영실 및 전국 13개 화상상봉장을 개보수하고, 북한측에 화상상봉 사업 추진에 필요한 물품(TV, 영상단말기, 조명설비 등 화상상봉 장비)을 구매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에 수반되는 UN 대북제재 및 미국 단독제재 저촉 문제 해소를 위하여 정부는 2019년 3월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를 위한 카메라, 모니터 등 물자의 북한 반출과 관련한 UN 대북제재 예외 승인, 미국의 독자제재 면제 조치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였다. 통일부는 이후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2019년 4월 TV, 영상단말기, 조명설비 등 대북지원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4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다.²⁾

[이산가족 화상상봉 대북지원 관련 사업 추진 경과]

(단위: 백만원)

일자	주요내용
2019. 3. 8.	-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와 관련한 물자 및 장비 북한 반출에 관한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
2019. 3.14.	-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와 관련한 물자 및 장비 북한 반출에 관한 미국 독자제재 면제 합의
2019. 3.21.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과 관련한 남북협력 기금 집행 의결
2019. 4월	-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를 위한 대북지원 물품 구매 - 국내 화상상봉장 13개소(서울 5개, 인천, 수원, 춘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개보수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통일부는 2019년 4월 당시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를 위한 대북 지원물품에 대한 구매절차가 완료된 후, 동 지원물품의 전달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북한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북한측과의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 등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매한 지원물품이 북한측에 전달되지 못하였으며 2020년 6월말 현재 보관 중에 있는 상황이다.

2) 통일부는 향후 북측과의 협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체 품목 및 항목별 구매 비용 등 상세 구매내역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원물품에 대한 북한측의 수령의사, 지원물품의 수요와 전달 시기 및 방법 등 구체화되어야 할 사업 소요와 시행 방안에 관한 북한측과의 사전협의를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 추진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와 관련한 화상상봉 장비 지원 등 사업이 추진되었던 당시는 북미 간 ‘하노이회담’(2019.2.27.~2.28.) 결렬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어 사업추진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였다.

통일부는 향후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추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북한측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구체화된 사업 소요와 시행 방안에 따라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3. 사업추진 여건의 변동으로 소요가 불명확해진 대북 지원물품 사후처리 문제

가. 현 황

남북공동 유해발굴 지원 사업¹⁾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도 계획현액은 7억 3,500만원으로, 5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남북공동 유해발굴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남북공동 유해발굴 지원	0	0	735	735	503	0	232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남북공동 유해발굴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한 대북지원 물품은 사업추진 여건의 변동으로 소요가 불명확해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통일부는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자체 활용 등 사후처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남북공동 유해발굴 지원 사업은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당초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평양공동선언(2018.9.19.)의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북한측의 지원 요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신설되었다.

남북공동 유해발굴 사업 계획액 7억 3,500만원은 지뢰제거용 장비와 도로 개설용 장비로 지뢰탐지기, 굴삭기, 지뢰보호복을 구매하여 북한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동 협회가 장비를 구매하여 반출할 계획이었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남북협력기금 2142-400

그러나,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 등에 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계획액 전액이 2019년도로 이월되었다.

[남북공동 유해발굴 지원 사업 추진 경과]

일 자	내 용
2018.10.12.	o 통일부, 국방부를 통해 유해발굴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북한측 요청 접수
2018.11.21.	o 제29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공동 유해발굴 자재장비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심의·의결
2018.12.14.	o 통일부, 기획재정부장관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 요청
2018.12.27.	o 기획재정부장관 기금운용계획 변경 협의 승인
-	o 남북공동 유해발굴 소요경비(7억 3,500만원) 전액 다음연도 이월
2019. 1월(중순)	o 외교부,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 신청
2019. 1.23.	o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 결정

자료: 통일부 및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2018년도에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 경우 등에 필요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집행(교부)되지 못하고 2019년도로 이월된 민간경상보조금 7억 3,500만원 중 5억 300만원은 1월 23일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 결정 직후 남북교류지원협회에 교부되었으며, 동 협회는 지원물품을 구매하였다.

[남북교류지원협회 남북공동 유해발굴 지원 사업 실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금액	구매일자
지뢰탐지장비	15대	94	2019.1.31.
굴삭기	5대	298	2019.2. 1.
방호복	40세트	105	2019.2.27.
부대비	조달수수료 등	6	-
합계		503	-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그러나,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우리측이 제기한 군 사회담 제안에 대하여 북한측의 응답이 없어 수송비 등 2억 3,2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고, 기구매한 지뢰탐지장비 등 지원 물품은 북한측에 전달되지 못한 채 2020년 6월말 현재 보관 중에 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합의사항에 따르면,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 및 지뢰·폭발물 제거, 공동유해발굴지역 내 도로개설,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및 운영(발굴작업)의 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각 사업 단계별 추진일정이 제시되어 있다.

[시범적 남북공동 유해발굴 사업 단계별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공동유해발굴지역의 지뢰 및 폭발물 제거	2018.10. 1. ~ 2018.11.30.
공동유해발굴지역 내 남북도로 개설	2018.12.31.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및 상호통보	2019.2월말까지
공동유해발굴 진행	2019. 4. 1. ~ 2019.10.31.

자료: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합의사항에 따른 사업기간이 2019.10.31.로 만료되고, 사업 재추진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뢰탐지장비, 굴삭기, 방호복 등 기구매한 대북지원 물품은 그 소요가 불명확해진 상황으로 판단되는 바, 장기 보관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 등 비효율이 우려되므로 통일부는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지원물품의 자체 활용 등 사후처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은 대학 통일교육모델 개발 및 보급·확산을 목적으로 학교통일교육 강화¹⁾ 사업의 대학통일교육 활성화 내역사업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현액은 24억원이며, 전액 집행되었다.

[2019회계연도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학교통일교육 강화	6,758	6,758	0	0	6,758	6,664	0	94
대학통일교육 활성화	3,397	3,397	0	0	3,397	3,370	0	27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2,400	2,400	0	0	2,400	2,400	0	0

자료: 통일부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은 2016년도부터 추진되었으며, 4년 단위(2년 + 중간평가 후 2년)로 진행된다. 2016년 서울대, 숭실대, 아주대, 충남대, 경남대, 광주교대 등 6개 대학을 1차 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하여 201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에 인제대, 강원대, 한동대를 추가 선정하였다. 2019년 1차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0년 2월 2차 사업 대상 대학으로 숭실대(재진입), 경기대, 대전대, 전북대, 충북대,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을 선정하여 2020년 6월말 현재 통일교육 선도대학은 총 9개 대학이 지정되어 있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명: 일반회계 5031-308

나. 분석의견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은 거점 대학에서 개발된 통일교육모델의 주변 대학으로의 보급·확산이라는 사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은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채택·도입할 수 있는 통일교육모델을 개발하여 주변 대학으로 보급·확산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차 사업에 참여한 6개 통일교육 선도대학은 통일교육모델의 보급·확산 차원에서 다양한 대외적 사업을 추진하였다.

[통일교육 선도대학(1차) 통일교육모델 및 보급·확산 실적(2016~2019년)]

대학명	통일교육모델	보급·확산 실적
서울대학교	○ 서울대 모델 - 융복합적 통일학 - 국제적 역량강화 - 현장답사 연계형 - 통일교육의 확장 (통일평화학)	○ 서울대-강원대-인천대 평화통일교육 관련 협력 MOU 체결(2018) ○ 서울대-강원대 통일교육모델 교류협력 워크숍(2018) ○ 황해평화학교 운영(2018): 서울대, 인천대, 숙명여대 등 ○ 동해평화학교 운영(2019): 서울대, 강원대, 춘천교대, 조선대, 성신여대 등 ○ 한반도평화 국립대 네트워크(2019): 서울대-강원대-부산대-전북대-충남대 ○ 통일평화 아카데미 인큐베이팅(2019): 전북대, 부산대 ○ 아시아대학생 평화아카데미(2019): 서울대, 해외대학생 ○ 한-유럽 대학생 평화아카데미(2019): 서울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성공회대, 베를린자유대 등 8개 대학

대학명	통일교육모델	보급·확산 실적
송실대학교	○ 종합형 송실대모델 - (필수교육형) 모든 학생 교양 필수 - (학과중심형) 융합전공 개설 - (연구중심형) 송실통일평화 연구원 연구기능 강화 - (선택교육형) 각 전공별 통일 강좌 개설	○ 비선도대학 대상 신규 교과목 개발 공모 및 논문 지원 - 신규 교과목 개발: 16개 과목(서울교대, 차의과대, 덕성여대, 건국대, 숙명여대, 안양대, 단국대) - 통일 관련 논문지원: 37명(광운대, 중앙대, 인하대, 한국외대) ○ 비 선도대학과의 공동 토크콘서트: 9회 (가천대, 숙명여대, 삼육대, 단국대, 건국대, 우석대, 국민대, 성신여대, 안양대)
아주대학교	○ 이공계 중심 실사구시·사회 통합모델 - (교과) 통일트랙 - (비교과) 통일마라톤 * 통일트랙 : 12학점 이수시 졸업장에 통일트랙 표시	○ 말랑말랑 과학토크쇼 - 2018년: 아주대(2회), 한동대,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 2019년: 성균관대 수원 캠퍼스, 충남대, 한동대 ○ 지역 순회교육: 청춘콘서트, 한라대, 경북대 ○ 마음잇기(탈북주민들과 손편지 주고받기) - 2018년: 부천대, 한동대 - 2019년: 부천대
충남대학교	○ 통일시대 인재 양성 모델 - 체계성(교육과정) - 창의성(학과간 융복합) - 효과성(통일의식 제고)	○ 통일전문교육트랙 운영 - 2017년: 충남대 시범운영 - 2018년: 한남대, 공주교대, 대전대 - 2019년: 한남대, 광주교대, 대전대, 배재대, 충남대
경남대학교	○ 창의적이고 다양한 통일교육 모델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일교육	○ 영남권 대학 대상(교수 및 학생) 통일교육 컨설팅 실시 - 2018년: 부경대, 경상대, 마산대 - 2019년: 동의대, 신라대, 부경대
광주교육대학교	○ 교육대학교 통일교육 모델	○ 찾아가는 통일강연 - 2018년: 공주교대, 전주교대, 서울교대, 공주교대, 춘천교대(2회) - 2019년: 춘천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경인교대(5회), 진주교대 ○ 전국교대 통일수업 탐구대회 - 2019년: 공주교대, 경인교대, 서울교대, 제주대, 광주교대, 진주교대, 한국교원대 학생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만, 통일교육모델의 보급·확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외적 사업은 다른 비선도 대학이나 소속 학생을 참여 대상으로 하는 특강 형태의 강좌 진행, 워크숍이나 컨설팅, 교과목 개발 관련 공모 사업, 논문 지원, MOU 체결,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 개최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추진 실적은 통일교육 선도대학이 개발한 통일교육모델을 비선도 대학에서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 운용하는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선도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 채택·도입이라는 사업 목적과 괴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육 선도대학의 통일교육모델 보급·확산 사업의 대표적 유형으로 볼 수 있는 비선도대학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통일교육 선도대학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대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어²⁾ 비선도대학의 통일교육모델 채택·도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때,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은 당초 의도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일부는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가 실시한 “통일교육 선도대학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모색” 연구용역(2019.5.12.)에서도 통일교육 선도대학의 통일교육모델을 다른 대학에 일반화된 모델로 확산하는 것이 각 대학의 교수진, 학생, 학교의 여건, 지역별 차이와 각 학교의 성격 등이 다른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 사업 목적의 타당성에 대한 점검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통일부는 성과계획서 상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19년도 통일부의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면, 통일교육 추진 단위사업에 설정된 성과지표는 원내 통일교육 수료인원(명), 통일교육 실시횟수(건), 사이버통일교육 수료인원(명), 사이버통일교육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교육 실시횟수(건)은 학교 통일교육 실시횟수와 사회통일교육 실시횟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2) 충남대의 통일전문교육트랙의 한남대 사업의 경우 한남대가 주최하고 충남대가 주관하는 구조인데, 충남대가 한남대에 통일전문교육트랙 강좌 등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통일교육 추진 단위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원내 통일교육 수료 인원(명)	0.4	원내 통일교육 수료인원(통일정책최고위과정+통일정책지도자 과정+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원내 통일교육 수료인원 통계
통일교육 실시횟수(건)	0.4	통일교육 실시횟수(학교통일교육* 실시횟수+사회통일교육 실시횟수) * 대학생통일포럼·통일토론대회·통일한국모의국무회의·통일동아리지원, 통일리더캠프,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학교통일교육체험경비지원	학교통일교육 실시횟수 집계 및 지역 사회통일교육 실시횟수 집계
사이버통일교육 수료 인원(명)	0.1	2019년 과정별 사이버교육 수료인원(공무원과정+교원과정+학점인점과정)	사이버통일교육 수료인원 통계
사이버통일교육 만족도(%)	0.1	설문참여자(매우만족×5+만족×4+보통×3+미흡×2+매우미흡×1)/ (전체응답자×5)×100	사이버통일교육 만족도 평가

자료: 2019년도 성과계획서(통일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그런데, 통일교육 실시횟수 성과지표의 측정산식(방법)을 보면, 학교통일교육 실시횟수를 대학생통일포럼·통일토론대회·통일한국모의국무회의·통일동아리지원, 통일리더캠프,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학교통일교육체험경비지원 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진 교육 실시건수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있는 바,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평가요소는 지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액 규모는 24억원으로 학교통일교육 강화 사업 예산액 67억 5,800만원의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 규모로 볼 때, 학교통일교육 강화 사업의 각 내역사업을 구성하는 전체 사업항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이다.

통일부는 성과계획서 상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추진성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은 통일정책추진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 결과물로서 통일국민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7억 4,600만원이며, 7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통일정책추진	985	985	0	1,005	996	0	9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746	746	0	746	744	0	2

자료: 통일부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²⁾ 2018년도에는 사업체계 정비, 시범 사업 실시 등 사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 의견수렴, 평창올림픽 계기 2030 사회적 대화,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등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통일부와 민간기구의 협업 형태로 추진되는데, 2018.11.1. 민간기구인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국시민회의’의 발기인대회가, 2019.4.30. 동 단체의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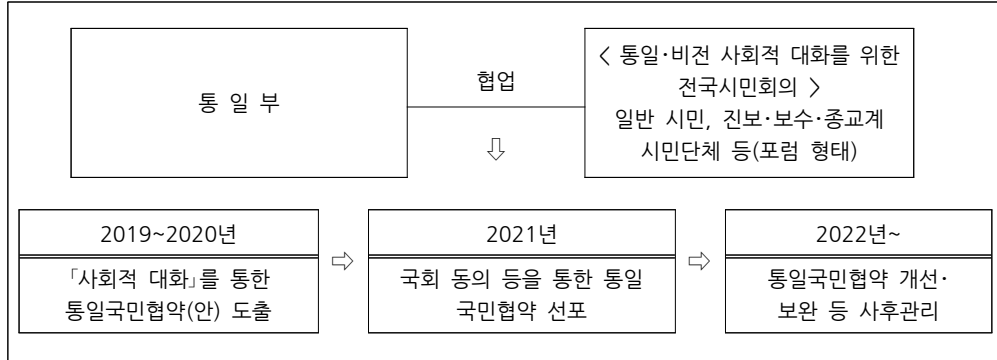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의 추진 로드맵을 살펴보면, 2019~2020년에는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본격 추진하여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하고 2021년도에 협약을 공포한 후 2022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하여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031-300

2) 당초 사업명은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사업이었으며, 2019년부터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구도]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은 사회적 대화의 긴밀한 상호 연계성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체계를 개선하여 사업의 결과물인 사회적 합의(안)의 정당성과 예산 집행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9년도에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의 사회적 대화 사업의 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총 30회의 사회적 대화가 개최되었는데, 권역 대화는 수도권 등 4개 권역별로 각 1회와 중합 대화 1회 등 5회 개최되었고, 지역 대화는 광역시·도 단위로 17회, 해외 대화는 시애틀과 LA에서 각 1회 개최되었으며, 서울에서는 별도로 서북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 등 4회에 걸쳐 서울시민 대화가 개최되었다. 그 밖에 대상별 사회적 대화로 고교생 대화 1차례, 세계한인회장 대화 1차례가 개최되었다.

[2019년 사회적 대화 추진 현황]

구분			일 시	인 원	논의의제
권역 대화	권역별 대화	호남권	6.1.	180명	한반도 미래상 / 평화체제와 비핵화 / 남남갈등 극복에 필요한 원칙
		충청권	6.15.	209명	한반도 미래상 / 인도적 지원의 조건 / 남남갈등 극복에 필요한 원칙
		영남권	6.29.	190명	한반도 미래상 / 평화체제와 비핵화 / 남남갈등 극복에 필요한 원칙
		수도권	7.6.	183명	한반도 미래상 / 인도적 지원의 조건 / 남남갈등 극복에 필요한 원칙
	종합대화	종합	10.26.~27.	150명	인도적 지원의 조건
지역 대화		부산	8.17.	60명	한반도 미래상 / 인도적 지원의 조건 / 평화·통일을 위한 원칙
		경기	8.24.	60명	한반도 미래상 / 평화체제와 비핵화 / 평화·통일을 위한 원칙
		경남	8.29.	60명	한반도 미래상 / 평화체제와 비핵화 / 평화·통일을 위한 원칙
		인천	8.29.	60명	한반도 미래상 / 인도적 지원의 조건 / 평화·통일을 위한 원칙
		강원	8.29.	60명	한반도 미래상 / 평화체제와 비핵화 / 평화·통일을 위한 원칙
		대전	8.30.	56명	한반도 미래상 / 평화체제와 비핵화 / 평화·통일을 위한 원칙
		울산	9.4.	90명	한반도 미래상 / 평화체제와 비핵화 / 평화·통일을 위한 원칙
		경북	9.7.	55명	한반도 미래상 / 평화체제와 비핵화 / 평화·통일을 위한 원칙
		서울	9.9.	68명	평화체제와 비핵화 / 인도적 지원의 조건 / 평화·통일을 위한 원칙
		제주	9.20.	70명	한반도 미래상 / 평화체제와 비핵화 / 평화·통일을 위한 원칙
		전북	9.24.	70명	평화체제와 비핵화 / 인도적 지원의 조건 / 평화·통일을 위한 원칙
		광주	9.29.	75명	한반도 미래상 / 평화·통일을 위한 원칙
		충남	9.30.	80명	한반도 미래상 / 평화체제와 비핵화 / 평화·통일을 위한 원칙
		대구	10.9.	70명	한반도 미래상 / 통일교육의 가치 / 평화·통일을 위한 원칙

구분		일 시	인 원	논의의제
	전남	10.11.	64명	한반도 미래상 / 평화체제와 비핵화 / 평화·통일을 위한 원칙
	세종	10.14.	57명	한반도 미래상 / 평화체제와 비핵화 / 평화·통일을 위한 원칙
	충북	10.18.	62명	한반도 미래상 / 평화·통일을 위한 원칙
해외 대화	시애틀	6.21.	72명	한반도 미래상 / 대북 인도적 지원의 조건
	LA	6.25.	95명	한반도 미래상 / 대북 인도적 지원의 조건
서울시민 대화	서북권	9.21.	137명	한반도 미래상 / 인도적 지원의 조건 / 2032서울-평양 하계올림픽과 남북 관계
	동남권	9.22.	192명	한반도 미래상 / 인도적 지원의 조건 / 2032서울-평양 하계올림픽과 남북 관계
	동북권	9.28.	207명	한반도 미래상 / 인도적 지원의 조건 / 2032서울-평양 하계올림픽과 남북 관계
	서남권	9.29.	203명	한반도 미래상 / 인도적 지원의 조건 / 2032서울-평양 하계올림픽과 남북 관계
고교생 대화	-	10.11.	110명	한반도 미래상(한반도 평화통일 체제)
세계한인회장 대화	-	10.4.	350명	한반도 미래상(한반도 평화통일 체제)

자료: 통일부

통일부에 따르면, 2019년에 6월초부터 7월초까지 표본추출로 선정된 국민 762명이 참여하여 4개 권역별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였고, 10.26.~27. 4개 권역별 대화 참여자 중 성별·연령·성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150여명이 참여하여 종합대화를 진행하여 사회적 대화 의제 중 하나인 인도지원 조건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2019년도 사회적 대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적 지원의 조건 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사회적 대화의 연계성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우선, 권역대화의 권역별 대화와 종합대화 간 참여자 연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지역대화 및 권역별 대화의 의제와 종합대화의 의제 간 연계성이 긴밀하지 않아 인도적 지원의 조건 의제에 관한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의 내용이나 결과가 종합대화로 수렴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의 추진일정을 보면, 지역대화나 서울시민 대화의 내용이나 결과가 권역별 대화로 연계될 수 없는 구조이며, 대북 인도지원 조건에 대한 합의안 마련을 위한 종합대화 진행에 있어 권역별 대화를 제외한 다른 사회적 대화의 내용이나 결과를 담은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참여자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시행되지 않았다.

국민들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하고 자료를 축적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수준에서 많은 횟수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이 의제별로 합의안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규범력을 갖고 통용될 것이 예정된 결과물로서 협약 등의 형태를 갖춘 사회적 합의(안)를 도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사회적 대화 간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의 온라인 소통채널인 통일국민협약 홈페이지의 콘텐츠 운영을 내실화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소통과 논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에는 국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온라인 소통채널로서 통일국민협약 홈페이지³⁾ 운영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에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2019년 운영 예산으로 관리용역비 1,6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하였으며, 2020년 6월말 현재 동 홈페이지는 국민제안, 국민토론, 국민활동, 통일국민협약으로 구분되어 각각 2~5개의 세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3) 홈페이지 주소: www.unikorea.go.kr/promise

[통일국민협약 홈페이지 구성]

국민제안	국민토론	국민활동	통일국민협약
통일정책	이슈토론	공지사항	소개
교류협력	자유토론	현장소식	자료실
남북대화	-	현장소통	캘린더
통일교육	-	이벤트	-
기타	-	-	-

주: 2020년 6월말 현재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런데, 동 홈페이지의 콘텐츠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7월 홈페이지 오픈 이후 2020년 6월말 현재까지 국민제안을 통해 제시된 제안 중 답변이 이루어진 제안 건은 없는 실정이며, 국민토론을 통하여 진행된 이슈토론은 1건, 자유토론은 7건 수준으로 운용 실적이 부진하다.

국민활동의 경우 공지사항과 현장소식을 통한 홍보 및 안내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일국민협약의 자료실은 통일국민협약에 대한 소개와 사회적 대화 의제 자료집 등 9종의 자료가 게시되어 있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의 핵심적 사업인 사회적 대화의 추진경과나 내용, 결과와 같은 자료는 시의성 있고 접근이 용이한 방식으로 일반 국민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는데, 2019년 사회적 대화 의제 중 하나인 대북 인도적 지원의 조건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었음에도 동 합의안 도출의 과정이나 결과, 합의안의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통일부는 통일국민협약 홈페이지의 콘텐츠 운영을 내실화하여 동 홈페이지가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의 온라인 소통채널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¹⁾은 북한인권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출연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현액 8억원이 전액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북한인권재단 운영	800	800	0	0	800	0	0	800
기관운영출연금	800	800	0	0	800	0	0	800

자료: 통일부

북한인권재단은 2016.3.3. 제정된 「북한인권법」(법률 제14070호, 2016.9.4. 시행) 제10조²⁾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통일부 산하 기관이다. 「북한인권법」 제12조는 재단 이사를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³⁾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2135-304

2) 「북한인권법」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분석의견

통일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3.3. 제정된 「북한인권법」 시행(법률 제14070호, 2016.9.4.)에 맞추어 출범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0년 6월말 현재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에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책무를 3년 이상 준수하지 못하고 유보적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법률 규정 미준수라는 형식적인 문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선,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실태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북한인권 관련 정책개발 및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및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단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동 재단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계획되었던 북한인권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세부내용
조사 및 연구	북한인권실태 등 실태·조사 연구(1,524) 조사연구 결과 점검 및 평가(101) 전문가 양성 및 연구지원(407) 조사연구DB 구축(382) 조사연구 결과물 제작(682) 등
정책개발 및 건의	정책대안 개발 및 건의(313) 정책공감대 형성 및 인식개선(293) 등
시민사회단체 지원 및 협력	지원체계 및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201)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1,899) 시민사회단체 역량 강화(262)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25) 등

주: 2018년도 예산안사업설명자료의 사업출연금 내역 기준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3)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지연은 예산 운용 상의 비효율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북한인권재단 운용 사업에 편성된 재단출연금(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 예산은 매년 전액 불용되고 있다.

[2016~2019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결산(재단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아·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6	0	0	0	4,676	4,676	0	0	4,676
2017	11,755	11,755	0	0	11,755	0	0	11,755
2018	10,858	10,858	0	0	10,858	0	0	10,858
2019	800	800	0	0	800	0	0	800

자료: 통일부

또한, 재단 설립 지연에 따라 재단 사무실 마련 및 유지를 위하여 집행한 예산과 관련하여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 바 있는데, 사무실 공사비와 미사용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관리비와 그 연체료,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물품이전비·원상복구비와 위약금을 재단출연금 외로 예산 전용 등을 통하여 충당하거나 별도로 편성하여 집행하였는 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4억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⁴⁾

4)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2016.9.4.) 직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2016년 9월 서울시 마포구 소재 재단 사무실을 마련하였으나, 재단 설립의 지연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의 임차료 및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자 2018년 6월 5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바 있다.

[북한인권재단 임대사무실 관련 비용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집행내역	집행액
2016년	임대료·관리비(2016.9~12월)	189
	사무실 공사	422
	사무기기 등	335
	인건비 등	91
	소계	1,037
2017년	임대료(2017.1~6월)	248
	관리비(2017.1~5월)	108
	연체료(2017.1.1.~12.15.)	47
	소계	403
2018년	임대료(2017.7~12월)	207
	관리비(2017.6~12월)	150
	연체료(2017.12.16.~2018.6.30.)	47
	물품이전 및 원상복구비	128
	소계	532
2019년	임대료(2018.1~6월)	248
	관리비(2018.1~6월)	129
	연체료(2018.7월~2019.1월)	39
	계약해지 위약금	83
	소계	499
합계		2,471

자료: 통일부

2019년부터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의 재단출연금 예산은 재단 출범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경비 수준으로 감액되어 불용예산의 규모도 축소되었으나,⁵⁾ 재단 설립이 지연될 경우 예산의 불용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비적 예산 편성과 불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통일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5) 2019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출연금 예산은 2018년 108억 5,800만원 대비 대폭 감액된 8억원의 기관운영출연금이 편성되었으며, 2020년도의 경우 5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가. 현 황

해외 통일·통합사례 조사 사업은 국제통일기반 조성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억 4,400만원이며, 5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해외 통일·통합사례 조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제통일기반 조성	1,622	1,622	0	0	1,622	1,536	0	86
해외 통일·통합사례 조사	624	624	0	△80	544	517	0	27

자료: 통일부

2019년도 해외 통일·통합사례 조사 사업의 세부 사업 항목은 해외 통일·통합사례 조사 및 총서 발간,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로 제시되어 있다.

나. 분석의견

국제통일기반 조성 사업의 해외 통일·통합사례 관련 정책연구용역은 사업의 취지와 구체화된 추진계획에 대한 국회의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2019년도에 국제통일기반 조성 사업에서 해외 통일·통합사례 조사 내역사업의 해외 통일·통합사례 조사 및 총서 발간에 책정된 일반연구비 예산 3억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031-302

1,900만원 중 2억 3,900만원을 정책연구비로 세목 변경하여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였고, 8,000만원을 한미위킹그룹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전용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도에 국제통일기반 조성 사업의 해외 통일·통합사례 조사 일반연구비 예산 3억 1,900만원은 전액 조정 집행되었다.

[2019년도 해외 통일·통합사례 조사 사업 일반연구비 예산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예산조정 사유
	내역사업명	목-세목 코드		내역사업명	목-세목 코드	
전용		일반연구비 (260-01)	80	평화통일전략 대화	국외여비 (220-02)	한미위킹그룹 추진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충당
세목 변경	해외 통일· 통합사례 조사	일반연구비 (260-01)	239	해외 통일· 통합사례 조사	정책연구비 (260-02)	독일통일 총서 발간 완료에 따라 후속사업으로 해외통일통합사례 연구비 충당

자료: 통일부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에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은 국회의 사전 심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통일부는 그동안 추진하여 온 독일통일 총서 발간 사업이 2018년말 종료됨에 따라 2019년도에 해외 통일·통합사례와 관련하여 ‘남북한 통일과정에 대비한 해외 통합사례 심화연구(EU 유럽연합의 제도적 장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국가연합 등 사례를 통한 남북한 통일과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등 2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²⁾ 독일통일 총서 발간 사업 종료 이후 유럽연합 등 다른 통합 사례에 대한 조사연구를 계속 추진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2018년말까지 주요 문서의 이관과 번역·해제 작업이 완료되고, 2019년 3월 독일통일 총서 28~30권(사법제도, 연방 수상청, 연방주 구축)이 발간됨으로써 독일통일 총서 발간 사업은 종료되었다.

[2019년도 해외 통일·통합사례 조사 사업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집행액	계약기간	수행기관	공개여부	계약방법
남북한 통일과정에 대비한 해외 통합사례 심화연구 (EU 유럽연합의 제도적 장치를 중심으로)	139	2019.4월 ~11월	북한대학원 대학교 산학협력단	비공개	경쟁
다양한 스펙트럼의 국가 연합 등 사례를 통한 남북한 통일과정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81	2019.6월 ~12월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비공개	경쟁→ 수의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다만, 국제통일기반 조성 사업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산, 북한문제 인식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동 사업의 해외 통일·통합사례 조사를 통하여 추진되어 온 독일통일 총서 발간 사업은 이같은 국제통일기반 조성 사업의 취지에 따라 한독 간 통일협력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볼 수 있다.³⁾

그런데, 2019년도에 추진한 정책연구용역은 정책개발 및 수립에 참고할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에 연구과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한 사업으로 그 목적이나 추진체계가 이와 상이한 측면이 있다. 또한, 정책연구개발(R&D) 사업⁴⁾을 통한 연구 수행도 고려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였으나,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취지와 구체화된 추진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독일통일 총서 발간은 독일정부 문서사본 이관(자료 주제목록 작성→독일정부 협조→독일 문서보관서 열람 및 복사→이관)→한글 번역 및 해제→‘총서’ 책자 형태 발간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문서 이관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한 동 사업의 수요 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어 해당 사업 종료 후 후속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3) 통일부에 따르면, 2010.2월 쾰러 독일 대통령 방안을 계기로 2010.10월 한국과 독일 정부 간 통일 및 통합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이를 근거로 독일통일 문서 이관이 추진되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독일통일 총서 발간은 국내외 전문가 39명이 집필에 참여해 왔다.

4) 코드: 일반회계 7031-300

통일부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사전 심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정책연구개발(R&D) 사업¹⁾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연구소 등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정책개발과 관련한 조사·분석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용역 사업이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3억 9,000만원으로, 3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정책연구개발(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책연구개발(R&D)	390	390	0	0	390	385	0	5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2019년도에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하여 추진한 일부 연구과제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통일부는 향후 동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연구과제 선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2019년도에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하여 “탈북민 제3국 출생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자녀 교육자료 개발”, “탈북민용 인권교육교재 개발”, “남북 화해 협력시대에 맞는 평화적 관점의 통일교육 방향연구(부제: 한반도 평화의 이해)” 등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7031-300

[정책연구개발(R&D) 사업 교육자료 개발 관련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수행내용	집행액	수행기관	수행기간	계약방식
탈북민 제3국 출생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자녀 교육자료 개발	- 아이와 함께 떠나는 성장여행 미니북(영유아 자녀 및 초등학생 자녀) - 아이와 함께 떠나는 성장여행 설명서(영유아 자녀 및 초등학생 자녀)	1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9.5. ~'19.8.	수의
탈북민용 인권 교육교재 개발	인권의 이해,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체계,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법 등에 관한 교육자료	15	북한인권 정보센터	'19.6. ~'19.10.	수의
남북 화해 협력 시대에 맞는 평화적 관점의 통일교육 방향 연구 (부제: 한반도 평화의 이해)	일반인, 대학생, 통일교육 강사 등의 평화통일 교육 에 참고도서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통일교육에 평화교육 내용을 보완한 교재	5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19.3. ~'19.8.	수의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은 통일 및 대북 정책의 개발과 수립에 활용할 자료를 생산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조사·분석 및 연구 사업이다.²⁾

“탈북민 제3국 출생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자녀 교육자료 개발”, “탈북민용 인권교육교재 개발”, “남북 화해 협력시대에 맞는 평화적 관점의 통일교육 방향연구(부제: 한반도 평화의 이해)” 연구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식 기반의 조사연구 업무가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같은 교육자료나 교재의 개발은 연구과제의 성격, 연구용역 산출물의 내용 및 활용 방식 등 제반 요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통일부는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향후 동 사업을 통하여 수행할 연구과제의 선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용역비는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연구비(260-01)와 정책연구비(260-02)로 구분되어 전자는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 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으로, 후자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의 연구용역비는 전액 정책연구비(260-02)로 편성되어 있다.

가. 현 황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비대상)¹⁾는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와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16억 8,000만원으로, 16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비대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1,565	1,565	10	105	1,680	1,634	44	2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비대상)는 예산 조정을 통한 예산현액 증액과 초과 집행이 상당 기간 반복되고 있으므로 통일부는 동 사업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비대상)는 2019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104.4%(다음연도 이월액 포함 시 107.2%)로 초과 집행이 발생하였다.

통일부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비대상)의 초과 집행은 2018년도에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가²⁾ 2019년도에 다시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발생하였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7011-250

[2010~2019회계연도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비대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0	1,168	1,168	0	153	1,321	1,296	111.0	98.1	0	25
2011	1,224	1,224	0	170	1,394	1,379	112.6	98.9	11	4
2012	1,423	1,423	11	73	1,507	1,497	105.2	99.3	0	10
2013	1,434	1,434	0	411	1,845	1,745	121.6	94.5	0	100
2014	1,619	1,619	0	75	1,694	1,658	102.4	97.9	0	36
2015	1,650	1,650	0	94	1,744	1,724	104.4	98.9	0	20
2016	1,594	1,594	0	158	1,752	1,749	109.7	99.8	1	2
2017	1,550	1,550	1	186	1,737	1,725	111.3	99.3	8	4
2018	1,529	1,529	0	16	1,545	1,514	99.0	98.0	10	21
2019	1,565	1,565	10	105	1,680	1,634	104.4	97.3	44	2

자료: 통일부

기관 운영에 있어 예상치 못한 소요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통일부의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비대상)는 예산 조정을 통한 예산현액 증액과 초과 집행이 상당 기간 반복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예산액 대비 초과 집행이 발생하고 있는 바, 통일부의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비대상)는 당초 편성된 예산액 규모에 따른 제약 없이 운영되는 집행 행태가 관행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일부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비대상)의 예산현액 증액과 초과집행은 실국별·소속기관 기본경비와의 빈번한 예산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19년도에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운용과 관련하여 실국별·소속기관 기본경비로부터 이루어진 예산조정 건수는 비목 기준으로 25건에 이르는 바, 기본경비 간 융통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2) 2018년도에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비대상)의 집행액이 예산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조정을 통한 예산액 대비 예산현액 증액이 있었다.

[2019회계연도 다른 기본경비의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비대상)로의 예산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조정 현황	금액
전용	하나원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유류비(210-08) 등 12건	53
내역변경	통일정책실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일반수용비(210-01) 등 13건	66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실국별·소속기관 기본경비와의 빈번한 예산조정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은 각 실국 조직 및 소속기관의 운영과 기본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통일부는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비대상)를 예산액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통일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수요를 고려한 사업 집행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21
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집행 강화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00만원이며, 1,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2019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	5	5	17	17	0	0	10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9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15억 8,000만원이며, 이 중 95.0%인 299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2,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1,580	31,580	31,580	29,999	760	821	95.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나.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산은 259억 1,400만원, 부채는 전년도 기타의 미지급금 56만원을 지급 완료하여 없으며, 순자산은 259억 1,400만원이다.

자산은 일반유형자산 248억 9,100만원, 무형자산 10억 2,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6억 2,000만원(27.7%) 증가하였다. 이는 자산재평가로 인한 토지 52억 7,8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유형자산 56억 2,000만원 증가 및 기타무형자산의 신규 취득과 감가상각으로 인한 무형자산 1백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기타미지급금 56만원을 지급 완료함에 따라 전년대비 56만원 감소하여 없다.

[2019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5,914	20,294	5,620	27.7
Ⅰ. 유동자산	0	1	△1	△100.0
Ⅱ. 투자자산	0	0	0	0.0
Ⅲ. 일반유형자산	24,891	19,271	5,620	29.2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1,022	1,023	△1	△0.1
Ⅵ. 기타비유동자산	0	0	0	0.0
부 채	0	1	△1	△5.8
Ⅰ. 유동부채	0	1	△1	△100.0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0
Ⅲ. 장기충당부채	0	0	0	0.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0
순 자 산	25,914	20,294	5,620	27.7
Ⅰ. 기본순자산	12,238	12,238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67	△409	342	83.6
Ⅲ. 순자산 조정	13,743	8,465	5,278	62.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05억 7,5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305억 9,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1,7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9억 2,800만원(3.1%) 증가한 305억 7,500만원이며, 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고유사업 예산증액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운영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9억 4,1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운영 단일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비로 집계된 금액은 없으며, 비배분수익은 기관 국고보조금 통장 이자 300만원, 급여환수금 200만원 및 자산매각대금 1,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0,592	29,651	941	3.2
가. 프로그램 총원가	30,592	29,651	941	3.2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0
II. 관리운영비	0	0	0	0.0
III. 비배분비용	0	0	0	0.0
IV. 비배분수익	17	4	13	325.0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30,575	29,647	928	3.1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VII. 재정운영결과(V-VI)	30,575	29,647	928	3.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202억 9,4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59억 1,400만원으로 기초 대비 56억 2,000만원(27.7%) 증가했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305억 7,5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309억 1,700만원, 자산재평가 이익이 조정항목으로 52억 7,800만원이 더해져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채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기타채원조달 등 채원의 조달 309억 3,4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채원의 이전 1,7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20,294	19,339	955	4.9
II. 재정부운영결과	30,575	29,647	928	3.1
III. 채원의 조달 및 이전	30,917	30,602	315	1.0
IV. 조정항목	5,278	0	5,278	0.0
V. 기말순자산(I-II+III+IV)	25,914	20,294	5,620	27.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감액된 사업은 없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① 국민 속으로, 국민과 더불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강화, ② 한반도 정세 변화에 맞추어, 평화통일 필요성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국제 사회의 통일지지 기반 강화, ③ 전문적 통일인력 및 자문회의 기능 지원체계 강화, ④ 법정회의·자문건의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효과적 자문건의 환경 구축, ⑤ 제19기 민주평통 활동 강화를 위한 필수재정확보 등을 2019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국내외 자문위원들의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률이 30% 내외로 저조하므로 응답률 제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업무추진비(240)로 집행하여야 할 상품권 구매비를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비목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국내외 자문위원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률 제고 필요

가. 현 황

자문회의의 운영 사업¹⁾은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법정위원회 운영, 통일여론 수렴 활동 등을 통하여 통일정책을 건의하기 위한 사업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회의의 운영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44억 5,300만원 중 35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자문회의의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자문회의의 운영	4,480	4,480	0	△27	4,453	3,586	760	10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 분석의견

국내외 자문위원들의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률이 30% 내외로 저조하므로 응답률 제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문제 현안에 대해 일반국민, 통일·북한 전문가 및 국내외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의견을 수집하여 통일여론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대상 의견 수집은 각각 전화면접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 전문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국내외 자문위원 대상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031-300

의견 수집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적으로 국내외 자문위원들에게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내외 자문위원은 국민의 통일 의지를 대변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지역대표와 직능분야 대표급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률이 30%내외로 저조하다. 최근 3년간 국내외 자문위원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률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응답률은 2017년 28.1%에서 2018년 33.2%로 상승하였으나 2019년에는 28.5%로 하락하고 있다. 자문위원들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성실하게 대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저조한 설문조사 응답률로 보면, 자문위원들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내외 자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국내외 자문위원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률 현황]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국내	1분기	4,345/16,207(26.8%)	5,246/15,672(33.5%)	4,675/15,917(29.4%)
	2분기	3,854/16,207(23.8%)	5,447/15,672(34.8%)	4,637/15,917(29.1%)
	3분기	5,021/16,080(31.2%)	4,767/15,297(31.2%)	4,692/15,400(30.5%)
	4분기	4,538/16,080(28.2%)	4,928/15,297(32.2%)	3,229/15,400(20.9%)
해외	1분기	975/3,165(30.8%)	1,510/3,474(43.5%)	1,442/3,548(40.6%)
	2분기	906/3,165(28.6%)	1,450/3,474(41.7%)	1,367/3,548(38.5%)
	3분기	1,037/3,630(28.6%)	1,432/3,540(40.5%)	968/3,600(26.9%)
	4분기	1,258/3,630(34.7%)	1,396/3,540(39.4%)	937/3,600(25.6%)
합계	1분기	5,320/19,372(27.5%)	6,756/19,257(35.1%)	6,117/19,465(31.4%)
	2분기	4,760/19,372(24.6%)	6,897/19,257(35.8%)	6,004/19,465(30.8%)
	3분기	6,058/19,710(30.7%)	6,199/18,837(32.9%)	5,660/19,000(29.8%)
	4분기	5,796/19,710(29.4%)	6,324/18,837(33.6%)	4,166/19,000(21.9%)
연평균		5,484/19,541(28.1%)	6,544/19,047(33.2%)	5,487/19,233(28.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재작성

가. 현 황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¹⁾은 국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직원 직무능력 제고를 통해 효과적인 지역 통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158억 3,800만원 중 158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15,803	15,803	0	35	15,838	15,832	0	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 분석의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업무추진비(240)로 집행하여야 할 상품권 구매비를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비목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근무 직원들의 직무연수 시 우수직원에게 대한 시상품 명목의 문화상품권 구입을 위해 일반수용비 385만원을 집행하였다.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031-302

[2019년 상품권 구입 현황]

(단위: 원)

일자	건명	집행액
4.11.	행정실장 직무연수 우수참여자 시상품 구입	807,500
5.28.	우수 행정실장 시상용 도서상품권 구입	2,185,000
10.29.	우수 행정실장 시상용 문화상품권 구입	855,000
합계		3,847,5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런데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해서는 안되고, 상품권 구입은 불가피한 공식적인 업무를 위해서만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구분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일반수용비 (210-01)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소송 및 법률자문 비용, 위원회 참석비, 업무용택시 이용요금 등 규정 - 다른 비목 성격 경비 집행 금지
업무추진비 (240)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불가피한 공식적인 업무를 위해 상품권을 구매 한 경우 지급대장에 지급일시, 지급대상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기 지침에 따르면 시상용 상품권 구매는 업무추진비로 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예산을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비목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국방위원회



국방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5,104억 800만원이며, 1조 8,154억 4,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4.8%인 1조 7,209억 6,700만원을 수납하고 943억 9,8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7,8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24,949	224,949	224,949	322,844	240,030	82,736	78	74.3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792,141	792,141	792,141	957,569	950,153	7,416	0	99.2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493,318	493,318	493,318	535,030	530,784	4,246	0	99.2
합계	1,510,408	1,510,408	1,510,408	1,815,443	1,720,967	94,398	78	94.8

자료: 국방부

2019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3조 3,024억 7,800만원이며, 이 중 96.7%인 32조 2,120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5,560억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344억 1,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1,323,761	31,323,761	31,815,926	30,885,577	455,853	474,497	97.1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792,141	792,141	929,287	829,480	66,369	33,438	89.3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493,318	493,318	557,265	496,956	33,825	26,484	89.2
합계	32,609,220	32,609,220	33,302,478	32,212,013	556,047	534,419	96.7

자료: 국방부

나. 기금 결산

2019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4조 2,831억원이며, 4조 7,847억 9,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5%인 4조 7,602억 3,000만원을 수납하고 242억 9,9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억 6,6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군인복지기금	856,372	856,372	856,372	1,329,053	1,310,723	18,068	263	98.6
군인연금기금	3,426,728	3,426,728	3,426,728	3,455,741	3,449,507	6,231	3	99.8
합계	4,283,100	4,283,100	4,283,100	4,784,794	4,760,230	24,299	266	99.5

자료: 국방부

2019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4조 2,831억원이며, 이 중 110.7%인 4조 7,602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121억 6,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82억 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군인복지기금	856,372	856,372	873,109	1,310,723	12,168	73,141	150.1
군인연금기금	3,426,728	3,426,728	3,426,753	3,449,507	0	5,065	100.7
합계	4,283,100	4,283,100	4,299,862	4,760,230	12,168	78,206	110.7

자료: 국방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9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717억 9,900만원(12.4%)이 증가한 2조 4,719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 2,710억 1,500만원(12.3%)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040,676	1,009,381	1,009,381	1,269,720	260,339	229,044
기금	1,160,243	1,190,754	1,190,754	1,202,214	11,460	41,971
합계	2,200,919	2,200,135	2,200,135	2,471,934	271,799	271,015

자료: 국방부

2019회계연도 국방부 총지출은 예산 대비 6,500억 4,000만원(1.9%)이 감소한 33조 1,752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 2조 4,303억 5,300만원(7.9%)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7,002,902	29,791,483	29,791,483	28,708,893	△1,082,590	1,705,991
기금	3,742,009	4,033,821	4,033,821	4,466,371	432,550	724,362
합계	30,744,911	33,825,304	33,825,304	33,175,264	△650,040	2,430,353

자료: 국방부

라.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국방부의 자산은 220조 9,067억원, 부채는 202조 809억원으로 순자산은 18조 8,258억원이다.

자산은 전년 대비 8조 5,284억원(4.0%) 증가한 바, 일반유형자산 210조 6,305억 2,992만원, 유동자산 7조 5,470억 4,664만원, 투자자산 2조 4,530억 1,903만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군수품 도입 등 전비품 4조 455억 8,302만원 증가, 국유재산 재평가에 따른 토지 등 시설자산 4조 4,789억 4,457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년 대비 1,806억 6,914만원(0.1%) 감소한 바, 장기충당부채 191조 7억 2,097만원, 기타비유동부채 5조 8,490억 3,407만원, 장기차입부채 2조 9,562억 8,034만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군인연금충당부채 감소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3,681억 9,085만원 감소, BTL임대료장기미지급금 감소 등 기타 비유동부채 2,441억 8,454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국방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20,906,668	212,378,317	8,528,351	4.0
Ⅰ. 유동자산	7,547,047	6,478,253	1,068,794	16.5
Ⅱ. 투자자산	2,453,019	2,181,252	271,767	12.5
Ⅲ. 일반유형자산	210,630,530	203,474,388	7,156,142	3.5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272,934	241,285	31,649	13.1
Ⅵ. 기타비유동자산	3,138	3,138	-	0.0
부 채	202,080,863	202,261,532	△180,669	△0.1
Ⅰ. 유동부채	2,274,827	1,957,457	317,370	16.2
Ⅱ. 장기차입부채	2,956,280	2,841,944	114,336	4.0
Ⅲ. 장기충당부채	191,000,721	191,368,912	△368,191	△0.2
Ⅳ. 기타비유동부채	5,849,034	6,093,219	△244,185	△4.1
순 자 산	18,825,805	10,116,785	8,709,020	86.1
Ⅰ. 기본순자산	139,459,908	139,459,908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62,710,448	△168,197,024	5,486,576	0.0
Ⅲ. 순자산 조정	42,076,345	38,853,900	3,222,445	8.3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42조 5,298억 117만원으로 프로그램총원가 42조 7,485억 3,856만원, 관리운영비 6,985억 2,136만원, 비배분비용 3조 7,817억 5,177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조 102억 5,689만원, 비배분수익 3조 6,840억 2,311만원, 비교환수익 등 47억 3,05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3조 6,443억 8,530만원(9.4%) 증가한 42조 5,345억 3,168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시설물 전수조사 결과 반영 등에 따라 비배분비용이 전년도 대비 2조 3,133억 3,942만원(26.6%)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14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 총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급여정책프로그램(13조 5,411억 8,032만원), 군인연금(연금정책)프로그램(12조 1,740억 5,24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업무추진비 2,361억 5,553만원과 복리후생비 1,459억 3,273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잡손실 1조 5,301억 839만원과 자산폐기손실 8,612억 8,530만원 및 전기오류수정손실 5,983억 2,992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국방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41,738,282	40,598,009	1,140,273	2.8
가. 프로그램 총원가	42,748,539	41,553,768	1,194,771	2.9
나. 프로그램 수익	1,010,257	955,759	54,498	5.7
II. 관리운영비	698,521	729,741	△31,220	△4.3
III. 비배분비용	3,781,752	6,095,091	△2,313,339	△37.9
IV. 비배분수익	3,684,023	8,532,695	△4,848,672	△56.8
V.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42,534,532	38,890,146	3,644,386	9.4
VI. 비교환수익 등	4,731	768	3,963	516
VII. 재정운영결과(V-VI)	42,529,801	38,889,379	3,640,422	9.4

자료: 국방부

국방부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10조 1,167억 8,477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8조 8,258억 492만원으로 기초 대비 8조 7,090억 2,015만원(86.1%) 증가하였다.

기말 순자산이 증가한 이유는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이 기초 대비 20조 5,358억 1,292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한편, 2019회계연도 채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무상이전수입 등 채원의 조달 38조 7,413억 5,815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 등 채원의 이전 1조 5,212억 7,252만원으로 구성된다.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1,454억 2,283만원, 자산재평가이익 3조 561억 4,940만원, 기타 순자산의 증감 9조 2,958억 9,094만원 등이다.

[2019회계연도 국방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10,116,785	18,998,890	△8,882,105	△46.8
II. 재정운영결과	42,529,801	38,889,379	3,640,422	9.4
III. 채원의 조달 및 이전	38,741,358	38,045,623	695,735	1.8
IV. 조정항목	12,497,463	(8,038,349)	20,535,812	255.5
V.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8,825,805	10,116,785	8,709,020	86.1

자료: 국방부

마.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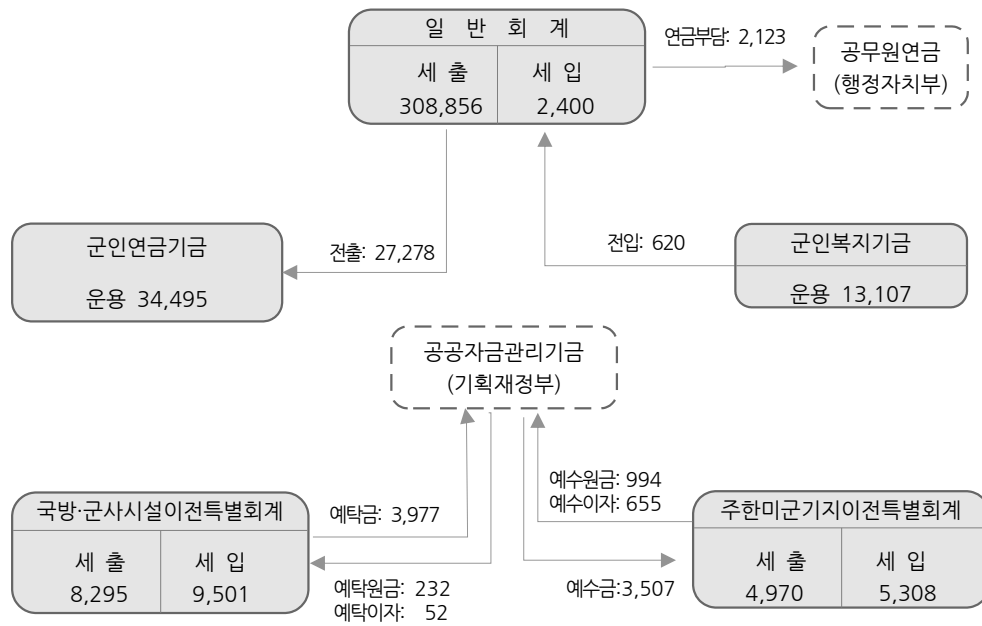
2019회계연도 국방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123억원, 군인연금기금으로 2조 7,278억원이 각각 전출되었고, 군인복지기금에서 일반회계로 620억원 전입되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 3,507억원을 전입받고, 예수원금 994억원, 예수이자 655억원을 상환하였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3,977억원을 예탁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회수 232억원, 예탁이자수입 52억원을 받았다.

[국방부 소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자료: 국방부

국방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군무원인건비 사업, ② 일반 지원시설 사업, ③ 지상교육용탄약 사업 등이 있다.

군무원인건비 사업은 군무원 증원 인원을 축소하여 1,097억원이 감액(1조 8,903억원→1조 7,806억원)되었고, 일반지원시설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139억원이 감액(7,038억원→6,899억원)되었다. 지상교육용탄약 사업은 전차탄약의 조달가능성 제한 전망에 따라 21억원이 감액(1,937억원→1,916억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병참물자 사업, ② 기본피복사업 등이 있다.

병참물자사업은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하여 338억원이 증액(1,658억원→1,996억원)되었고, 기본피복사업은 전방 및 격오지 부대 병사들에게 동계패딩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49억원이 증액(3,487억원→3,536억원)되었다.²⁾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유해보관시설 개선, ② 독립군·광복군·무관학교 기념사업 등이 있다. 유해보관시설 개선은 “유해보관시설이 최선의 예우를 다하여 경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운영절차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 독립군·광복군·무관학교 기념사업은 “독립군·광복군·무관학교 기념관의 건립위치를 국회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³⁾

1)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2)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3)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국방부는 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 ②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건설, ③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④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⑤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⑥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으로 평화정착 토대 구축을 2019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군인연금의 보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기초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배상 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배상금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불용되었으므로, 배상신청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는 등 불용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 일정이 지연된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비로 추진되는 과학화 감시장비 설치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철책 제거 현황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군 가족이 보다 안정적 보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보다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1

지속적인 군인연금기금 보전금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가. 현 황

보전금¹⁾이란 군인연금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군인연금법」 제45조에 따라 수지차보전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2019년도 수입 계획액은 1조 5,740억 800만원이었으며, 징수결정액이 전액 수납되었다.

[2019회계연도 군인연금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결산	2018결산	2019년			
			계획		결산(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군인연금기금 수입	3,166,114	3,295,997	3,426,728	3,426,728	3,449,507	100.7
보전금	1,465,732	1,510,000	1,574,008	1,574,008	1,574,008	100.0

자료: 국방부

군인연금기금 수입은 개인기여금, 국가부담금, 보전금, 그 밖의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개인기여금은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를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²⁾ 국가부담금은 연금지급을 위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부사관 이상인 군인의 보수예산의 7퍼센트를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군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군인연금기금 91-911

2) 「군인연금법」 제42조(기여금) ① 군인은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기여금을 내야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인연금기금으로 전출하고 있다.³⁾ 그 밖에도 국가부담금에는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전투가산부담금, 기금운영비 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타 수입에는 건물대여료, 이자수입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군인연금기금은 자체수입(개인기여금, 국가부담금)만으로는 연금급여를 충당할 수 없어 「군인연금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을 국가가 보전하고 있다. 보전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결산 기준 보전금은 1조 5,740억원으로 전체 군인연금기금 수입의 46.6%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군인연금 수입원천별 결산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총수입	자체세입		국가부담금		보전금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9	19,710	3,177	16.1	7,124	36.1	9,409	47.7
2010	21,007	3,286	15.6	7,155	34.1	10,566	50.3
2011	23,545	3,506	14.9	7,773	33.0	12,266	52.1
2012	24,455	3,786	15.5	9,165	37.5	11,504	47.0
2013	26,557	4,537	17.1	8,889	33.5	13,131	49.5
2014	28,065	5,056	18.0	9,563	34.1	13,446	47.9
2015	28,556	5,229	18.3	9,896	34.7	13,431	47.0
2016	29,580	5,587	18.9	10,328	34.9	13,665	46.2
2017	30,877	5,965	19.3	10,389	33.6	14,523	47.0
2018	32,327	6,251	19.3	10,976	34.0	15,100	46.7
2019	33,813	6,535	19.3	11,538	34.1	15,740	46.6
연평균 증가율	7.15	10.57		6.20		6.73	
기여율	100	23.8		31.3		44.9	

자료: 국방부

3) 「군인연금법」 제44조(부담금) 제4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7퍼센트로 하며, 그 납부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분석의견

첫째, 국방부는 군인연금의 보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기초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군인연금의 경우 1973년,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기금고갈에 따른 국가보전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은 2조 563억원,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은 1조 5,740억원 규모이다. 최근 5년간 보전금 규모를 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5년도 연금 개혁 이후 보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군인연금의 경우 동일 기간 동안 보전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보전금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
공무원연금	23,189	22,820	22,806	20,563	12,611
군인연금	13,665	14,523	15,100	15,740	15,779

자료: 인사혁신처, 국방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2015년 보험료율을 9%로 인상하고 급여 지급율을 1.7%까지 인하하는 제도개편을 실시하였다. 반면 군인연금은 2013년 제도개편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였지만, 다른 직역연금보다 낮은 7%로 유지하고 있으며 급여 지급율에 대해서는 개편을 실시하지 않아 1.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직역연금 제도개선 현황]

구분	개편연도	주요내용
공무원연금	2015년	· 보험료율 인상(7.0→9%) · 급여 지급율 인하(1.9→1.7%)
군인연금	2013년	· 보험료율 인상(5.5→7%)
사학연금	2015년	· 보험료율 인상(7→9%) · 급여 지급율 인하(1.9→1.7%)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교육부

이에 따라 2019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8.75%이며, 군인연금의 기여율은 7%이나, 평균 퇴직연금액은 공무원연금이 월 237만원인 데 비하여 군인연금은 월 272만원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제도 비교: 2019년 기준]

항목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기여율	8.75%	7%
평균 기여금(월)	46만원	28만원
평균 퇴직연금액(월)	237만원	272만원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으로 전출되는 보전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향후에도 이런 추세가 유지되어 국가 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기금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기타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군인연금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유자금 운용 현황을 보면 군인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공무원연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또한, 기타수입 측면에서도 2019년 결산 기준 기타수입은 전체 수입 3조 4,495억원 중 820억원(2.4%)에 불과하여 기타수입 증대를 통해 보전금 규모 증가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무원연금	적립금	40,117	52,385	61,668	72,466	79,389
	수익률	3.9	4.1	8.5	△2.7	9.3
군인연금	적립금	10,425	11,042	11,676	11,623	12,444
	수익률	2.3	1.7	3.0	△2.1	6.1

주: 운용규모는 연간 평균기준(단, 국민연금기금은 각 연도말 시가 기준 적립금)

자료: 인사혁신처, 국방부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을 근거로, 향후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보전금 규모)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GDP 대비 비중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실질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 인력구조 재설계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하게 재정수지를 추계한 후 제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군 인력구조 개편 등을 반영하여 군인연금의 향후 재정 상황을 전망할 필요가 있으며 그를 기초로 기여율 및 수급연령 조정 등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군인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전금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군인연금 장기재정전망]

(단위: 억원, %)

연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GDP 대비 %
2020	18,379	38,415	△20,036	△0.1
2025	21,386	48,398	△27,012	△0.1
2030	24,962	59,101	△34,140	△0.1
2035	29,239	70,439	△41,200	△0.1
2040	34,418	82,930	△48,512	△0.1
2045	40,710	97,186	△56,476	△0.1
2050	47,774	113,592	△65,818	△0.1
2055	55,960	132,708	△76,748	△0.1
2060	65,446	155,213	△89,767	△0.1

자료: 국방부

둘째,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해서 국가보전금이 남을 경우 다음 해에 국가보전금을 감액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전금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 지출을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액을 보전하는 것이지만, 두 연금 간 국가보전금 산정 및 정산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4) 국방개혁2.0에 따르면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며,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위하여 장교와 부사관을 일부 증원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가보전금 산정시 기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수입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군인연금은 기금운용수익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전금은 보험료 수입 등 기금수입에서 연금급여 등 지출을 차감하여 그 부족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모두 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해 기금운용수익의 사용을 제한하였으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보전금 절감을 위해 기금운용수익의 일부를 국가보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⁵⁾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21조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국가보전금 산정시 기금수입에 기금운용수익금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군인연금의 경우 「군인연금법」 제45조를 근거로 국가보전금 산정시 기금수입에 기금운용수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국가보전금 산정기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정	산정 기준	- 경상비지출(연금지급금+기금운영비) - 경상비수입(경상이전수입+국가부담금+기금운용수익금) - 기금운용수익금=[기금운용수익 - (유형자산평가이익+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 × 전입률⁶⁾	경상비지출(연금지급금+기금운영비) - 경상비수입(경상이전수입+국가부담금)
	법적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21조 제2항 및 제71조 제8항⁷⁾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인사처 지침	「군인연금법」 제45조 ⁸⁾
정산	정산 방법	보전금을 과소추계하여 부족할 경우 차차년도(원금) 정산, 과다추계하였을 경우 기금으로 적립하고 차차년도에 적게 받음	보전금을 과소추계하여 부족할 경우 차차년도(원금) 정산, 과다추계하였을 경우 기금으로 적립(정산하지 않음)
	법적 근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7조 ⁹⁾	「군인연금법」 제48조 ¹⁰⁾

자료: 인사혁신처, 국방부

5) 2013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수익을 반씩 나누어 절 받은 공단에 적자 보전으로 전입하고 절반은 지불준비금으로 기금에 적립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하였다.

6) 기금운용수익금 중 기금수입 포함 비율은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에 따라 0~50%이다.

7) 「공무원연금법」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2019년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은 2조 563억원이며, 기금운용수익금 중 2,508억원이 수입에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 중 기금운용수익금]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가보전금	25,548	30,727	23,189	22,820	22,806	20,563
기금운용수익금	0	1,283	672	1,002	0	2,508

주: 기금운용수익금은 기금운용수익 중 일부를 보전금에 충당한 금액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의 경우 국가보전금 산정 시 기금운용수익을 수입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 편성하여 국가보전금이 남을 경우 결산상 잉여금으로 간주

-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 라.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 ②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⑧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다.
- 8) 「군인연금법」 제45조(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 9)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②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업무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급여총액"이라 한다)의 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2. 전전년도의 기여금·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전전년도의 기여금·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보다 부족한 금액
- 10) 「군인연금법」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국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 ② 매 회계연도에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2. 전역자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자의 수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상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책임준비금은 다음다음 연도 보전금에 반영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하여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정산하지 않고 있다.¹¹⁾ 군인연금이 2015~2019년 동안 적자액보다 추가로 더 지원받은 국가보전금은 696억원 규모이다.

[군인연금 국고보전금 계획 및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	실집행		정산 결과 또는 계획
	금액	금액	실집행률	
2015	1,343,095	1,356,501	101.0	△13,406
2016	1,366,537	1,347,269	98.6	19,268
2017	1,452,326	1,430,692	98.5	21,634
2018	1,510,000	1,497,990	99.2	12,010
2019	1,574,008	1,557,299	98.9	16,709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71조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하여 국가보전금이 남을 경우 차차년도에 남은 금액 만큼 적게 받고 있으며, 2018년 국가보전금이 5,027억원 남아 2020년 예산에서 국가보전금을 실제 부족분보다 5,027억원 감액 편성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화 도모를 위해 2001년에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 부족분에 대한 국가부담을 법제화(제45조)하고, 2006년에 책임준비금의 적립 규정을 신설(제48조)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군인연금법」 제45조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전금이 남을 경우 정산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으며, 남은 국가보전금을 「군인연금법」 제48조제2항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¹²⁾

따라서 국방부는 군인연금의 경우도 공무원연금의 경우에 준해서 국가보전금이 남을 경우 다음 해에 국가보전금을 감액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11) 국가보전금을 과소 편성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차차년도에도 부족액만큼 더 받는다. 2015년 134억원이 부족했으며 이는 2017년 국가보전금에 포함하여 받았다.

12) 또한 ‘매 회계연도에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군인연금법」 제48조제2항은 2006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추가되었으며, 개정 취지는 여유자산운용수익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 현 황

사유재산정리¹⁾ 사업은 군이 적절한 보상 없이 불가피하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를 적법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국방부는 2019년도 예산현액 703억 3,000만원 중 495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188억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사유재산정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유재산정리	62,870	62,870	7,460	-	70,330	49,557	1,973	18,800

자료: 국방부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를 적법화하는 방법은 매입·임차·반환으로 구분된다. 매입은 해당 토지를 원 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임차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소유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이며, 반환은 해당 토지에 군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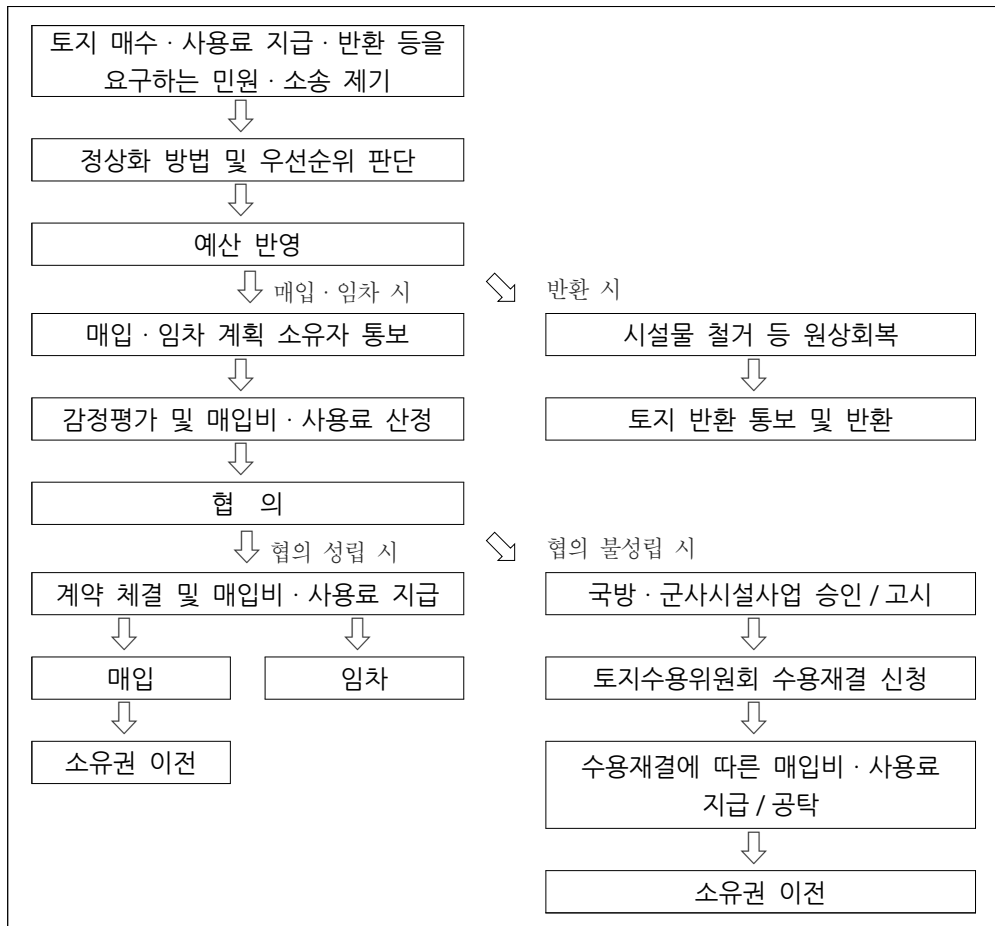
토지 매수·사용료 지급·반환 등을 요구하는 민원·소송이 제기되면 군은 해당 토지에 대한 정상화 방법 및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차년도 예산에 해당 토지 매입비·임차료 등을 반영하고 원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매입·임차·반환하는 방식으로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한다.

한편, 무단점유된 토지에 대하여 국가배상신청이 있는 경우 배상심의회²⁾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배상금을 지급한다.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4132-400

[사유재산정리 사업 집행 절차]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첫째, 2019년도 국방부는 전국 군 무단점유지의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를 최초로 안내하였으나, 배상 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배상금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불용되었으므로, 배상신청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는 등 불용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군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를 전수조사하고 무단점유 해소 대책을 마련 하라는 201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국방부는 군 무단점유 사공유지에 대한 전국단위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군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 면적은 2,155만㎡이며 그 가치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3,4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무단점유지 현황(2018년도 전국 단위 측량 결과)]

구 분	계	사유지	공유지 ¹⁾
면적(만㎡)	2,155	1,737	418
금액 ²⁾ (억원)	3,491	2,782	709

주: 1)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2) 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료: 국방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군 무단점유지 소유자에게 토지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에 대한 우편 안내 및 배상금 집행을 위하여 2019년 동 사업비로 전년 대비 275억 7,000만원(78.1%)이 증액된 62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19년도 집행 실적을 보면, 대폭 증액되었던 배상금에서 173억 9,400만원이 불용되는 등 집행이 부진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5%에 그쳤다.

[2019년도 사유재산정리 사업 비목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10	운영비	8,204	8,204	130	1,763	10,097	10,018	72	7
220	여비	31	31	1	0	32	30	0	2
310	보전금(배상금)	30,155	30,155	0	△1,763	28,392	10,967	31	17,394
410	건설보상비	22,186	22,186	6,451	0	28,637	27,374	1,263	0
420	건설비	2,294	2,294	877	0	3,171	1,169	606	1,397
계		62,870	62,870	7,460	0	70,330	49,557	1,973	18,800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2019년 2월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대책」을 발표하고 군 무단점유지의 소유자 12,642명에게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를 통지하였고 2019년에 배상금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2019년 말까지 배상신청 인원이 약 3,000명에 불과하여²⁾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불용되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토지 소유자가 배상신청을 한 이후 배상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배상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2019년도 실제 집행된 배상금 규모가 예상보다 저조하였다는 입장이다.

향후 국방부는 예산의 불용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상신청 및 배상절차 진행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차년도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의 토지 무단점유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유재산정리 사업은 오랜 시간동안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국가의 위법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에서도 2017년 국정감사에서 사유지 불법점유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라고 지적한 바 있고,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군이 무단점유한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하는 등 군의 무단점유 사공유지 정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국방부는 2018년도에 전국에 위치한 전 군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사공유지 무단점유 면적과 가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군의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신청 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유지에 설치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국방·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등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2) 국방부는 배상신청이 저조했던 사유에 대해서 군 무단점유 토지의 특성상 장기 점유면적이 많아 부정확한 토지대장 기록에 의존하여 우편을 발송할 수밖에 없어 반송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일부 소유자의 경우 토지 면적이 미미하여 배상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배상금 액수가 크지 않아 배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설명한다.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³⁾이 개정(2019. 4. 23.) 및 시행(2019. 10. 24.)됨에 따라 국방부는 실태조사 및 공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런데, 2019년 무단점유 토지 정리 실적을 보면 112만㎡로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며, 2018년 전수조사 기준 군 무단점유지 총 면적이 2,155만㎡라는 점에서 여전히 약 2,000만㎡의 무단점유 토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군 무단점유 사·공유지 정리 실적]

(단위: 1만㎡)

구 분	계	매입	교환	반환
2015년	711	105	17	589
2016년	427	73	8	346
2017년	524	64	7	453
2018년	590	70	2	518
2019년	112	65	33	14

자료: 국방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위법 상태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 군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사유재산정리 사업의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 사업의 성과목표는 사·공유지 정리 면적으로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2019년도 달성도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성과목표의 설정이 매년 계획된 물량에 근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실태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3. 유희 국방·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국방·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공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하여 단순 예측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중장기적 시각에서 수립된 연차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지 못하다.

[사유재산정리사업 성과목표]

성과지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사·공유지 정리 면적(만㎡)	목표	신규	300	191	112	’19년 반환을 계획한 146만㎡, 우선 매입을 계획한 45만㎡를 합산하여 191만㎡로 설정
	실적	-	590	112	-	
	달성도	-	196.7	58.6	-	

자료: 국방부

따라서 국방부는 사유재산정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단점유 사·공유지에 대한 정리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는 한편, 해당 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집행에 있어서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3-1. 전용으로 마련한 재원을 활용한 보안통제시스템 신규 추진 부적정

가. 현 황

정보보호¹⁾ 사업은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의 구현·운용·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고, 악성화·지능화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전·평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정보시스템을 보호하는 다중 정보보호체계 구축 사업이다. 국방부가 2019년도 정보보호 사업에 편성한 예산액은 555억 6,500만원으로, 449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 9,0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방부는 2019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병 휴대전화 보안통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하여 35억 5,500만원을 전용 등으로 증액하여 12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8,4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19회계연도 정보보호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보보호	55,565	55,565	572	2,062	58,199	44,998	11,211	1,990
병 휴대전화 보안통제 시스템 구축	0	0	0	3,555	3,555	1,226	1,784	544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전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인 “병 휴대전화 보안통제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131-307

국방부는 2019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병 휴대전화 보안통제시스템”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사업에서 29억 7,000만원, ‘정보체계개발유지’사업에서 5억 8,500만원 등 총 35억 5,500만원을 전용 및 조정하여 재원을 마련하였다.

[정보보호 사업으로의 예산 전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조정 감액				조정 증액	
구분	세부사업 (코드)	내역사업	금액	세부사업 (코드)	금액
자체 전용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2131-301)	사이버지식정보방 PC 도입	△2,970	정보보호 (2131-307)	3,555
조정	정보체계개발유지 (2131-302)	신원조사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영구기록물 DB구축	△585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병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기존의 보안 통제 방식인 보안스티커는 임의 제거가 가능하고 촬영 기능에 대한 원천적 차단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앱 형태의 보안통제시스템 사업의 신규 추진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최초로 시작된 것은 2018년 4월이므로 보안 위협요인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점, 보안스티커 방식에 대하여 언론 등을 통한 지속적인 문제제기²⁾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 간부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보안통제시스템을 이미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 휴대전화에 대한 보안통제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에 따라 군사정보 또는 군 기강 해이로 비취질 수 있는 정보 유출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 가능, 보안스티커의 경우 임의 제거가 가능하여 보안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 보안스티커의 잦은 탈부착으로 인한 불편과 보안스티커 구매 예산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병 휴대전화 시범운영 현황]

구분	1차	2차	3차
기간	2018. 4. ~	2018. 8. ~	2019. 4. ~
대상	4개 국직부대	1차 대상 포함 32개 부대	전 부대 (단, GP·훈련병 제외)
인원	400여 명	7,300여 명	전 군

자료: 국방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시범운영 대상 부대에서 휴대전화로 인한 보안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존에 사용하던 보안스티커만을 활용하기로 하고 2019년도 예산안에 별도 시스템 구축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 2019년 4월 시범운영 대상을 전군으로 확대하고 이후 전면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보안통제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편성된 예산이 없으므로 전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병 휴대전화 시범운영 확대 과정에서 보안통제시스템 구축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업 관리를 면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신규 사업을 전용을 통해 추진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우회한 자의적인 집행이므로 부적절하다.

향후 국방부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부터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예측하고, 국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2. 사이버지식정보방 규모조정 계획 수립 필요

가. 현 황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¹⁾ 사업은 국방 정보화를 통한 국방개혁 실현 및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에 기여하고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 군의 정보통신 서비스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현액 1,811억 9,700만원 중 1,740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은 군 복무기간 중 장병들의 사회와의 정보단절 해소, 학습/자기계발 등을 통한 생산적 병영문화 창출 및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액 152억 1,300만원 중 120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보통신기반 체계구축	183,670	183,670	377	△2,850	181,197	174,087	907	6,203
사이버지식 정보방	15,213	15,213	0	△3,152	12,062	12,010	0	52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병 휴대전화 사용 허용에 따라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 수요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차 PC 규모 조정 및 이용패턴 변화 반영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사업 개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131-301

2019년 4월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이 전 군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월평균 PC당 사용시간이 휴대전화 사용 허용 전인 2017년에는 143시간에서 2019년에는 95시간으로 33.5% 감소하였고, PC이용수요의 상당 부분인 정보단절 해소 및 취미생활 해소를 휴대전화가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17~2019년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 현황]

(단위 : 시간)

구분	2017	2018	2019
PC당 사용시간(월평균)	143	145	95

자료: 국방부

그런데, 2019년 2차 시범사업 종료 후 한국국방연구원이 수행한 「병 휴대폰 시범운영 영향 분석 연구」의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 설문조사에 따르면, 휴대폰 사용 부대 병사의 경우 미사용 부대 병사와 비교할 때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 빈도가 7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이 2020년 내 전면 허용될 경우 국방부가 현재 제시하는 조사 결과보다 실제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률 감소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동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 허용에 따른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2019년도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후 PC 교체 물량을 2019년 예산안 편성 당초 계획인 3만 5,000대에서 2만 5,000대로 축소하여 집행하였으며, 다음 노후PC 교체 시기인 2022년 물량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집행계획 수정에 불과하며, 병 휴대전화 사용 허용이라는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방식 및 규모 조정에 대한 중기적인 계획 수립은 부재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 및 전면 허용 계획을 고려하여 사이버지식정보방 전체 PC 규모의 연도별 조정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병사들의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 목적 및 패턴을 조사하여 온라인 강의 수강 등 장병들의 PC 이용 수요에 맞는 서비스 이용 활성화 등 중장기적 시각에서 사업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민간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규모 확대 필요

가. 현 황

국방부가 2019년도 인사정책지원¹⁾ 사업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액은 5억 4,432만원으로, 5억 2,249만원을 집행하고 2,183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인사정책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인사정책지원	4,556	4,556	20	1,004	5,580	5,497	12	71
장애인고용 부담금	544	544	0	0	0	522	0	22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집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고용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²⁾에서는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439-306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

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천분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동 법 제33조³⁾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사업주의 지위에서 민간조리원, 복지시설 관리원, 아·미용원, 환경미화원 등의 민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국방부도 동 법률이 정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2019년에는 5억 2,249만 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에 집행하였다.

[국방부 장애인고용부담금 집행 및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천원, 명)

연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국방부 민간근로자 고용 현황			
	예산액	집행액	상시근로자 (A)*	장애인고용 (B)	장애인고용률 (B/A)	의무 고용률
2017	197,664	74,186	4,988	110	2.21%	2.9%
2018	197,664	276,080	8,161	187	2.29%	2.9%
2019	544,320	522,490	8,117	220	2.71%	3.4%
2020	524,000	869,903	-	-	-	3.4%

자료: 국방부

또한 국방부는 2020년에도 2019년 대비 3억 4,741만원이 증액된 8억 6,990만 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장애인 고용부담금 집행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법정 의무고용률의 지속적인 상승과 국방개혁 2.0⁴⁾에 따른 민간인력 고용규모 확대 및 부담기초액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은 충분히 확대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다.

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9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4)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국방부는 민간근로자 고용 규모를 2017년 0.6만명에서 2022년 1.3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동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여 장애인 고용을 선도적으로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집행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방부는 민간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일반지원시설¹⁾ 사업은 노후하고 부족한 각종 일반지원시설을 개선하여 군사대비 태세 완비 및 장병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국방부가 2019년도 일반지원시설 사업에 편성한 예산액은 6,899억 4,700만원으로, 6,092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236억 5,900만원을 불용하였다.

내역사업인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은 기존 경계철책을 철거할 수 있도록 대체 감시장비를 설치하여 해안경계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249억 6,300만원 중 13억 6,500만원이 집행되었고 229억 3,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 6,8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일반지원시설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지원시설	689,947	689,947	41,174	△20,720	710,401	609,224	77,518	23,659
해강안 경계 과학화	24,963	24,963	0	0	24,963	1,365	22,930	668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사업 일정이 지연된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비로 추진되는 과학화 감시장비 설치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철책 제거 현황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533-303

해·강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 철책은 지역 주민의 불편 유발 및 미관상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거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적 침투를 차단하는 장애물인 철책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책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각 부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장비를 설치하고 철책을 제거하여 왔으나, 2017년부터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동해안 경계철책 제거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해안 경계철책 제거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강원도 6개 지자체*에 국비(50%)를 지원**, 동해안 지역 경계철책 27.3km에 대해 군 감시장비 설치 후 철책 철거
*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 2007년부터 지자체 주도로 군부대와 협조하여 추진해 오다가, 2017년 예산 편성시 국회증액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환 (2016.12월)
- 사업기간 : 2017 ~ 2018년
- 대상지역 : 32개소, 27.3km
- 사 업 비 : 217억원 (국비 108.5, 지자체 108.5)
- 2017년 : 103억원 (국비 51.5, 지자체 51.5)
- 2018년 : 114억원 (국비 57, 지자체 57)

자료: 국방부

이후, 국방부는 병력감축 등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인력 위주의 감시체계를 첨단 감시장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의 철책 제거 사업을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8년 3월 국방부는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 대상을 확정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군 철책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사업구간을 169.6km로 확정하였으며, 감시장비 보강 후 철거 구간인 134.93km 구간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과학화 감시장비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 대상 구간]

(단위: km)

구 분	계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고양	김포	인천	화성	평택
계	169.6	39.17	10.52	6.73	7.1	6.8	18.9	44.31	33.37	2.7
감시장비 보강후 철거	134.93	38.86	0.4	6.73	7.1	6.8	18.9	31.77	24.37	0.0
즉시철거*	34.67	0.31	10.12	0	0	0	0	12.54	9	2.7

* 적 침투 가능성이 낮고, 장애물로서의 기능 발휘가 제한되어 군이 직접 철거하는 철책
자료: 국방부

동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19년도 집행률이 5.5%에 그치는 등 계획대비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2020년 내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1차년도인 2019년도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49억 6,250만원 중 229억 2,952만원이 이월되고 6억 6,796만원이 불용되었다. 이는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학화 감시장비 납품 계약 절차가 2019년 12월 말에 시작되어 2020년 3월에서야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규모 이월액이 발생한 데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24,962.5	0.0	24,962.5	1,365.0	22,929.5	668.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8,364.0	△18,364.0	0.0	0.0	0.0	0.0
기본조사설계비(420-01)	0.0	506.0	506.0	218.1	106.9	181.0
실시설계비(420-02)	0.0	1,520.0	1,520.0	406.7	851.1	262.2
공사비(420-03)	6,598.5	△5,558.5	1,040.0	735.2	80.0	224.8
시설부대비(420-05)	0.0	5.0	5.0	5.0	0.0	0.0
자산취득비(430-01)	0.0	21,891.5	21,891.5	0.0	21,891.5	0.0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시 채택된 부대의견²⁾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전용³⁾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개월이 경과한 2019년 10월에서야 전용 승인이 이루어져 조속한 계약 발주가 어려웠고, 업체 선정에 있어 유찰이 반복되어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사업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2020년 5월 현재 감시장비가 설치된 구간은 없으며, 감시장비 설치를 전제로 하는 철책 제거 작업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0년 7월 경 과학화 감시장비 시제품 납품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연내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제품 납품 후에도 시제품의 성능 및 보안성 검토, 감시장비 설치를 위한 기반공사 등 실제 장비 설치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방부는 계획된 기간 내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방부는 국비로 추진되는 과학화 감시장비 설치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철책 제거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강안 과학화 감시 장비 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철책을 제거하여 주민의 불편과 미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1단계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대규모 지연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단계 사업인 동 사업도 유사한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즉, 과학화 감시장비 설치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철책과 감시장비가 중복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동 사업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과학화 감시 장비를 철거대상 철책 구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철책 제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므로 향후에도 별도로 철책 제거 현황을 관리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2) 동 사업은 2019년도 예산 편성 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2019.8.2.) 시 ‘과학화 경계장비 설치’는 국가직접사업으로 전환하고 ‘철책 제거’ 및 ‘지역 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내역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추진하라는 취지의 부대의견이 채택됨에 따라 국방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되었다.

3)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에서 자산취득비(430-01)로 전용 승인 신청(2019.8.)

그러나 철책은 군이 관리하는 방어 시설이라는 점, 국비 투입으로 추진된 과학화 감시장비 설치 사업의 효과성 및 목적 달성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향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대상 구간의 철책 제거 현황을 책임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부서관 인건비¹⁾는 부서관의 봉급과 제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2019년도 부서관 인건비 사업의 예산현액 5조 5,579억 8,100만원 중 5조 5,572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부서관 인건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부서관 인건비	5,478,808	5,478,808	0	79,173	5,557,981	5,557,275	0	706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병역자원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부서관 계급구조 개편과 병행하여 임용연령 상한 완화 및 여군 비중 확대 등 부서관 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9년도 말 기준으로 부서관 운용률²⁾은 91.0%로서 같은 해 장교 운용률 97.8%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서관 운용률 저조 문제는 특히 초급 간부인 하사 계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2019년 기준 소위의 운용률이 98%에 달하는데 반하여 하사의 운용률은 80.4%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101-152

2) 정원 대비 연평균 운영병력 비율

[연도별 장교 및 부사관 운용률]

(단위: 명, %)

구분	장교			부사관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정원(A)	71,365	71,461	71,064	124,087	127,209	127,209
운영병력(B)	70,842	70,051	69,467	112,026	113,204	115,708
운용률(B/A)	99.3	98.0	97.8	90.3	89.0	91.0

주: 연평균 운영병력 기준

자료: 국방부

[연도별 소위 및 하사 운용률]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소위	94.2	94.8	98.0
하사	73.8	74.0	80.4
유급지원하사	45.3	44.5	62.9

주: 1) 유급지원하사는 병 생활을 모두 마친 후 복무기간 연장(유급지원병제)을 통해 임용된 하사를 말함

2) 연평균 운영병력 기준

자료: 국방부

이처럼 하사의 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현재 부사관 정원구조 상 장기복무 선발률이 42% 수준으로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져 청년인구의 유입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부사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부사관학군단, 부사관선발시험 등을 거쳐 ‘단기복무자(4년)’로 선발된 이후 가산복무 또는 복무연장 제도를 병행하며 장기복무자가 되기 위한 전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직업군인이 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투자했음에도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못하는 인원이 다수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정원구조를 가지고 있어, 장기 숙련된 간부의 조기 유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하사 충원이 되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사관 정원을 대폭 증원시킨다 하더라도 초임간부인 하사 충원 부진에 따라 오히려 운용률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기 획득된 간부의 장기복무 선발 비율 제고를 통해 전문화된 숙련간부를 확보하고 동시에 인력운용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사 이상 계급의 정원이 증가되어야 한다.

‘국방개혁 2.0’은 이러한 관점에서 2022년까지 간부의 계급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개편하고자 대위·소령·중령과 중상사는 증원하고, 중소위 및 하사는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급구조 개편은 부사관의 직업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직업군인 지원을 유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병역자원인 20세 남자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계급구조 개편과 병행하여 부사관 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임용 최고연령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인사법」 제15조는 간부의 임용 최고연령을 제한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1962년 제정된 것으로서 오늘날의 평균수명 증가 및 사회진출시기를 고려할 때 최고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군인사법상 임용 최고연령]

구 분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부사관
최저연령	-	-	-	20세	20세	18세
최고연령 ³⁾	36세	32세	29세	27세	50세	27세

자료: 「군인사법」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임용 최고연령을 상향할 경우 계급과 연령의 비례현상이 전도될 수 있어 군의 위계질서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계급별 연령정년 제도를 고려할 때 고령 임관 시 상위계급으로의 진급기회 상실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계급과 연령의 역전 현상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으며 부사관 충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원 가능 연령 확대가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구 통계 및 향후 병력구조 개편 시나리오를 토대로 최고연령 상향 필요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이 연장됨.

구분	연장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아울러, 여군 비중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국방개혁 2.0’이 목표하고 있는 여군 비중은 8.8%이며, 2019년 기준 여군 비중은 6.8%이다. 단기복무자 선발 시 성별에 따른 경쟁률 현황을 보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경쟁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군 선발인원을 증대할 경우 부사관 충원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급감이라는 당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여군 비중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9년도 성별에 따른 단기복무자 선발 경쟁률 현황]

구분	학군장교	학사장교	부사관선발시험
남성	2.8	3.1	4.7
여성	4.8	4.1	8.5

자료: 국방부

가. 현 황

군 어린이집 운영지원¹⁾ 사업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육아부담 완화 등 군인, 군무원, 국방 공무원 및 군 가족들이 육아에 대한 걱정 없이 국방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복지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다. 국방부가 2019년도 군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 편성한 예산액은 414억 4,000만원으로, 413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군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군 어린이집 운영지원	41,440	41,440	0	△41	41,399	41,393	0	6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군 가족이 보다 안정적 보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보다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군인 가족과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소규모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국방개혁 2.0은 국방운영분야 개혁과제 중 ‘여군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세부과제에서 어린이집을 125개소(2017년, 개원년도 기준)에서 164개소(2022년)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어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242-302

린이집 및 공동육아나눔터 개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동 사업에서 총 170개의 어린이집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였다.

2018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추진된 군 어린이집 설치 소요 전수조사(2019.6.) 결과 42개²⁾의 어린이집 추가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군 합계출산율이 사회출산율보다 높다는 점³⁾ 등을 감안할 때 조속한 어린이집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매년 각 군 및 국직부대의 군 어린이집 설치 소요를 파악하여 국방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있는데, 2019년 예산안 편성 당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공동육아나눔터는 최대 35개까지만 개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연도별 보육시설 설치운영 계획]

(단위: 개소)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70(+7)	179(+9)	186(+7)	199(+13)	203(+4)
어린이집	소계	137(+4)	144(+7)	151(+7)	164(+13)	168(+4)
	일반	115(+1)	119(+4)	121(+2)	128(+7)	132(+4)
	소규모	22(+3)	25(+3)	30(+5)	36(+6)	36
공동육아나눔터		33(+3)	35(+2)	35	35	35

자료: 국방부

그런데 2020년의 경우 2019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어린이집을 7개소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예산안에는 2개소만 신축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2)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부대(「영유아보육법」 의무설치 사업장),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100세대 이상 관사(「군 어린이집 관리 훈령」 의무설치 미이행 관사), 대기자가 50명 이상이거나 정원대비 100% 이상인 어린이집(추가 설치 필요성이 있는 어린이집) 등

3) 여군 합계출산율과 사회출산율 비교(자료: 국방부)

여군 합계출산율	사회출산율
1.57	0.98

[2017~2020년 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50	163	170	180
어린이집	소계	128	133(+5)	137(+4)	139(+2)
	국공립전환	25	25	25	25
	일반	89	89	90(+1)	92(+2)
	소규모	14	19(+5)	22(+3)	22
공동육아나눔터		22	30(+8)	33(+3)	41(+8)

주: 국공립전환은 국방부가 어린이집 설치 후 협의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시설임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국방개혁2.0에 따른 부대개편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신축이 무산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신축이 결정된 부대의 경우에도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계획만큼 어린이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국방부는 각 군이 제기한 소요와 부대개편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도별 어린이집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지매입 및 시설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 가족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기존 어린이집 중 대기자가 많은 어린이집을 증축하여 보육인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에서는 보육시설로서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며 안정적인 상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공동육아나눔터는 개방공간을 제공하되 놀이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 품앗이 육아 공간으로 어린이집과는 성격이 상이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군 가족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육아나눔터보다는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동 사업 추진시 공동육아나눔터보다는 어린이집에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일반어린이집	소규모어린이집	
보육가능 인원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20인~200인 이상	15인 내외	1일 10~40명 (필요시 이용)
넓이	109 ~ 1,996㎡	56 ~ 175㎡	49.5 ~ 106㎡
초기 설치예산	351 ~ 6,439	70	50
연간 운영예산	176 ~ 1,862	144	40
교직원 수	5~27명	3~6명	1명
보육시간	기본보육시간 07:30 ~ 19:30 시간연장보육 19:30 ~ 24:00 휴일보육 07:30 ~ 15:30		평일 10:00~18:00

자료: 국방부

가. 현 황

화력장비(획득)¹⁾ 사업은 EOD²⁾ 로봇, 활주로 폭발물 원격제거장치 등 폭발물 처리반 장비와 쌍안경, 나침반 등 관측 및 방향유지 장비를 획득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2019년도 예산현액 234억 4,700만원 중 115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83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6억 1,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화력장비(획득)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화력장비(획득)	21,647	21,647	1,340	460	23,447	11,509	8,320	3,617
위리어플랫폼	7,588	7,588	0	△634	6,954	2,123	2,688	2,147
대테러 부대 장비	9,471	9,471	1,083	△15	10,539	4,002	5,134	1,401
특수전 및 경호장비	1,430	1,430	257	△207	1,480	1,276	147	57
관측 및 방향탐지	846	846	0	201	1,047	1,046	0	1
기타장비	2,311	2,311	0	1,115	3,426	3,055	351	11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첫째, EOD로봇은 장비 중개업체 구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매년 전액 불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개발을 통한 무기체계 획득 또는 해외 직접구매 등 획득 방식 변경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331-302

2) EOD: Explosive Ordinance Disposal(폭발물 처리)

EOD로봇은 폭발물처리반(EOD)에서 폭발물과 급조폭발물(IED³⁾) 의심물체의 회수, 파괴, 식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사람이 수행하여 오던 폭발물 처리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는 로봇이다.

각 군은 위험지역의 인원을 대체하는 핵심 장비인 EOD로봇에 대한 소요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운용되고 있는 EOD로봇은 2012년도 도입된 29대에 불과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획득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2018~2019년도 EOD로봇 획득사업 집행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8년	3,308	0	△2,481	827	0	827	0
2019년	5,249	827	△304	5,772	0	4,947	827

자료: 국방부

이에 따라 2018년 예산안에 3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모든 군 및 해병대에서 EOD로봇 획득사업의 계약지연이 발생하였고, 공군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개업체 구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선금지급 제한⁴⁾에 해당되어 예산현액 8억 2,7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다. 한편, 2019년 예산안에 5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계약업체의 납기 미준수 및 납품 지연으로 49억 4,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공군의 경우 당초 구매하려고 했던 EOD로봇 사업을 취소하여 8억 2,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0년 5월 현재 EOD로봇 사업은 장기간 납품 지체에 대한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2019년도 사업이 완전 취소되었으며, 이월액을 포함한 관련 예산은 전액 불용될 예정이다.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폭발물 처리 업무를 대체하는 EOD로봇의 조속한 획득이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업체의 반복되는 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장기간 획득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개업체를 통한 해외구매 방

3) IED: Improvised Explosive Device(급조 폭발물)

4) 장비가 중개업체 구매로 획득되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34조(선금의 지급)에 따라 선금지급이 불가능하다.

식을 연구개발을 통한 무기체계 획득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해외 직접구매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구매방식 변경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화력장비 사업 중 위리어플랫폼 장비는 상용품목 조달로 추진되었으나, 조달계약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계약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집행부진 및 납품일정 지연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장비 획득 방식을 결정할 때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달 및 계약관련 수요군과 방사청이 긴밀히 협업할 필요가 있다.

위리어플랫폼은 육군의 기본 전투 요소인 각개 전투원이 착용하는 피복·장구·장비로 구성된 기반 체계를 개선하여 전투력 및 생존성을 향상하기 위한 장비 및 물자 획득사업으로, 3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육군 위리어플랫폼 33개 품목 현황]

전투피복 (10개)	전투장구 (10개)	전투장비 (13개)
① 전투복	① 방탄복	① 조준경
② 전투화	② 방탄헬멧	② 표적지시기
③ 기능성 방한복	③ 전투조끼	③ 확대경
④ 전투우의	④ 응급처치키트	④ 차음헤드셋
⑤ 전투용장갑	⑤ 전투용배낭	⑤ 소음·소음기
⑥ 내의류	⑥ 전투용안경	⑥ 원거리 조준경
⑦ 방한화	⑦ 수통(카멜백)	⑦ 탄창
⑧ 동계작전모	⑧ 개인천막	⑧ 피아식별 IR
⑨ 방상내·외피	⑨ 침낭	⑨ 대검
⑩ 방한소품	⑩ 야전삽	⑩ 개인화기
		⑪ 야간투시경
		⑫ 방독면
		⑬ 개별통신장비

자료: 육군

구체적으로는 전투피복 10종, 전투장구 10종, 전투장비 13종으로 구성되며, 화력장비(획득) 세부사업에서는 전투장비 중 대검·탄창·표적지시기·조준경·확대경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019년도 화력장비(획득) 사업의 집행 실적을 보면, 위리어플랫폼 장비 획득에 편성된 예산액은 75억 8,800만원으로 21억 2,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28.0%에 그치고 있다. 집행 부진은 개인화기 조준경(21억 6,200만원) 및 고성능 확대경(17억 2,900만원) 미집행에 기인한 것으로, 관련 예산 대부분이 이월 또는 불용되었다.

[2019년도 화력장비(획득) 사업 내 위리어플랫폼 장비별 편성 및 집행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개인화기 조준경	2,162	0	1,752	410
고성능 확대경	1,729	0	0	1,729
전술레이저 표적지시기	2,435	1,555	880	0
원거리 조준경	186	131	55	0
특수작전용 칼	442	437	0	5
계	7,588	2,123	2,687	2,144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하여 육군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장비의 구매방식이 변경되어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한다.

2018년도 육군은 미군에서 사용중인 해외품과 국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상용품으로 우수상용품 시범사용⁵⁾ 절차를 진행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 제품도 시범사용 간 도출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할 경우 해당 상용품이 군사용으로 적합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판로지원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육군은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률 향상 측면에서는 품질과 생산성이 검증된 해외품 도입이 유리하나,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확대되는 군수요 충족을 위한 생산 인프라 구축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019년 예산 편성시 동 장비를 상용품 구매 방식⁶⁾으로 획득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5)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9조(상용품 시범사용 품목 발굴) ① 군수품의 상용화 확대와 민간 우수 기술·제품의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량의 상품을 시범사용(별표 2) 할 수 있다.

1. 신규 군수품의 획득을 위해 소요결정 전 시범사용이 필요한 품목
2. 국방규격품을 상용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범사용이 필요한 품목
3. 운용 중인 상용품목 중에서 성능이 더 우수한 상용품으로 대체 검토 시 운용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는 품목

6)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1조(전력지원체계 구매) ③ 군수품 상용화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그런데 2019년 구매절차 진행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은 해당 장비의 경우 실제 전투상황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므로 군 납품에 적절한지 여부를 시험평가를 통해 검증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우수상용품 시범사용에 따른 상용품 구매가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은 군수조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획득방법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방식에 따라 군사요구도 확정(3월), 조달의뢰(4월)를 거쳐 사업 공고(5월)하였다. 원거리조준경과 레이저 표적지시기는 시험평가에 합격하여 계약이 체결(12월)되었으나 개인화기조준경과 고성능확대경은 1차 구매시험평가(9월~11월) 결과, 응찰 업체(상용품 생산 업체와 동일한 업체)가 제시한 장비의 규격과 사양이 군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시험평가에서 불합격함에 따라 재입찰공고(12월)하게 되었으며 다시 제안서 평가 및 구매시험평가(2020년 1월~2월)를 거쳤다.

업체가 제작한 시제품이 군 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2020년 3월이며, 2020년 5월 현재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육군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비 획득 시 장비의 목적과 상용품 구매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조달 및 계약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과의 협업 등을 통해 적절한 구매방식을 결정하는 등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호의 우수 상용품을 시범 사용할 수 있다.

1. 신규 획득 품목
2.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 품목
3. 상용품 대체 품목

가. 현 황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군 전투력 보장 및 장병 복지향상을 위한 각 군 주도의 군 피복, 군용장구, 병참·교육훈련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군수정책지원¹⁾의 내역사업이다. 국방부가 2019년도 동 사업에 편성한 예산액은 47억 3,600만원으로, 18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28억 3,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군수정책지원	9,891	9,891	414	0	10,305	6,586	554	3,165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4,736	4,736	227	△17	4,945	1,841	267	2,837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과제 무응찰로 인한 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과제 기획 전 민간의 기술수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개발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년도 과제의 경우 1차연도 편성액을 소액만 반영한 후 계약 상황에 따라 2차연도 예산 반영 규모를 조정하는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전력지원체계²⁾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341-301

2)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구분) 무기·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은 다음

을 투입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9년의 경우, 예산현액 49억 4,500만원 중 18억 4,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7.2%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5년	6,010	315	0	6,324	3,775	1,732	818	59.7
2016년	4,856	1,732	△233	6,355	4,179	586	1,590	65.8
2017년	3,922	586	△217	4,361	2,366	364	1,631	54.3
2018년	3,276	364	0	3,640	1,910	227	1,503	52.5
2019년	4,736	227	△17	4,945	1,841	267	2,837	37.2

자료: 국방부

동 사업의 낮은 집행률은 신규 과제 중 상당수가 무응찰로 인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기인한다. 2019년도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신규 과제 예산 31억 9,800만원 중 무응찰로 인하여 전액 불용된 5개 과제의 과제비는 11억 2,400만원이다.

[2019년도 전력지원체계연구개발 신규과제 중 무응찰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군	사업명	총사업비	2019년		2020년
			편성	집행	편성
육군	KCTC 교전훈련장비 통합개발	1,750	220	0	500
	소화기 소음기 성능개량	501	176	0	176
	105mm 전차 도비방지 연습예광탄	1,777	150	0	150
	155mm 포병연습탄	3,002	150	0	150
공군	비상항공등화세트 성능개선	468	428	0	40
계			1,124	0	1,016

자료: 국방부

각 호와 같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다.

1. “무기체계”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을 말한다.
2. “전력지원체계”란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국방부는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이 무기체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다품종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주로 응찰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력의 한계로 인하여 개발실패 시 받게 되는 국가계약법상 불이익(지체상금, 부정당제재)을 우려하여 응찰하지 않거나, 응찰하는 경우에도 제안서 평가에서 탈락하는 등의 사유로 불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무응찰로 인하여 미집행된 과제는 당해연도 집행 부진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군수품 성능개선 일정 전체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9년도 미집행된 과제는 모두 다년도 과제로서 2020년도 예산안에 5개 과제에 편성된 2차년도 과제비 총 10억 1,6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2020년도부터 해당 과제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1년 가량 연기되며 이는 군수품 성능개선 지연으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

반복되는 무응찰로 인한 집행을 저하는 예산의 비효율과 사업의 효과성 저하를 야기한다는 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의 궁극적 목적인 군수품 성능개선의 지연을 가져온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과제 기획 단계에서 민간 기업의 기술 수준을 감안하여 과제를 선정한 후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다년도 과제비 반영시 1차년도 예산의 비중을 낮추어 소액으로 편성하는 한편 차년도 예산 요구시에도 신규 과제의 계약 체결 여부를 고려하여 2차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금은 군무원 및 공무원의 연금지급에 소요되는 국가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방부의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 부담금)¹⁾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액은 2,127억 5,6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청 공무원연금부담금²⁾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액은 82억 1,0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공무원연금기금전출금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무원연금 부담금 (국방부)	212,756	212,756	0	0	212,756	212,756	0	0
공무원연금 부담금 (방위사업청)	8,210	8,210	0	0	8,210	8,210	0	0

자료: 국방부, 방위사업청

나. 분석의견

일반회계의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금은 국방부·방위사업청을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및 회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방부·방위사업청이 편성·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금은 인사혁신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8101-883

2) 코드: 일반회계 8810-880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금은 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인 공무원연금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 전체 회계별 공무원연금부담금 전출 사업을 살펴보면, 특정 목적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기금을 제외하면 일반회계의 경우 국방부·방위사업청을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에서 통합하여 편성·집행하고 있다.

[2019년도 회계별 공무원연금부담금 전출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명	소관	예산액
일반회계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2,774,653
		국방부	212,756
		방위사업청	8,210
기타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대법원	9,72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306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부	18,28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216
	조달특별회계	조달청	8,488
	우편사업특별회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4,301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	2,455
	국립목포병원	"	566
	국립마산병원	"	618
	국립정신건강센터	"	2,690
	국립나주병원	"	1,273
	국립부곡병원	"	1,162
	국립춘천병원	"	778
	국립공주병원	"	858
	경찰병원	경찰청	4,684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청	1,179
	특허청	특허청	14,639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59
	국립과천과학관	"	496
기금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140
계			3,330,84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금은 회계·기금 간 거래로서 총지출 규모를 산출할 때 예산 총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금으로 인해 국방부·방위사업청의 경우 타 부처에 비교할 때 총계와 총지출 규모의 차이 요인이 추가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국방분야 공무원·군무원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무원 규모는 대폭 확대³⁾될 예정으로 전출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2020~2024년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향후 국방분야의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금 규모는 매년 확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국방분야 공무원·군무원 인원 및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연도	국방부			방위사업청	
	인원		공무원 연금기금 전출금	인원	공무원 연금기금 전출금
	공무원	군무원		공무원	
2017	1,044	26,496	210,899	1,130	7,962
2018	1,031	26,919	177,565	1,145	7,775
2019	994	31,655	212,756	1,155	8,210
2020	1,006	34,928	238,717	1,155	8,543

자료: 국방부, 방위사업청

[2020~2024년도 국방중기계획 상 공무원연금부담금 전출금 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방부	238,717	255,100	279,334	290,508	302,138
방위사업청	8,543	9,343	9,530	9,720	9,915

주: 2020년은 실제 편성된 예산액이며, 2021~2024년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것임

자료: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부는 국방예산은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금도 소관 부처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이 공무원·군무원 운영에 따른 지출로 보아 직접 편성·집행해왔으나 다른 부처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인사혁신처에서 일괄 편성·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3) 국방개혁 2.0은 비전투분야 직위의 민간인력 대체를 위하여 군무원 규모를 4만 4,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국방부는 국방예산의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금 사업을 인사혁신처로 이관하여 편성·집행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장병내일준비적금사업은 현역병에 대한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기간 중 가입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금리 인센티브(1%p)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지원¹⁾의 내역사업이다. 국방부는 2019년도 장병내일준비적금사업의 예산액 10억 4,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고 전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보건복지지원	7,216	7,216	90	△1,312	5,993	5,671	30	293
장병내일준비 적금사업	1,043	1,043	0	△1,043	0	0	0	0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사업이 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무산되었으므로 당연히 예산 전액을 불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하여 타 사업에 집행하였다.

2019년도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장병내일준비적금사업은 현역병에 대한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기간 중 가입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금리 인센티브(1%p)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242-303

동 사업은 국방부의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어, 2018년 8월 28일 국방부·병무청·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 간 MOU를 체결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하고, 병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병역의무자(현역병·상근예비역·전환복무자·사회복무요원)로 하여금 해당 상품에 가입할 경우 만기 시 이자소득 비과세와 금리 인센티브(1%p)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주요 내용]

- 가입대상: 현역병·상근예비역·전환복무자·사회복무요원
- 지원내용: 목돈마련 희망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정부지원 1%p 금리 인센티브 지급
- 월 납입한도: 은행별 20만원, 개인별 최대 40만원
- 가입기간: 6개월 이상~24개월 이하(의무복무기간 내로 제한)

자료: 국방부

그러나, 정부재정으로 1%p 금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동 사업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개정이 연내 이루어지지 않아 2019년 예산 10억 4,300만원 전액을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당연히 불용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 적절하나, 국방부는 동 예산을 진료지원(2231-301) 사업의 현역병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 전용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용감액		금액	전용증액		사유
	세부사업	비목		세부사업	비목	
전용	보건복지지원 (2242-303)	이차보전금 (320-05)	1,043	진료지원 (2231-301)	기타보전금 (310-04)	현역병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지원

자료: 국방부

향후 국방부는 법 개정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액 불용하는 것이 당연한 예산에 대하여는 불용 처리하도록 하고, 이·전 용을 통해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장학사업¹⁾은 전방·격오지근무 등 군인의 직업 특성으로 인한 군인자녀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배려로 군인자녀 중 대학 신입생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방부가 2019년도 장학사업에 편성한 예산액은 24억원으로, 22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장학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장학사업	2,400	2,400	0	0	2,400	2,270	0	130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일회성 장학금 지원보다는 군 자녀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장학사업은 1994년부터 추진되어 온 계속사업으로, 잦은 지역 이동 및 전방·격오지근무 등 군인의 직업 특성으로 인한 군 자녀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배려하고자 대학에 진학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획득한 군인 자녀에게 1회에 한하여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6년까지는 군인 자녀 중 모든 고교 졸업자에 대하여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2017년부터는 대학 신입생 중 b0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군인복지기금 2239-646

국방부는 2019년에 2,270명의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각 100만원씩 총 22억 7,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2016~2020년도 장학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연도	예산	집행	신청인원	지급인원	지급대상
2016	4,737	3,996	3,996	3,996	고교졸업생 전체
2017	3,000	1,558	1,691	1,558	대학신입생 성적우수자 (기준: 학점 b0 이상, 최초 1회 지급)
2018	2,700	2,129	2,236	2,129	상동
2019	2,400	2,270	2,387	2,270	상동
2020	2,400	-	-	-	상동

자료: 국방부

군 자녀의 경우 일반에 비하여 주거지를 자주 이동하는 등 학업 수행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군인복지기금을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향후 내용을 개편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 사업이 최초로 추진되었던 1990년대와 달리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에서 대학 진학이라는 결과에 대한 격려 차원의 보상으로서 일회성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대학 진학률 현황]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진학률	27.1	51.4	68.0	82.1	79.0	70.8	70.4

자료: e-나라지표

둘째, 일회성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만 구성된 동 사업은 군인 자녀가 겪는 학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학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군인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학습지원의 핵심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군인 자녀들에게 도시지역 학생들과 유사한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²⁾

국방부는 군인복지기금의 장병격려사업 중 일부 예산을 군 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나, 해당 사업의 경우 군 가족 힐링캠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규모 위탁사업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방부는 온오프라인 멘토링, 1:1 맞춤형 온라인교육 등 군 자녀의 학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내용을 발굴하여 군 자녀의 교육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

2) 「군인자녀 학습지원을 위해 더 노력해야」, 국방논단, 제1783호, 2019.12.23., p. 4

가. 현 황

수도병원 보강사업은 국군수도병원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을 보강하고 기능을 재배치하는 사업으로, 의무시설개선¹⁾의 내역사업이다. 2019년도 수도병원 보강사업의 예산현액은 82억 2,400만원 중 33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48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의무시설개선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의무시설개선	16,432	16,432	441	△93	16,780	10,937	5,655	189
수도병원 보강사업	8,509	8,509	428	△712	8,224	3,319	4,896	9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2018년에 군 시설사업에 새로 적용된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에 대한 소요기간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수도병원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상당 부분의 예산 이월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시설사업 추진 시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연부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수도병원 보강사업은 총 사업비 354억 400만원 규모로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동 사업의 설계 지연으로 인하여 4억 2,800만원이 2019년도 예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231-305

산으로 이월되었다. 2019년도에는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82억 2,400만원 중 48억 9,6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률이 40.4%에 그치는 등 집행이 부진하였으며, 계획 대비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병원 보강사업 연도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8년	1,384	1,384	0	△299	1,085	657	428	0
2019년	8,509	8,509	428	△712	8,224	3,319	4,896	9
2020년 (6월 말)	9,897	6,397	4,896	712	12,005	5,604	0	0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이처럼 수도병원 보강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²⁾ 및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기간 소요에 따라 시설 공사 발주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2017년도까지는 군 시설사업의 경우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지침 개정²⁾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군 시설사업도 설계적정성 검토의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못하여 사업 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된 것이다.

국방부는 수도병원 보강사업의 설계기간을 당초 12개월로 예상하였으나, 설계적정성 검토로 인하여 8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설계기간이 총 20개월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던 사업 2차년도인 2019년도에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2) 설계적정성 검토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최종설계의 단가까지, 각 설계단계마다 작성된 설계도서를 조달청 전문위원이 종합평가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규모 및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이다.

[수도병원 보강사업 계획 변경 현황]

구분	2018년 당초 계획	2020년 현재 계획
총사업비	34,825백만원 - 설계비 1,457백만원 - 공사비 31,458백만원 - 기타 부대비용 1,910백만원	35,404백만원 - 설계비 1,228백만원 - 공사비 32,509백만원 - 기타 부대비용 1,667백만원
설계기간	2018. 3월 ~ 2019. 3월	2018. 3월 ~ 2019. 11월
공사기간	2019. 4월 ~ 2020. 12월	2019. 12월 ~ 2022. 4월
완공시점	2020. 12월	2022. 4월

자료: 국방부

동 사업 이외에도 국방부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포함되는 대규모 시설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는 점, 2017년 지침 개정시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확대³⁾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역시 확대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국방부는 시설사업의 연부액 편성 시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각 연차별로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고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3) 2018년 1월 1일 시행된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병영생활관 및 군관사 신축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업비 증액과 기간연장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초	변경
제3조(관리대상 사업)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양산 연구 개발·토목 및 정보화사업 2.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신 설) 3. 기획재정부 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사업	제3조(관리대상 사업)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양산 연구개발·토목 및 정보화사업 2.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3. 병영생활관·군관사 신축사업 (매년 예산에 신규 반영된 병영 생활관·군관사 신축사업 금액 합계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 각각 하나의 총사업비로 관리한다.) 4. 기획재정부 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사업

가. 현 황

관서운영경비는 「국고금관리법」상 국고금 지출원칙의 특례로서,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로 그 성질상 원칙적인 지출절차 규정에 따라 지출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출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¹⁾

나. 분석의견

첫째, 육군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상 관서운영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예산을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2019년도 육군의 관서운영경비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용역비(210-14), 민간경상보조(320-01) 등 총 36억 3,140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비목은 「국고금관리법」 제24조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국고금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운영비 및 민간이전 목)]

예산과목	용도
운영비(210)	건당 500만원이하의 경비 (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u>일반용역비</u> , <u>관리용역비</u> 는 <u>제외</u>
민간이전(320)	구호 및 교정비

자료: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관서운영경비 지급 부적정 사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비목	내용	지급액
진료지원 (2231-301)	일반용역비 (210-14)	장병 민간위탁진료비 및 입영 신체검사 혈액검사비	644.1
자기계발교육 (2432-308)	민간경상보조 (320-01)	군 특성화 고등학교 기술인력 육성지원비	2,987.3
계			3,631.4

자료: 국방부

둘째, 국방부 및 각 군은 관서운영경비의 건당 집행 가능한 최고금액 제한(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다.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한정하고,²⁾ 집행 가능한 최고금액을 원칙적으로 건당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등³⁾ 그 “범위”와 “금액”

2)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 시험연구비 중 연구개발비, 학교운영비, 위탁사업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제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관서운영경비가 일반적인 지출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이다.
2019년도 국방부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현황을 보면, 건당 집행 가능한 최고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관서운영경비 집행 사례]

(단위: 원)

구분	세부사업	비목	건명	집행액
국방부 및 소속기관	주요기관 기본경비 (7111-254)	일반수용비 (210-01)	소모성 물품 구매 비용	5,023,500
	정훈문화활동 (2435-301)	일반수용비 (210-01)	정훈교육 프로그램(장병강연대회) 방송 제작 및 경연대회 집행 비용	7,542,000
	난방연료 (2335-302)	유류비 (210-08)	2019년 2월 난방용(실내등유) 사용 대금	5,397,000
		유류비 (210-08)	2019년 12월 난방용(실내등유) 사용 대금	6,997,000
육군	자상방위 기본경비 (7111-251)	관서업무추진비 (240-02)	소모성 물품 구매 경비	11,150,000
		기타운영비 (210-16)	소모성 물품 구매 경비	10,550,000
		급식비 (210-04)	전반기 전군 인사계선 대토론회 경비	6,160,000
		급식비 (210-04)	제5회 육군력 포럼 경비	9,250,000
		일반수용비 (210-01)	국가배상 신청사건에 대한 측량수수료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집행한 비용	5,612,200
		일반수용비 (210-01)	소모성 물품 구매 경비	5,400,000
		관서업무추진비 (240-02)	정책사업 업무추진 경비	5,800,000
		관서업무추진비 (240-02)	주한 외국무관단 초청행사 간 소요 경비	5,118,500
	장병복무적응지원 (2439-304)	일반수용비 (210-01)	자살사고 예방 교관 양성 프로그램 진행 업체에 지급한 경비로 한국자살예방 협회에 집행한 비용	5,750,000
		일반수용비 (210-01)	”	5,290,000

1.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3. 특수활동비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단위: 원)

구분	세부사업	비목	건명	집행액
		일반수용비 (210-01)	”	5,060,000
		일반수용비 (210-01)	”	5,030,000
	부대운영지원 (7131-315)	일반수용비 (210-01)	지상군페스티벌 행사 간 군견시범 재료비 구매 비용	5,565,000
		일반수용비 (210-01)	지상군페스티벌 행사 간 소모성물품비 구매 비용	6,400,000
	보건복지지원 (2242-303)	관서업무추진비 (240-02)	양성평등계선 담당자 대토론회 소요 경비	8,951,000
해군	국방행사지원 (7131-313)	관서업무추진비 (240-02)	해양력심포지엄 행사경비	22,885,000
		기타운영비 (210-16)	해양력심포지엄 행사준비 경비	10,113,000
		관서업무추진비 (240-02)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준비 및 행사경비	5,900,000

자료: 국방부

향후 국방부는 예산 집행 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고금관리법」 등 국고 출납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군무원 인건비¹⁾ 사업은 군무원의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2019년도 군무원 인건비 사업의 예산현액 1조 7,774억 7,000만원 중 1조 7,472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302억 5,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군무원 인건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군무원 인건비	1,780,591	1,780,591	0	△3,121	1,777,470	1,747,219	0	30,251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군무원 신규채용이 연례적으로 계획 대비 부진하고, 군무원의 중도퇴직 비율이 높아 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충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군무원 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국방개혁 2.0’은 병력 중심 군 구조를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개편하기 위하여 병력 규모를 임기 내에 현 61.8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축하되 병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투부대의 간부보강, 예비전력 내실화, 비전투부대의 민간인력 확대 및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방인력 구조로의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102-151

특히, 간부 정원 및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우리 군이 필요한 전투부대의 병력을 충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의 직위에 편성된 군인 정원을 신규 무기 전력화 등에 따라 신설되는 전투 직위에 할당하고, 비전투분야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그런데, 2017~2019년 군무원 운영 현황을 보면, 군무원 운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7~2019년 군무원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인원	정원(A)	26,429	26,919	31,655
	현원(B)	25,696	25,528	29,093
	운용률(B/A)	97.2%	94.8%	91.9%
예산	군무원인건비 예산(C)	1,606,186	1,653,272	1,777,470
	군무원인건비 집행(D)	1,605,441	1,651,675	1,747,219
	집행률(D/C)	99.9%	99.9%	98.3%

자료: 국방부

이는 ‘국방개혁 2.0’의 국방인력구조 재설계에 따라서 군무원 정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군무원 신규 채용인원은 매년 계획 대비 미달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채용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운용률 하락폭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군무원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인원(A)	1,749	1,624	6,109	5,106
채용인원(B)	1,423	1,354	5,476	-
미달인원(A-B)	326	270	633	-
채용률	81%	83%	89.6%	-

자료: 국방부

또한, 군무원 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군무원 퇴직자 중 중도 퇴직자 비율이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용 후 3년 내 퇴직자 비율도 전체 퇴직자 중 18%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방인력구조 개편 계획이 군무원을 통하여 비전투 직위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퇴직 사유를 분석하여 군무원의 중도 이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 간 군무원 퇴직 현황]

(단위: 명)

구분	총 퇴직자 (A)	정년퇴직자 (B)	중도퇴직자 (C=A-B)	임용 후 3년 내 퇴직자
2017년	993 (100%)	518 (52%)	475 (48%)	121 (12%)
2018년	936 (100%)	442 (47%)	494 (53%)	98 (10%)
2019년	1,236 (100%)	596 (48%)	640 (52%)	224 (18%)

자료: 국방부

‘국방개혁 2.0’ 1차년도인 2019년은 민간인력 증원이 대폭 이루어진 첫 해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정원 확대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민간인력 증원 및 비전투직위 대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식별하고, 원활한 인력구조 전환 및 조직 안정을 위해 조직·인사·근무제도 전반에 걸친 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특수식량¹⁾ 사업은 전시 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전투식량 등 비상 급식품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방부는 특수식량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234억 5,600만원 중 205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28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19회계연도 특수식량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특수식량	22,057	22,057	1,399	0	23,456	20,566	2,890	0

자료: 국방부

특수식량은 총 5가지로 물에 데워 취식하는 전투식량Ⅰ형, 뜨거운 물을 부어 취식하는 전투식량Ⅱ형, 자체발열체로 데워 취식하는 즉각취식형, 건조된 식량을 즉시 취식할 수 있는 특전식량, 물을 부어 복원 후 취식하는 아웃도어 형식의 S형으로 구분된다.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방위사업청과 협의를 강화하여 전투식량이 구매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조달될 수 있도록 하여 전투식량의 비축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예산편성 시 특수식량 인가량을 기준으로 재고량 및 순환급식량 등을 고려하여 특수식량별 수량을 결정하고, 이후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조달계획을 수립한다.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231-303

그런데, 2019년 말 특수식량 품목별 구매·보유수량 및 비축률 현황을 보면, 일부 품목에서 비축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9년도 품목별 편성·집행 및 비축률 현황]

(단위: 원, 개, 백만원, %)

구분	편성			집행			비축률
	단가	수량	예산액	단가	수량	집행액	
전투식량 I형	5,360	467,655	2,507	5,224	441,970	2,309	95.3
전투식량 II형	4,828	710,759	3,432	5,595	258,481	1,446	68.3
즉각취식형	7,953	1,351,825	10,751	7,900	1,302,147	10,287	99.9
전투식량 S형	2,781	1,546,427	4,301	2,910	1,354,439	4,058	58.7
특전식량	4,733	204,572	968	4,652	208,134	968	86.8
계		4,281,238	21,958		4,085,680	20,467	85.0

주: 비축률은 2019년도 말 기준

자료: 국방부

먼저 전투식량II형의 경우, 2019년도 편성 수량은 710,759대이나 구매 수량은 258,481대에 불과하여 연도 말 보유 수량 기준 비축률이 6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5월 전투식량II형 생산업체와 방사청 간 입찰관련 소송(낙찰자지위확인소송)이 있었고, 2019년 8월 업체 승소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업체에서 연내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여 조달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전투식량S형의 경우, 2019년 말 비축률이 58.7%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투식량S형의 경우 타 전투식량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신형 전투식량이며 유통기한이 1년으로 가장 짧다. 2018년도 최초 도입에 따른 조달 준비 과정에서 구매 계약이 지연되어 연도 말 일시에 납품이 이루어졌고, 유통기한이 도과되기 전 해당 수량을 소진하는 과정에서 연도말 비축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 것이다.

향후 국방부는 조달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등과 협의를 강화하는 등 예산 편성시 수립한 구매 계획에 따라 전투식량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비축률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방위사업청
(203~268 비공개)

병무청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억 600만원이며, 16억 3,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5.8%인 2억 5,900만원을 수납하고 13억 7,800만원은 미수납되었다.

[2019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06	206	206	1,637	259	1,378	0	15.8

자료: 병무청

2019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293억 2,000만원이며, 이 중 95.3%인 2,185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5,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8억 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28,329	228,329	229,320	218,562	953	9,804	95.3

자료: 병무청

나.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병무청의 자산은 3,670억 800만원, 부채는 99억 500만원으로 순자산은 3,571억 3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56억 6,200만원, 일반유형자산 3,499억 2,500만원, 무형자산 42억 5,5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71억 6,6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0억 4,200만원(0.3%) 감소하였다. 이는 감가상각 등에 따른 무형자산 27억 8,000만원 감소, 임차보증금 유동성대체금액 등에 따른 유동자산 10억 8,2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43억 4,500만원, 장기차입부채 55억 2,600만원, 장기충당부채 3,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8,600만원(0.9%)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금액 등에 따른 유동부채 2억 5,600만원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병무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367,008	368,050	△1,042	△0.3
Ⅰ. 유동자산	5,662	6,744	△1,082	△16.0
Ⅱ. 투자자산	0	0	0	0.0
Ⅲ. 일반유형자산	349,925	348,535	1,390	0.4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4,255	7,035	△2,780	△39.5
Ⅵ. 기타비유동자산	7,166	5,736	1,430	24.9
부 채	9,905	9,819	86	0.9
Ⅰ. 유동부채	4,345	4,089	256	6.3
Ⅱ. 장기차입부채	5,526	5,634	△108	△1.9
Ⅲ. 장기충당부채	35	97	△62	△63.9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0
순 자 산	357,103	358,230	△1,127	△0.3
Ⅰ. 기본순자산	249,142	249,142	0	0.0
Ⅱ. 적립금 및 잉여금	25,897	27,149	△1,252	△4.8
Ⅲ. 순자산 조정	82,064	81,939	125	0.2

자료: 병무청

병무청은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392억 4,3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315억 6,000만원, 관리운영비 2,078억 9,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2억 1,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78억 8,800만원(3.4%) 증가한 2,392억 4,3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및 경비 등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69억 3,8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3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병역자원선발 프로그램(188억 2,200만원)과 보충역복무지원 프로그램(107억 5,900만원), 병역자원충원 프로그램(19억 7,9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260억 600만원과 경비 818억 9,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병무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1,560	30,430	1,130	3.7
가. 프로그램 총원가	31,560	30,430	1,130	3.7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0
II. 관리운영비	207,897	200,959	6,938	3.5
III. 비배분비용	0	172	△172	△100.0
IV. 비배분수익	213	207	6	2.9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39,243	231,355	7,888	3.4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239,243	231,355	7,888	3.4

자료: 병무청

병무청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3,582억 3,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571억 3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1억 2,700만원(0.3%)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2,392억 4,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1억 2,5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2,379억 9,1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2,385억 2,3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5억 3,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1억 2,5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병무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358,230	359,910	△1,680	△0.5
II. 재정운영결과	239,243	231,355	7,888	3.4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37,991	228,936	9,055	4.0
IV. 조정항목	125	739	△614	△83.1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357,103	358,230	△1,127	△0.3

자료: 병무청

병무청의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입영 前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홍보비 부분 감액이 있다.

’19년도에 ‘입대 전 병역진로 설계’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다수 입영대상자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임을 고려해 볼 때 TV나 옥외광고보다는 유튜브와 인터넷 포털 등을 활용하는 것이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보므로, 언론 등 미디어 홍보 예산 8,100만원을 감액하였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입영문화제 사업 ②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 ③ 질병사유 병역하향판정자 여비 지원 ④ 심리검사용 노후 PC 교체 사업이 있다.

입영문화제는 입영에 대한 부담감 해소 및 입영자의 사기진작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미 실시하고 있는 전방부대에 대한 확대 개최와 입영문화제의 품격 제고를 위한 예산 2억 3,300만원²⁾과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선정하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7,000만원³⁾이 각각 증액되었다. 또한, 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 상향자 뿐 아니라 병역처분변경 하향자도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 미확보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보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 2억 1,300만원⁴⁾이 증액되었다. 마지막으로 병역의무자의 안정적인 심리검사와 원활한 병역판정검사 진행을 위해 노후화된 심리검사용 PC 교체를 위한 예산 3억 9,900만원⁵⁾이 증액되었다.

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 2018.11.
국회 국방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11

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 2018.11.
국회 국방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11

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 2018.11.
국회 국방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11

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 2018.11.
국회 국방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11

병무청은 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병역처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② 군 소요 적정 충원 및 병력동원업무 수행, ③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 및 복무관리 강화, ④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자긍심 고취 등을 2019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현행 ‘이동거리 기준’의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기준은 그동안의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과다 또는 과소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동거리를 수작업으로 산정함에 따라 정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병무청은 단기적으로는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이동거리를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비 지급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4년간 입영 후 귀가자 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입영인원의 약 6%에 해당하는 인원이 귀가 조치되고 있으며, 2019년에도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 조치된 인원이 11,987명(입영인원의 5.1%)에 이르고 있으므로, 병무청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의 운영 일원화를 위하여 병역법 개정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및 복무부실 등 일탈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복무지도관 증원 등을 통해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인력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 2018.11.
국회 국방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11

II

주요 현안 분석

1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의 문제점

가. 현 황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¹⁾은 병역의무자 여비, 보상치료비, 사회복지요원의 건강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의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325억 8,600만원 중 290억 4,800만원(89.1%)를 집행하고 35억 3,800만 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병역의무자지원	32,640	32,640	25	△79	32,586	29,048	89.1	0	3,538

자료: 병무청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7135-314

1-1.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관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병역의무자 여비는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거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등 병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병무청은 2019년 병역의무자 여비 예산액 260억 6,100만원 중 237억 7,700만원(91.2%)를 집행하고 22억 8,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병역의무자 여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병역의무자지원	32,640	32,640	25	△79	32,586	29,048	89.1	0	3,538
병역의무자 여비	26,061	26,061	0	0	26,061	23,777	91.2	0	2,284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현행 ‘이동거리 기준’의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기준은 그동안의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과다 또는 과소지급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동거리를 수작업으로 산정함에 따라 정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병무청은 단기적으로는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이동거리를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비 지급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병무청훈령인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5조 제1항2)에 의하면 지방병무청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 2)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5조(여비지급 금액의 산정) ① 지방병무청장이 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매년 병무청장이 정하는 의무자의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장이 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매년 병무청장이 정하는 의무자의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여비지급 금액의 산정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기준’에서는 교통비는 소재지 기준으로 거리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비는 소재지 기준으로 거리별 차등 지급하되, 병역형태별 거리기준별 지급금액은 상이하다. 그리고 숙박비는 소재지 기준으로 400km 초과 및 도서지역인 경우 지급하되, 병역판정검사, 모집신검, 모집전형의 경우에는 200km 초과인 경우부터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기준]

구분	병역판정검사 모집신검, 모집전형	현역, 모집입영 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 전문·산업요원 공보의 등	병력동원훈련
소재지 30km까지	1식+7,000원	3,500원	3,500원	3,500원
30km초과 ~60km까지	1식+교통비(왕복)	교통비	교통비	1식+교통비 31~40km : 4,500원 41~50km : 5,500원 51~60km : 6,500원
60km초과~ 120km까지	"	1식+교통비	1식+교통비	1식+교통비
120km초과~ 200km까지	2식+교통비(왕복)	"	"	"
200km초과~ 300km까지	3식+1박+교통비(왕복)	"	"	"
300km초과~ 400km까지	"	2식+교통비	2식+교통비	2식+교통비
400km초과 및 도서지역	"	3식+1박+교통비	3식+1박+교통비	3식+1박+교통비

자료: 병무청

② 여비지급 금액의 산정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와 같이 현행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기준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모두 병역의무자의 소재지부터 도착지까지 측정한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동거리의 측정은 시외(고속)버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고속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 등 변화된 교통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병역의무자 여비 산정 방법]

-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동거리 측정(구간1+구간2+구간3)
 - 구간1: 병역의무자 주민등록 시·구·읍·면부터 승차 고속(시외)버스터미널까지 거리 측정
 - 구간2: 승차 고속(시외)버스터미널부터 하차 고속(시외)버스터미널까지 거리 측정
 - 구간3: 하차 고속(시외)버스터미널부터 입영부대 등 최종도착지까지 거리 측정
- 측정한 이동거리로 여비 산정
 - 교통비 : 측정한 이동거리×교통비 단가(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단가 116.14원/km)
 - 식비 : 이동거리별 지급기준 적용(공무원여비규정 준용, 1식 6천원)
60km 초과~300km까지 1식, 300km 초과~400km까지 2식, 400km초과 3식
 - 숙박비 : 400km 초과 및 도서지역에 한해 1박 지급(공무원여비규정 준용, 1박 5만원)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여비지급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단 대중교통 수단의 교통실비와 실제로 지급된 교통비의 차액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그 차액은 평균 마이너스 13,000원에서 플러스 1,700원으로, 동원훈련과 병역판정검사는 지급교통비가 대중교통실비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된 반면, 현역모집, 특별보충·전환복무, 현역징집은 지급교통비가 대중교통실비에 비해 과소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교통비와 대중교통 실비 차액의 통계분석]

(단위: 천원)

병역이행 형태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병역판정검사	+0.2	+26	-55	8
사회복무	-2.7	+17	-75	15
특별보충·전환복무	-13.0	+30	-99	25
현역모집	-6.1	+27	-74	20
현역징집	-9.1	+34	-62	21
동원훈련	+1.7	+9	-27	2

자료: 2019년 병역의무자여비 지급체계 개선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반면에 숙박비의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아닌 이동시간 통계를 감안하면, 숙박비 지급 건들의 평균 이동시간은 3시간 25분에서 6시간 16분으로 나타나 숙박비 지급의 적정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비 지급 건의 대중교통 이동시간 통계]

(단위: 시:분)

병역이행 형태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사회복무	5:07	5:07	5:07	0:00
특별보충·전환복무	5:17	6:48	2:43	0:54
현역모집	5:37	7:11	3:36	0:54
현역징집	3:25	6:11	2:28	2:07
동원훈련	6:16	9:38	2:57	1:24

자료: 2019년 병역의무자여비 지급체계 개선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병역의무자 여비와 관련하여 병역의무자 여비 수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숙박비 20%, 식비 19%, 교통비 15% 순으로 여비지급 기준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통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³⁾

3) 2019년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목포대학생 중 병역의무자 여비 수령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병역이행을 위해 목적지(부대 등)까지 이동할 때 이동수단의 접근성, 편리성,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비 지급기준이 여전히 시외(고속)버스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병역의무자 여비 수령자(1천명)의 교통수단별 이용률]

이용수단	시외(고속)버스	시내 버스	택시	KTX	자가용	도보	비행기
이용률(%)	21	18	17	14	14	11	5

자료: 2019년 병역의무자여비 지급체계 개선 연구용역보고서

또한 현행 이동거리 기준의 병역의무자 여비는 지방청별 매년 수십만 건에 이르는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산출에 필요한 이동거리를 인터넷포털에서 수작업으로 검색하여 산정함에 따라 행정력의 과다 소모와 인터넷포털(다음, 네이버 등) 선택에 따라 동일구간 상이한 이동거리가 산출될 우려가 있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대중교통 이동거리 등 길찾기 정보를 자동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정확한 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현행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기준은 실제 병역의무자의 목적지까지 다양한 이동수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되고 있으며, 여비 지급 산출에 과다한 행정력의 소모와 이동거리 산출의 통일성과 정확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병무청은 단기적으로는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이동거리를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여비 지급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병역의무자의 여비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1-2. 법 개정을 전제로 한 목돈마련지원을 위한 보전금 예산 편성 후 불용 문제

가. 현 황

전환복무자 및 사회복무요원 목돈마련지원 사업은 병역의무자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전환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기간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에게 1% 금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병무청은 2019년도 예산액 6억 7,100만원 전액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전환복무자 및 사회복무요원 목돈마련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병역의무자지원	32,640	32,640	25	△79	32,586	29,048	89.1	0	3,538
전환복무자 목돈마련 지원	304	304	0	0	304	0	0.0	0	304
사회복무요원 목돈마련 지원	367	367	0	0	367	0	0.0	0	367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병무청은 법 개정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여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환복무자 및 사회복무요원 목돈마련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전환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기간 중 가입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금리 인센티브(1%p)를 지급하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동 사업은 국방부의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어 2018년 8월 28일 국방부, 병무청,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 간 MOU를 체결

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하고, 병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병역의무자(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사회복무요원)를 대상으로, 가입자에게는 만기 시 이자소득 비과세와 금리 인센티브(1%p)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주요 내용]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지원내용 : 목돈마련 희망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정부지원 1% 금리 인센티브 지급
 *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은행금리 5% 이상
 월 납입한도 : 은행별 20만원, 개인별 최대 40만원
 가입기간 : 6개월 이상~24개월 이하(의무복무기간 내로 제한)

그러나,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정부재정으로 1% 금리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자소득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¹⁾은 연내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정부재정으로 1% 금리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병역법」²⁾의 개정은 연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액 불용되었다.

특히 병역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인센티브 지원의 수혜대상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로 제한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가입여건이 되지 않는 병역의무자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가입자 간에도 가입금액에 따른 지원액의 차별이 발생하는 등 병역 의무자간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병무청이 2018년 5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실시한 목돈마련 지원사업 설문조사 결과³⁾, 2019년 소집해제예정자의 36.7%, 2020년 소집해제예정자의 35.4%가 가입을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전제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3.28.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1.6.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3) 병무청은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1,752명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환복무자의 경우 각 복무관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더욱이 병무청은 2014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법 개정을 전제로 ‘사회관심자원 집중관리시스템’을 신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사업비(1억 4,400만원)를 불용 처리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 바가 있음에도 또다시 법 개정을 전제로 목돈마련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은 대단히 부적정한 사례이다.

따라서, 병무청은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고 법 개정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의 운영 일원화 필요

가. 현 황

병역판정검사 사업¹⁾은 병역의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검사하여 병역 이행 가능 여부 및 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 등의 병역처분을 위한 판정검사로, 병무청은 2019년도 예산현액 184억 1,200만원 중 181억 1,200만원(98.4%)을 집행하고 3억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병역판정검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병역판정검사	18,412	18,412	0	0	18,412	18,112	98.4	0	300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병무청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입영 전(병역판정검사)과 입영 후(입영신체검사)의 신체검사 운영 일원화를 위하여 병역법 개정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00-301

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키도록 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신체검사 비교]

종 류	실시 시기	검사주체	결과 처분	근 거
병역판정검사	19세	지방병무청장	신체등급 판정 및 병역처분	「병역법」 제1조
입영신체검사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	입영부대의 장	귀가여부 결정 *신체등급 판정 없음	「병역법」 제7조

자료: 병무청

그런데 최근 4년간 입영 후 귀가자 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입영인원의 약 6%에 해당하는 인원이 귀가 조치되고 있으며, 2019년에도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 조치된 인원이 11,987명으로 입영인원의 5.1%에 이르고 있다.

[최근 4년간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인도 인원	236,049	236,529	242,094	278,780
귀가 인원	11,987	14,012	14,979	17,577
%	5.1	5.9	6.2	6.3

자료: 병무청

이에 대해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후 재학연기 등으로 입영 시까지 신체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2015년부터 입영신체검사를 담당해오던 보충대가 폐지되고²⁾ 입영부대에서 직접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현역복무 부적응자 발생에 따른 지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보충대 폐지 : 306보충대(2015.1.1), 102보충대(2016.10.1)

그러나, 입영자들은 대학교 학기 또는 직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입영하였으나, 입영신체검사 결과 예측하지 못한 귀가 조치로 인하여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장래 계획에 차질이 초래되고, 입영 전(병역판정검사)과 입영 후(입영신체검사)의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신체검사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4년간 입영신체검사에 따른 치유기간별³⁾ 귀가현황을 보면, 재신체검사 대상자가 연간 11,000여 명에서 16,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비용도 연평균 9,100만원 가량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4년간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치유기간							
입영신체검사 대상인원(A)			278,780	242,094	236,529	236,049	△5.4
귀가 인원(B=a+b+c)			17,577	14,979	14,012	11,987	△12.0
재신체검 사대상	미명시(a)		12,286	10,036	9,585	9,804	△7.2
		%	69.9	67.0	68.4	81.8	
	3개월 이상(b)		3,218	3,510	3,418	1,434	△23.6
		%	18.3	23.4	24.4	12.0	
	소 계(a+b)		15,504	13,546	13,003	11,238	△10.2
			%	88.2	90.4	92.8	93.8
재입영 대상	3개월 미만(c)		2,073	1,433	1,009	749	△28.8
		%	11.8	9.6	7.2	6.2	

자료: 병무청

3) [입영신체검사에 따른 치유기간별 조치사항]

구 분	향후 조치
치유기간 3개월 이상자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 실시
치유기간 3개월 미만자	치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재입영
치유기간이 없는 경우(미명시)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

[재신체검사에 따른 제비용 세부집행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병무용진단서	48,984	42,380	44,507	47,036	△1.3
민간병원위탁검사비	28,764	34,976	40,835	35,092	6.9
재료비	8,694	11,694	12,024	10,581	6.8
합 계	86,442	89,050	97,366	92,709	2.4

자료: 병무청

이와 관련하여 제20대국회에서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전에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가 있다⁴⁾.

물론 입영판정검사를 일시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방병무청별 적정 수검 인원(1일, 180여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시에 추가인력 확보 및 시설 확충이 수반되지 못할 경우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크며,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대기 기간이 짧을 경우 중복검사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의 운영 일원화로 신체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지방병무청의 적정 수검인원 및 입영대기 기간별 귀가자 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차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8. 4. 4.)

가. 현 황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업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자세를 함양하고 성실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복무기본교육과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병무청은 2019년 예산액 90억 400만원 중 89억 8,000만원(99.7%)을 집행하였고 2,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회복무요원 교육	9,004	9,004	0	0	9,004	8,980	99.7	0	24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임으로, 병무청은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기본교육과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복무기본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통하여 복무자의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성실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4박 5일간 실시되는 기본과정과 사회복무요원으로 10개월 이상 성실복무자 중에서 선발하여 조직 내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00-301

또한 복무지도교육은 복무규정 위반자 및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대상으로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여 복무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나래, 새롭, 이음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다.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과정 현황]

구분	과정명	기간	교육대상	운영형태
복무기본교육	기본	4박5일	모든 사회복무요원	자체(합숙)
	리더	2박3일	사회복무요원 대표, 10개월 이상 성실복무자	
복무지도교육	나래	2박3일	복무규정 위반자,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위탁(합숙)
	새롭		반복 복무규정 위반자, 반복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이음		군 복무 적응 곤란사유 현역복무부적합자	

자료: 병무청

따라서 동 사업의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무기본교육을 통하여 성실복무를 유도하였는지, 복무지도교육을 통하여 복무부실을 사전에 예방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4년간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이탈 및 복무의무 위반 등 복무부실 발생률이 2016년 5.9%에서 2019년 4.1%로 감소한 것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4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실자 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복무인원			51,960	57,580	57,675	60,698
발생 현황	합계	인원	3,062	2,426	2,353	2,502
		%	5.9	4.2	4.1	4.1
	복무이탈		1,595	1,181	1,071	1,057
	복무의무 위반		1,467	1,245	1,282	1,445

자료: 병무청

그러나, 반복적 복무규정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롭과정의 경우 2회 이상 재교육을 받는 상습적인 복무부실자가 2016년 10명에서 2019년 133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복무지도교육의 경우 교육성과 달성도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4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실자 발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A+B)		1,399	1,559	1,543	1,477
나래과정(A) (최초 복무규정 위반자 대상)		745	759	749	717
새롭과정 (반복적 복무규정 위반자 대상)	소계(B=a+b)	654	800	794	760
	1회(a)	644	687	659	627
	%	98.5	85.9	83.0	82.5
	2회 이상 재교육(b)	10	113	135	133
	%	1.5	14.1	17.0	17.5
	2회	10	106	110	113
	3회	-	7	23	19
	4회	-	-	2	1

자료: 병무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성과달성도’ 단일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성과달성도의 측정방법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종합만족도(교육환경, 강사, 프로그램, 교육운영 4가지 항목)만을 측정하고 있어 해당 지표만으로는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무요원 교육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성과달성도 (점)	목표	8.6	8.6	85.8	86.8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본교육 종합 만족도 * 조사항목 : 교육환경, 강사, 프로그램, 교육운영 4가지 항목 (100점 척도)	외부용역 조사 결과 보고서
	실적	8.5	8.6	87.1	-		
	달성도	98.8	100	101.5	-		

자료: 병무청

따라서 병무청은 사업의 목표인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유도’ 및 ‘복무부실 사전예방’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사업¹⁾은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의 복무부실을 예방하고 성실복무를 유도하며,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병무청은 2019년도 예산현액 13억 4,900만원 중 12억 9,700만원(96.1%)을 집행하고, 5,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1,349	1,349	0	0	1,349	1,297	96.1	0	52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사회복지요원의 범죄 및 복무부실 등 일탈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복무지도관 중원 등을 통해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인력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4년간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관 및 복무인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기준 12,497개의 복무기관에 60,698명이 복무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이 전체 복무인원의 약 51%인 30,911명에 달하고 있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434-320

[최근 4년간 복무기관 및 복무인원 현황]

(단위: 개, 명)

연도	구 분	계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 시설
2016	복무기관	10,471	1,105	862	1,416	7,088
	복무인원	51,960	5,215	21,685	9,270	15,790
2017	복무기관	11,569	1,109	876	1,542	8,042
	복무인원	57,580	5,320	22,793	10,401	19,066
2018	복무기관	11,877	1,116	870	1,511	8,380
	복무인원	57,675	5,223	22,418	10,126	19,908
2019	복무기관	12,497	1,364	880	1,502	8,751
	복무인원	60,698	8,400	22,511	9,333	20,454

자료: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의 임무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등 5개 업무, 11개 복무분야로 구분되는데,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기관 등의 일반행정 지원 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 범죄발생 및 복무부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

업무	복무분야	주 임 무
사회 복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 • 정서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 가사 및 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보건 의료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 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위생 지원
	환자 구호업무 지원	• 환자 지원 • 의료활동 지원

업무	복무분야	주 임 무
교육 문화	교과·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 유치원·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된 학생 교육활동 지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 유치원·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된 장애학생 활동 지원
	문화재관리 지원	• 문화재보호감시지원
환경 안전	환경 보호·감시 지원	• 산림 및 공원시설 보호지원 • 하천 및 해양시설 보호지원
	재난·안전 관리 지원	• 재해의 예방·관찰·지도 • 사회질서 유지, 소방안전, 생활안전 및 교통업무 지원
행정	일반행정 지원	•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기관 경비지원 분야 외의 복무분야에서 사무보조·민원안내상담 등
	행정기관 경비지원	• 관공서 등 시설물 관리지원 • 방호·경비지원 등

자료: 병무청

이와 관련하여 병무청은 행정안전부 및 시·도와 합동으로 권역별 무작위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15개 시군구의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관련 현장점검(2020. 4. 16~4. 24)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무요원과 정보시스템 계정을 공유하거나, 별도로 계정을 부여한 경우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PC내 공인인증서를 미 삭제한 경우 등 15개 기관에서 총 122건의 결함이 적발되어 대부분의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등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실태점검 결과]

(단위: 명)

구분	권역	시·군·구(사회복무요원 복무인원)
1권역	서울·강원권	서울 서초구(132)·종로구(116), 강원 원주시(26)
2권역	인천·경기권	인천 부평구(104), 경기 안양시(271)·시흥시(214)
3권역	충청권	세종시(64), 충북 청주시(278), 충남 아산시(70)
4권역	호남권	광주 남구(114), 전북 전주시(338), 전남 여수시(105)
5권역	영남권	부산 금정구(77), 울산 동구(66), 경남 김해시(132)

자료: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는 「병역법」²⁾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³⁾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이 지휘·감독하고 있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태 및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점검을 위하여 복무지도관을 임명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 1명이 해당 복무기관에 복무하는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2020년 5월말 기준으로 복무지도관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수는 적정인원인 300명⁴⁾의 2배를 넘어서는 628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④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조(지휘·감독) ①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휘·감독을 하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감독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군사교육 소집되어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4) 2018년 사회복무제도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한 복무지도관 1인당 적정 관리인원은 300명 수준이다.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인원 및 관리기관 현황]

(단위: 명, 개)

구 분		'20. 5월말	'19년	'18년	'17년	'16년
복무인원		62,188	60,698	57,675	57,580	51,960
복무기관		13,118	12,497	11,877	11,569	10,471
복무 지도관	인 원	99	99	97	97	97
	1인당 관리기관	133	126	122	119	108
	1인당 관리인원	628	613	595	594	536

자료: 병무청

더욱이 복무지도관은 사회복지요원의 복무실태 점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요원 부적합 소집해제 처리, 복무기관 담당자 교육 등의 업무도 겸하고 있으며, 총 99명의 복무지도관 중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는 33명(33.3%)에 불과하고 대부분 일반 행정직이 복무지도관으로 근무하고 있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복무지도관 현황(2020. 5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복무 지도관	관련자격증 소지인원			
		계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인성교육지도사 등
계	99	33	23	8	2
일반행정직	67	4	3	1	0
임기제	19	18	13	4	1
공무직	13	11	7	3	1

자료: 병무청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의결 시 ‘적정 수준의 복무지도관 확충 방안과 복무요원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을 시정 요구(제도개선)하였다. 병무청은 이에 대하여 2023년까지 행정안전부와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인원 300명 수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복무부실자를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히 복무지도관 증원 등을 포함한 복무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병무청은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개정하여⁵⁾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비식별조치(마스킹 처리), 유출방지 등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복무기관장의 승인 하에 정보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병무청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⁶⁾

사회복무요원의 도입 취지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행정지원 인력의 축소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2020년 5월 기준으로 전체 사회복무인원의 34%가 행정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인력 활용의 측면에서 해당 복무기관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고, 비식별 조치 등에 오히려 과도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자칫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보인다.

[사회복무요원 현황(2020년 5월 기준)]

(단위: 명)

구분 기관	계	사회서비스(66.0%)					행정 (34.0%)
		소계	사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계	62,188	41,034	24,838	2,440	4,477	9,279	21,15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31,062	13,249	2,982	1,465	3,821	4,981	17,813
공공단체 복지시설	31,126	27,785	21,856	975	656	4,298	3,341

자료: 병무청

따라서 병무청은 현재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의 필요성을 해당 복무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행정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인력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20. 6. 12. 일부개정)

6) 행정인력 축소계획 : (20.5) 21,154명 34% → (22) 16,625명 28.4% → (24) 12,250명 22.6%

집 필

총괄 | 김 일 권 예산분석실장

심 의 | 서 세 옥 사업평가심의관
신 은 호 산업예산분석과장
김 태 규 사회예산분석과장
이 종 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이 동 훈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정 현 하 예산분석관
김 수 진 예산분석관
민 성 철 예산분석관
심 성 택 예산분석관
오 덕 근 예산분석관

지 원 | 이 정 아 행정실무원
송 은 혜 자료분석지원요원

결산분석시리즈 II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0년 8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후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태영특수프린테크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293-3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0